

발간등록번호

11-1543000-000417-01

농촌산업 통계·동향 분석을 통한 6차산업 발전전략 연구

**A Study on the Development Strategies of the 6th
Industrialization by Analyzing Rural Industrial
Statistics**

연구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제 출 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농촌산업 통계·동향 분석을 통한
6차산업 발전전략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4년 2월

연구기관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책임자: 김 용 렬(연구위원)

연구 원: 정 은 미(연구위원)

연구 원: 최 용 욱(연구 원)

연구 원: 한 태 녕(연구 원)

요 약

- 이 연구는 6차산업화를 통한 농촌지역 활성화에 필요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이를 위해 우선, 농촌산업의 개념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농촌산업과 6차산업화 동향을 파악함. 그리고 과거의 농촌산업 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여 향후 추진 방향을 도출하고, 6차산업화를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거버넌스 구축 등을 위한 방안들을 마련하고자 함.
- 농촌산업은 농촌지역에서 산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산업적 공간이며, 6차산업화는 산업활동 중 융복합 활동에 해당되며, 6차산업은 농촌산업 중 6차산업화 활동을 통해 형성된 산업을 의미함.
- 6차산업화 정책은 상생협력을 기반으로 한 융복합화 활동인 6차산업화를 통해 농업의 부가가치를 증대시키고, 이를 통해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정책적 활동을 의미 할 수 있음. 또한 6차산업화 활동이라는 혁신활동을 확대시킴으로서 농촌산업의 활성화도 꾀하고자 하는 정책이라 할 수 있음.
- 농촌산업 동향 전반을 살피기 위해서는 농촌지역경제의 흐름과 농촌산업 전반의 변화를 살필 수 있어야 함.
 -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분류될 수 있는 군지역의 경우 지역내총생산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성장률에 있어서는 일반시와 도농복합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임.
 - 전국의 읍면의 사업체수 통계를 살펴본 결과, 총계에서 사업체수가 감소한 부문은 대분류 상 농림어업과 도소매업임.
 - 전국적으로 읍 지역에 비하여 면 지역의 농림어업 부문 사업체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음.
 - 전국 읍 지역 도소매업 사업체 수가 약간 증가한 반면, 면 지역 도소매업

사업체 수는 큰 폭으로 감소함.

- 농림어업 부문 사업체 종사자의 64%(2011년 기준 20,567명)가 농촌지역(행정구역 상 읍/면)에서 근무하고 있음.
 - 읍면 지역에 위치한 제조업체의 규모가 평균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 변화할당분석 결과, 농림어업분야에서는 경기도가 특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제조업의 경우는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가 지역적으로 특화되어 있음.
 - 입지계수분석결과, 농림어업 부문 사업체 종사자 수는 농촌지역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6차산업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조업과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임. 제조업 분야가 특화되어 있는 농촌지역은 강원도와 제주도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지역임.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은 제조업과는 다르게 경기도, 강원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도에서만 특화된 것으로 분석되었음.
- 6차산업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농가와 농업법인을 살펴보았음.
- 최근 5년 간 6차산업화 활동을 하고 있는 농가는 2005년 103,981호에서 2010년 162,640호로 약 5만 8천 호 이상 증가하였음.
 - 6차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농업의 생산을 하고 있는 농업법인은 2012년 8,493개로 2000년의 1,941개 보다 거의 4배 성장하였음.
 - 유형별 농업법인의 비중에서도 유통업과 가공업의 비중이 크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10년을 기준으로 6차산업화를 하고 있는 농가와 법인은 총 171,133개임. 농가는 162,640호이고, 농업법인은 8,493개임.
- 6차산업화 대책에 대한 정책수요자 인식을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설문 참여자 수: 총 554명(이 중 농림어업 종사자는 전체 응답자의 85.5%인 459명)
 - 6차산업화에 대한 인지도는 매우 높음. 농업인들은 6차산업이 소득증대

효과가 있으며, 6차산업화를 통해 가격결정권을 가지고 싶어 함. 판로확대에 가장 노력을 하고 있으나, 판매와 마케팅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해 큰 애로를 겪고 있음.

- 정부의 6차산업화 대책에 대해서 대부분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그중 ‘지역컨소시엄 사업단’, ‘판매 및 수출지원 방안’, ‘농촌산업 집적화지구’, ‘중간지원조직 지정사업’에 대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음.
- 농촌산업 활성화를 위한 6차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이 필요함.
 - 광역시도 자치단체와 시군 자치단체의 농촌산업육성계획 수립
 - 중간지원조직 활성화
 - 지역 내 6차산업화와 농촌산업 발전을 위한 농촌산업발전협의회 구성
 - 6차산업화와 농촌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 마련: 농촌산업집적화지구 (6차산업집적화지구)
 - 비즈니스적 측면에서는 상품 개발, 생산, 마케팅, 경영 자원 확보가 중요함.

ABSTRACT

A Study on the Development Strategies of the 6th Industry of Agriculture by Analyzing Rural Industrial Statistics

- This study aims to find ways to vitalize rural areas through the 6th industrialization of agriculture.
- The rural industry is the industrial space of industrial activities in rural areas. The 6th industrialization is the convergence activity among industrial activities, and the 6th industry means the industry formed through the 6th industrialization activities among the rural industry.
- The 6th industrialization policy can mean a policy to increase agriculture's value added through the 6th industrialization, which is the convergence activity based on win-win cooperation, and thus raise farm income. Also, this policy can be a policy to vitalize the rural industry by expanding the innovative 6th industrialization activity.
- To examine the rural industry's whole trend, it is needed to see the rural economy's trend and the industry's overall change.
 - In gun, which can be classified as typical rural areas, GRDP is growing steadily. However, the GRDP growth rate of gun is lower than that of general cities and urban-rural consolidated cities.
 - According to the statistics of the number of businesses in eup and myeon in Korea, the number of businesses decreased in agriculture, forestry, fishery, and wholesale and retail trade.
 - While the number of wholesale and retail businesses in eup in Korea increased slightly, that in myeon decreased largely.
 - 64% (20,567 people in 2011) of the people in agricultural, forestry, and fishery businesses work in rural areas (eup and myeon).
 - The manufacturers' size in eup and myeon is estimated to have grown on average.
 -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e shift-share analysis, Gyeonggi-do specializes in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y. Gyeonggi-do,

Chungcheongbuk-do, Chungcheongnam-do, Gyeongsangbuk-do, and Gyeongsangnam-do specialize in manufacturing.

- The location quotient analysis shows that the number of the people in agricultural, forestry, and fishery businesses is a big part in rural areas. The 6th industrialization is closely related to manufacturing and the service industry related to art, sports, and leisure. All rural areas except Gangwon-do and Jeju-do specialize in manufacturing. Only Gyeonggi-do, Gangwon-do, Jeollabuk-do, Jeollanam-do, and Jeju-do specialize in the service industry related to art, sports, and leisure, unlike manufacturing.
- To see the 6th industry's present state, farm households and agricultural corporates were examined.
 - For the last 5 years, the farm households doing the 6th industrialization activity increased over 58,000 households from 103,981 households in 2005 to 162,640 households in 2010.
 - The number of agricultural corporates doing nonfarm production closely related to the 6th industry is 8,493 in 2012, nearly 4 times higher than that (1,941) in 2000.
 - In terms of a share of agricultural corporates by type, distribution and manufacturing industries' share is growing greatly.
 - In 2010, the number of farm households and corporates participating in the 6th industrialization was 171,133. Among them, the number of farm households was 162,640, and the number of agricultural corporates was 8,493.
- A survey was conducted to know policy demanders' awareness of the 6th industrialization measures.
 - The number of the survey's participants: 554 (The people in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y were 85.5% (459 people) of all respondents.)
 - The respondents have a high awareness of the 6th industrialization. The 6th industry can increase income, and farmers want to have the right of pricing decisions through the 6th industrialization. Farmers make the most effort to extend the market, but they have difficulties due to the lack of expertise in sales and marketing.
 - Most respondents were positive about the government's 6th industrialization measures. The respondents expect much of the regional

consortium project group, sales and export support plans, the rural industry cluster zone, and the intermediary organization designation project.

- To develop the 6th industry for the vitalization of the rural industry, the following strategies are needed:
 - Metropolitan councils and city and gun (county) governments should make plans to promote the rural industry.
 - Intermediary organizations need to be vitalized.
 - The council for the development of the rural industry is needed for the development of the industry and the 6th industrialization.
 - As a base to promote the 6th industrialization and the rural industry, the rural industry cluster zone (the 6th industry cluster zone) is needed.
 - In terms of business, product development, production, marketing, and procurement of managerial resources are important.

Researchers: Yong-Lyoul Kim, Eun-Mee Jeong, Yong-Woog Choi, and
Tae-Nyoung Han

Research period: 2013. 6. - 2014. 2.

E-mail address: kimyl@krei.re.kr

차 례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2. 연구방법 3
3. 선행연구 검토 4

제2장 농촌산업과 6차산업화의 개념과 의미

1. 농촌산업의 개념 20
2. 6차산업화와 6차산업의 개념 21
3. 농촌산업과 6차산업의 관계 23

제3장 농촌산업의 동향과 6차산업 현황

1. 지표를 통해서 본 농촌산업 동향 26
2. 통계로 본 6차산업 현황 80
3. 우수사례를 통해서 본 6차산업 유형과 실태 92

제4장 국내외 6차산업 관련 정책

1. 국내 6차산업 관련 정책 99
2. 외국의 6차산업 관련 정책 127

제5장 6차산업화 대책에 대한 정책수요자 인식

1. 조사 개요 141
2. 6차산업화에 대한 인식과 추진 실태 143
3. 정부의 6차산업화 정책 관련 인식 조사 155
4. 6차산업화 추진과 실태에 관한 한일 비교 166

5. 시사점 176

제6장 농촌산업 활성화를 위한 6차산업 발전 전략

1. 기본방향 180
2. 정책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사항 181
3. 비즈니스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사항 196
4. 6차산업화 관련 사업들의 위계화 200

참고 문헌 210

부록 1: 주식회사 농림어업 성장산업화 지원기구법 216
2: 6차산업화 관련 인식 및 실태 조사 설문조사표 240

표 차 례

제3장

표 3-1. 농촌지역과 도시의 지역내총생산 비교	27
표 3-2. 농촌산업 사업체 수 연도별 현황	31
표 3-3. 농촌산업 종사자 수 연도별 현황	34
표 3-4. 농촌지역 산업의 고용성장효과(2000/2011년)	37
표 3-5. 전국 농촌지역의 변화할당분석 결과(대분류 기준)	38
표 3-6. 경기도 농촌지역 산업의 고용성장효과(2000/2011년)	39
표 3-7. 경기도 농촌지역의 변화할당분석 결과(대분류 기준)	40
표 3-8. 강원도 농촌지역 산업의 고용성장효과(2000/2011년)	40
표 3-9. 강원도 농촌지역의 변화할당분석 결과(대분류 기준)	41
표 3-10. 충청북도 농촌지역 산업의 고용성장효과(2000/2011년)	42
표 3-11. 충청북도 농촌지역의 변화할당분석 결과(대분류 기준)	43
표 3-12. 충청남도 농촌지역 산업의 고용성장효과(2000/2011년)	43
표 3-13. 충청남도 농촌지역의 변화할당분석 결과(대분류 기준)	44
표 3-14. 전라북도 농촌지역 산업의 고용성장효과(2000/2011년)	45
표 3-15. 전라북도 농촌지역의 변화할당분석 결과(대분류 기준)	46
표 3-16. 전라남도 농촌지역 산업의 고용성장효과(2000/2011년)	46
표 3-17. 전라남도 농촌지역의 변화할당분석 결과(대분류 기준)	47
표 3-18. 경상북도 농촌지역 산업의 고용성장효과(2000/2011년)	48
표 3-19. 경상북도 농촌지역의 변화할당분석 결과(대분류 기준)	49
표 3-20. 경상남도 농촌지역 산업의 고용성장효과(2000/2011년)	49
표 3-21. 경상남도 농촌지역의 변화할당분석 결과(대분류 기준)	50
표 3-22. 제주도 농촌지역 산업의 고용성장효과(2000/2011년)	50
표 3-23. 제주도 농촌지역의 변화할당분석 결과(대분류 기준)	51

표 3-24.	순상대효과에 의한 광역시도 농촌지역의 특화산업	53
표 3-25.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부문 광역시도간 고용성장효과 비교	54
표 3-26.	전국 농촌지역 고용량 변화/산업별 비중/입지계수	56
표 3-27.	경기도 농촌지역 고용량 변화/산업별 비중/입지계수	58
표 3-28.	강원도 농촌지역 고용량 변화/산업별 비중/입지계수	60
표 3-29.	충청북도 농촌지역 고용량 변화/산업별 비중/입지계수	62
표 3-30.	충청남도 농촌지역 고용량 변화/산업별 비중/입지계수	64
표 3-31.	전라북도 농촌지역 고용량 변화/산업별 비중/입지계수	66
표 3-32.	전라남도 농촌지역 고용량 변화/산업별 비중/입지계수	67
표 3-33.	경상북도 농촌지역 고용량 변화/산업별 비중/입지계수	69
표 3-34.	경상남도 농촌지역 고용량 변화/산업별 비중/입지계수	71
표 3-35.	제주도 농촌지역 고용량 변화/산업별 비중/입지계수	73
표 3-36.	입지계수 1.0을 초과하는 농촌지역 특화산업	74
표 3-37.	지역별 비교우위 특화산업1	76
표 3-38.	6차산업 관련 비교우위 특화지역	77
표 3-39.	지역별 비교우위 특화산업2	79
표 3-40.	6차산업 관련 농가수의 변화	81
표 3-41.	6차산업 관련 2차산업 농가 수	82
표 3-42.	6차산업 관련 3차산업 농가 수	83
표 3-43.	농업법인 수	85
표 3-44.	농업법인 종사자 수	85
표 3-45.	유형별 농업법인 수	86
표 3-46.	유형별 농업법인의 비중 변화	87
표 3-47.	농업법인의 농업생산 매출액	88
표 3-48.	농업법인의 농업생산 외 매출액	89
표 3-49.	농업법인의 평균 매출액 비교	90
표 3-50.	6차산업 대상 규모(2010년 기준)	91

표 3-51. 매출액별 우수사례 현황	93
표 3-52. 산업결합 유형별 우수사례 현황	94
표 3-53. 원료품목별 우수사례 현황	95
표 3-54. 경영형태별 우수사례 현황	96
표 3-55. 지역별 우수사례 현황	97
표 3-56. 6차산업 협력시스템별 우수사례 현황	98
표 3-57. 6차산업 시작년도별 우수사례 현황	98

제4장

표 4-1. 충청남도 6차산업화 관련 지원사업	115
표 4-2. 6차산업화 관련 정책들의 비교	124
표 4-3. 6차산업화 관련 정책들의 공간적 단위	126

제5장

표 5-1. 조사대상 일반 특성	143
표 5-2. 6차산업화 인지 여부	144
표 5-3. 6차산업 추진 여부	145
표 5-4. 6차산업이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었는지 여부	146
표 5-5. 6차산업화를 추진한 이유	147
표 5-6. 상품의 차별화, 브랜드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요시 한 사항	150
표 5-7. 6차산업화 추진 시 부족했던 분야	151
표 5-8. 해외시장 진출 의향	152
표 5-9. 해외시장 진출을 하지 않는 이유	153
표 5-10. 해외시장 진출을 하고자 할 때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	154
표 5-11. 해외시장 진출 시 필요한 정부의 도움	155
표 5-12. ‘6차산업화 창업자금 지원사업’이 실효성이 있을 가능성	157
표 5-13. ‘6차산업화 사업자 인증제도’가 실효성이 있을 가능성	158

표 5-14.	‘중간지원조직 지정사업’이 실효성이 있을 가능성	160
표 5-15.	‘농촌산업집적화지구’가 실효성이 있을 가능성	161
표 5-16.	‘모태펀드’가 실효성이 있을 가능성	163
표 5-17.	‘판매 및 수출지원 장려’가 실효성이 있을 가능성	164
표 5-18.	‘지역컨소시엄 사업단’이 실효성이 있을 가능성	165
표 5-19.	6차산업화 추진 여부에 대한 한일 비교	167
표 5-20.	6차산업화 추진 이유에 대한 한일 비교	168
표 5-21.	6차산업화 추진 형태의 한일비교	169
표 5-22.	상품의 차별화·브랜드화 추진 여부 한일비교	169
표 5-23.	상품의 차별화·브랜드화 추진상의 중시 사항 한일비교	170
표 5-24.	수익향상시 중점사항 한일 비교	171
표 5-25.	판매 수량 증가를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사항의 한일비교	172
표 5-26.	6차산업화 추진에 있어 부족함을 느낀 전문 분야 한일 비교	173
표 5-27.	해외 진출 여부 및 진행 상황에 대한 한일 비교	174
표 5-28.	해외 진출을 추진하지 않는 이유	175
표 5-29.	해외 진출 시 향후 과제에 대한 한일비교	176
표 5-30.	6차산업화 대책에 대한 의견	177

제6장

표 6-1.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선정대학	183
표 6-2.	6차산업화 관련 사업들의 위계화를 위한 평가	201
표 6-3.	6차산업화 관련 사업들의 위계화를 위한 평가결과	203
표 6-4.	6차산업화 관련 사업들의 평면적 위계화	208

그림 차례

제2장

- 그림 2-1. 농촌산업 개념도 21
 그림 2-2. 6차산업화 개념도 22
 그림 2-3. 농촌산업과 6차산업의 관계 24

제4장

- 그림 4-1. 경상북도 6차산업화 관련 지원사업 117
 그림 4-2. 전라북도 농식품 6차산업화 사업모델 119
 그림 4-3. 강원도 새농어촌건설운동의 추진체계 121
 그림 4-4. EU의 농촌개발과 다각화 정책 129
 그림 4-5. 일본 6차산업화 펀드 추진 체계 136

제5장

- 그림 5-1. 6차산업화 추진 형태 148
 그림 5-2. 6차산업화 추진 중점 사항 149

제6장

- 그림 6-1. 사업들 간 위계화 평가결과 도식도 203
 그림 6-2. 6차산업화 관련 사업들의 입체적 위계화 209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1. 연구 필요성

- 농촌 인구의 감소, 고령화, 도농소득격차 심화 등 농촌의 부정적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이를 타파하기 위해 농촌산업과 6차산업화가 필요
 - 농어촌지역 인구 감소 속도는 둔화되지만 고령화는 지속되고 있음. 행정 구역으로 읍·면부를 합한 농촌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5년 통계 기준으로 전국 인구 대비 18.5%에 머물렀음. 그러나 2010년에는 1970년대 이후로 감소하기만 했던 농어촌 인구 변화 추세가 바뀌었음. 2010년 농어촌 지역의 인구는 2005년보다 약간 증가한 876만 명을 기록하였음(김용렬 외, 2013; 김정섭 외, 2012).
 - 농어촌 인구 감소 추세는 거의 멈춘 듯하지만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2000년에 농어촌 지역의 고령 인구 비율(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4.7%였던 것이 2010년에는 20.6%에 이르고 있음(김용렬 외, 2013; 김정섭 외, 2012).

- 도농간 소득격차는 확대되다 둔화되지만 소득증가 속도 차이 큼. 1990년 중반까지만 해도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가구 소득 수준의 95% 이상이었으나 1995년 이후 도농간 평균소득의 격차는 계속 확대되어 2002년의 경우 도시근로자가구와 비교하여 농가소득은 약 73%이었음. 이후 도시근로자의 명목 가구소득은 증가 추세이지만, 농가소득은 2006년 이후 정체 내지 감소 현상을 보이면서 도시근로자가구 소득 대비 농가소득은 2006년 78.5%에서 2009년에는 76.7%로 격차가 둔화되었음. 농가소득은 1995년 이후 연평균 2.5%(명목소득) 증가한 반면, 도시근로자가구 소득은 4.6% 증가하여 도·농간 소득 증가속도 격차가 확대되었음(김용렬 외, 2013; 김병률 외, 2012).
 -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인구과소화를 방지하고, 농업의 고부가가치화, 농가소득 증대, 농촌경제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임. 따라서, 농촌산업과 6차산업화가 대안으로 있음.
- 농촌산업 정책과 6차산업화 정책을 위해서는 농촌산업과 농촌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함. 이것은 계량화된 통계에서 찾을 수 있음. 농촌산업과 6차산업화 육성을 위해 농촌산업의 현실을 어떠한지, 6차산업화의 현황은 어떠한지를 통계를 통해 짚어 볼 수 있어야 함.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정책이 이루어져야 타당한 논리와 농업인, 농촌주민, 대국민에 대한 설득이 가능하기 때문임.
 - 박근혜 정부가 농업의 6차산업화를 통하여 농식품 산업의 창조경제를 실현하고자 하고 있음. 따라서 농촌산업과 6차산업화의 통계적 기반위에서 농업의 부가가치화, 농촌산업의 활성화,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6차산업화와 농촌산업화 전략이 필요함.

1.2. 연구목적

-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창조경제에 기반한 농촌산업과 6차산업화 추진이 농정의 큰 방향으로 설정되고 있음.
- 따라서 이 연구는 6차산업화를 통한 농촌지역 활성화에 필요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이를 위해 우선, 농촌산업의 개념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농촌산업과 6차산업화 동향을 파악함. 그리고 과거의 농촌산업 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여 향후 추진 방향을 도출하고, 6차산업화를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거버넌스 구축 등을 위한 방안들을 마련하고자 함.

2. 연구방법

- 문헌연구
 - 이론적 개념 설정
 - 관련 정책 리뷰, 추진체계 등 검토
- 통계자료 분석
 - 전국사업체조사, 농어업법인조사, 광업/제조업조사, 시·군 통계연보 등을 토대로 농촌산업 동향 분석
 - 지표개발을 통한 농촌산업 동향 분석
- 전문가 워크숍
 - 추진체계 방향 설정
 - 새로운 농촌산업화 정책 방안 도출을 위한 의견 수렴 및 아이디어와 정보 교환, 과제 상황 점검

3. 선행연구 검토

- 관련 선행연구는 농촌산업 개념, 농촌산업 정책, 6차산업화에 관한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함.

3.1. 농촌산업의 개념에 관한 선행연구¹

3.1.1. 국내 연구

- 농촌산업(rural industry)은 1차적으로 농어촌이라는 공간개념과 산업이라고 하는 경제활동이 결합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음.
- 농촌공업
 - 최양부·김형모(1980)는 규범적 정의(normative definition)와 사실적 정의(factual definition)를 통해 농촌공업의 정의를 내리고 있음.
 - 규범적 정의의 농촌공업은 농업 및 농촌지역과 긴밀히 연관된 공업을 말하면서 농촌지역에 위치하여 농업생산, 농산물, 기타 농촌의 부존자원, 그리고 농촌주민들과 전후방 연관관계를 맺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사실적 정의에서는 농촌지역에 입지하여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 제조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즉, 농촌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제조활동과 제조업체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설정하였음. 경영주체가 농민이라든가, 전후방연관관계를 맺어야 한다든가 하는 제한요소를 벗어난 개념임.
 - 서종혁 외(1986)에서는 농촌공업이란 농촌지역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공

1 이 내용은 김용렬 외(2012) 연구에서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인용 및 재정리함.

간적 범역에 입지하고 있는 일체의 제조업이라고 규정하였음. 여기서 농촌지역은 농림수산업이 지역산업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총칭한다고 보고, 편의상 읍면지역을 포함하는 군지역을 대상으로 하였음.

- 이동필(2001)은 최양부·김형모(1980)와 같은 기준으로 농촌공업(rural industry)을 규범적인 개념(normative definition)과 실제적인 개념(factual definition)으로 구분하였음. 이 연구에서는 농촌지역을 읍·면·리로 하였고, 농촌공업은 5인 이상 종사자를 가지고 있는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하였음.
- 농촌공업이라는 개념은 농어촌산업 중 농촌지역에 위치한 제조업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

○ 지연산업(박석두 외, 2004)

- 지연산업이란 지역내 자본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중소·영세기업의 집단이 사회적 분업체계에 입각하여 역내의 원료와 노동력으로써 상품을 생산·판매하는 유기적 생산체제로 규정하고 있음.
- 지연산업을 ①지역 내 업체 입지의 집단성, ②원료, 노동력, 기술, 자본 등 공급체계의 지역성, ③사회적 분업체계, ④중소기업 이하의 규모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 지연산업은 원료공급과 노동력 공급을 지역내로 한정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이하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음.

○ 향토산업(이동필 외, 2007)

- 향토산업을 일정한 지역사회에서 특성있는 향토자원을 개발 또는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향토자원을 산업화하는 것으로 개념화하고 있음.
- 향토산업을 지역성, 문화적 전통성, 경제적 타당성이라는 3가지 요소로 특징화 하고 있음. 즉, 향토자원이 가진 지역적 범위와 문화적 전통성에 기초한 동질감을 바탕으로 산업으로써 자리매김을 위한 경제적 타당성

을 갖추는 3요소로 구성됨.

- 향토산업은 지역적 특성을 지닌 향토자원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 농어촌 산업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농어촌산업(이동필 외, 2008)

- 협의의 개념과 광의의 개념을 구분
- 협의의 농어촌산업은 농림수산물의 생산과 전후방으로 연계된 산업부 문들, 주로 농산업 및 가공부문과 연관 서비스업에 한정
- 광의의 농어촌산업은 농산업뿐만 아니라 농어촌에 입지하고 있는 모든 2차, 3차 산업을 포함

3.1.2. 국외 연구

○ 미국의 농촌산업 개념

- Robock(1952)은 농촌산업에 대한 논의들이 공통적으로 농업원료의 활 용과 농업활동과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다고 보고, 농촌산업을 “농업원 료(agricultural raw materials), 임산원료(forestry raw materials), 또는 지 역농업시장(local agricultural markets)과 근접 입지할 때 주요 입지 이점 을 갖게 되는 산업들”로 정의하고 있음.
 - 이러한 농촌산업 정의는 산업의 ‘입지특성’에 따른 것으로, 농업부 문 의 직접적인 입지영향과 무관한 농촌지역의 산업들은 농촌산업에서 제외하였음.
 - Robock은 미국의 453개의 산업 세분류(4 digit) 항목 중 41개의 항목 을 농촌산업으로 구분해내고 이를 다시 농업형 농촌산업(agricultural rural industries), 임업형 농촌산업(forestry rural industries), 농촌 시장 형 산업(rural market industries)로 세분화 하였음²

2 Robock의 농촌산업 분류에 대한 비판은 Kuhlman, J.M., 1953, “Notes: Rural

- 미국 USDA의 ERS(Economic Research Service)에서는 농촌산업(rural industry)에 대해 명확한 개념 정리는 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Briefing Rooms와 Rural Conditions and Trends에서 언급된 농촌산업에 자료들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음.
 - ERS(Economic Research Service)의 Briefing Rooms에서 언급된 농촌산업(rural industry)을 살펴보면 공공부문(public sector), 소비자 서비스(consumer service: 도소매업, 건강사업, 사교육서비스), 제조업(manufacturing), 생산자 서비스(producer services), 레크리에이션 서비스, 농림수산업, 기타 농업연관산업(related industries)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농촌에 위치한 모든 종류의 산업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Rural Conditions and Trends라는 발간물의 “Rural Industry Issue”를 통해서 보면 농촌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을 세분류(4 digit) 수준에서 제시하고 있음. 농촌산업의 제조업은 농산물 가공 제조업(farm-related value-added manufacturing)과 임산물 가공 제조업(forest-related value-added manufacturing)으로 구분하고 있음(ERS, 1998). 그리고 농촌산업의 서비스업은 농가 관련 고용(farm-linked employment) 분야를 의미하며 이는 다시 농가 및 농업 관련 고용(farm and farm-related employment) 부문과 식품 및 섬유 시스템(food and fiber system) 부문으로 세분되고 있음(ERS, 1999). 단, ‘식품 및 섬유 시스템’ 부문은 대도시지역과 비대도시지역에 대한 구분 없이 국내 전체(domestic) 통계만을 제시하고 있음.

○ 영국의 농촌산업 개념

- 영국에서도 농촌산업(rural industry)의 개념에 대해 명시적으로 정의하

Industries and Agricultural Development”, *Journal of Farm Economics*, 35(3), pp.436-438 참조.

고 있는 것은 없음.

- 영국의 환경식품농촌농업부(DEFRA)에서는 rural business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농림업, 농산물 공급 산업, 농산물 유통, 식품가공, 곡물가공, 농촌관광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음.

○ 호주의 농촌산업 개념

- 호주 New South Wales의 Great Lakes Council(2006)에서 정의한 것을 보면, 농촌산업(rural industry)은 (a)농산물과 같은 1차 생산물(primary products)에 대한 처리 혹은 가공하는 산업, (b)농업에 사용되거나 혹은 1차 생산물에 대한 처리 혹은 가공을 위해 사용되는 공장이나 장비들의 일상적인 역할이나 정비활동을 포함하는 산업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이것은 농업과 관련된 산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호주의 Australian and New Zealand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ANZSIC) 체계에 기초하여 농촌산업(rural industries)을 보면, 크게 농업(agriculture), 상업적 어업(commercial fishing), 임업 및 벌목(forestry and logging), 농업에 대한 서비스(services to agriculture) 등 크게 4개 하위 부문으로 구성(Queensland Government, 2005; 2008)하고 있음.
 - 농업에는 원예 및 과수재배, 곡식·면양 및 축산, 낙농, 가금류, 기타 축산, 기타 농작물 재배 포함
 - 농업에 대한 서비스의 예는 양털 깎기, 곡식 및 과일 수확 등
 - 상업적 어업에는 양식업(aquaculture) 포함

3.2. 농촌산업정책에 관한 선행연구

3.2.1. 농촌산업과 농촌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연구

- 농촌의 2·3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은 1980년대 이래로 농의소득정책, 농촌 공업입지 정책, 낙후지역개발 등을 통해 꾸준히 지속되어 옴.
 - 정책의 내용이나 구체적인 추진사업들 또한 농어촌특산단지 및 농공단지 조성, 농산물가공사업, 그리고 녹색농촌체험마을·전통테마마을·아름마을가꾸기·농촌휴양단지 및 관광농원·농촌민박마을·팜스테이 조성과 같은 농촌휴양·관광자원 개발 등 다양하게 추진되어 왔음.
 - 이들 정책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유치, 일자리 증가, 주민의 소득 증가 등의 측면에서 우리 농촌의 현실은 여전히 답보상태에 있으며 오히려 도·농간 소득 격차는 증가하여 왔음(이동필·김용렬·최경은·강민수·박준식·이기원, 2007).

- 농촌 산업활성화와 관련한 국내 연구들은 관련 정책들의 추진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두어왔음(최경환, 2001; 이동필·김용렬·최경은·강민수, 2007; 김현호·오은주, 2007; 박경·구자인, 2006; 송미령·박주영, 2004; 우윤석, 2004).

- 농산업체의 협력화는 신활력사업, 향토산업육성사업, 광역클러스터활성화사업,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 형태로 지역산업의 집적과 연계, 네트워크 구축, 산학관연의 시스템 측면에서 정립된 모델이 제시되고 있음.
 - 이동필 외(2007) 「신활력지역 지원사업 평가·성과측정을 위한 지표개발 및 향토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 지원 방안·평가지표개발」 연구는 지표개발 이외에 (1) 농촌지역의 2·3차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대안으로서 지역의 부존자원을 바탕으로 한 내발적 지역개발 전략이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고, (2) 신활력사업의 경우 기존의 지역특화산업육성과 크게 다를 바가 없지만 이제까지 물적 투자를 우선시 하는 정책과는 달리 지역의 혁신체계를 구축하고 혁신역량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3) 향토산업육성사업의 경우 지역이 가진 부존자원과 주민들 스스로

의 노력을 바탕으로 자력갱생의 길을 찾는 접근방법이란 측면에서 새로운 정책임. 따라서 (4) 농림부는 소관사업 중 농촌지역 2·3차산업육성과 직결되는 사업을 묶어 ‘농촌활력증진사업’으로 추진하도록 제시. (5) 신활력사업과 향토산업육성사업 등의 소재가 되는 향토성은 타 지역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원부재료나 제조방법, 혹은 그 지역에 고유한 역사나 문화등과 결합된 소위 향토지적재산권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이와 같은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수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농촌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추진체계 개편 관련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었고, 그 결과 정책 실무의 측면에서도 2007년 당시 별도로 추진되던 신활력사업과 향토산업육성사업, 지역특화품목육성사업을 ‘농촌활력증진사업’으로 통합하여 추진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이동필·김용렬·최경은·강민수, 2007; 조상필, 2007).
- 이동필 외(2008)는 「농어촌산업정책 추진체계 개편 방안」에서는 새로운 농어촌산업정책의 추진체계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추진해 온 주요 농어촌 산업 관련 정책들의 추진실태와 문제들을 파악한 후 농어촌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농어촌산업정책의 추진체계를 제시하였음.
 - 본 연구에서는 지속가능한 내생적 산업발전과 농어촌의 일자리 창출 및 주민 소득 증대의 관점에서 협의의 개념을 중심으로 광의의 개념을 포괄하는 농어촌산업의 개념 채택. 따라서 농어촌의 농특산물, 전통문화, 경관 등 유·무형의 자원을 활용한 식품업, 제조업, 문화관광 등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산업(농어촌정비법)이라는 개념과 농어촌지역에 입지하는 일체의 제조업 및 서비스업으로 규정하였음.
 - 새로운 농어촌산업 정책의 추진 방향으로 첫째, 선택과 집중, 차별화에 기반한 지역특화산업 육성, 둘째, 차별화된 농어촌지역의 자원 발굴 및

산업화, 셋째, 체험·관광·휴양자원 개발 및 관련 서비스업 활성화, 넷째, 외부 유치기업의 토착화 및 투자여건 개선, 다섯째, 산업클러스터화에 의한 지역산업체계 구축 및 역량강화, 마지막으로 농상공(農商工) 연계에 의한 농어촌산업 육성을 주장하였음.

- 또한 시·군단위 농어촌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였음. 첫째, 원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생산기반 정비, 둘째, 농어촌형 산업집적지 조성 및 농공단지의 특화단지로의 리모델링, 셋째, 농산어촌형 관광·문화·서비스산업 활성화, 넷째, 인력양성 및 R&D 기반 구축, 다섯째, 농어촌 기업 창업보육 지원, 여섯째, 지역공동마케팅 및 수출체계 구축, 마지막으로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를 제시하였음.
- 이동필 외(2009)는 「경제·생활권 광역화에 따른 농어촌경제 활성화 방안 (1/2차년도)」에서는 광역화에 따른 농어촌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간 연계와 지역자원 발굴을 통한 내발적 농어촌 활성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음.
-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인적 통행의 광역화 경향이 우세하며
 - 군단위 농촌지역의 경우 주민들의 이동성 증대로 지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지역내 취업 및 정주기반이 갖추어지지 않아 소득의 역외 유출 경향이 심화되고 있었음.
 - 이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농어촌산업화의 고도화가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농어촌지역 경제의 활성화가 시급함을 제시하고 있음.
- 정종석·송하율·김영수·김찬준(2011) 연구는 지역산업 육성 지원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연구임.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농촌진흥청, 중소기업청의 광특회계 대상 사업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음. 지역산업지원사업의 문제점과 향후과제를 기획단계, 집행단계, 평가단계로 구분하여 제시함. 기획단계에서는 중앙주도의 분리적, 분절적 사업체계가 문제시되기 때문에 지역주도의 통합적 사업체계 구축이 필요함

을 강조함. 집행단계에서는 지역특성이 잘 반영되지 않아 획일적인 지원수단으로 집행이 이루어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장수요 맞춤형 지원체계의 도입을 주장함. 평가단계에서는 지역단위의 종합적 성과관리평가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지역단위 종합적 성과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점을 향후 과제로 제시하고 있음.

- 김용렬 · 허주녕 · 홍성학 · 이진홍(2012) 연구에서는 농촌산업 비즈니스생태계 개념을 설정하고 상생협력 실태를 분석하였음. 그 결과, 농촌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단위의 비즈니스 생태계를 건전화 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음. 또한 상생적 비즈니스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모델 개발을 하고,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제시하고 있음. 마지막으로 농촌산업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제도화 방안 제시하고 있음. 상생협력을 통해서 농촌산업 주체간 윈윈전략을 채택해야 하고, 기술개발과 판로개척을 위해서도 관련 업체간의 협력이 사업수행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도 얻었음.
- 김용렬 · 정은미 · 민자혜(2012) 연구는 향토산업육성사업의 성과분석을 통해 농촌산업 정책의 개편방안을 제시하였음. 성과분석을 위해 계량적 분석과 정성적 분석을 실시함. 성과는 긍정적으로 분석되었으며, 농촌산업정책은 광역과 향토지역을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광역단위(도단위)는 지역전략차원에서 좀 더 큰 차원의 클러스터 형식의 농촌산업정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군단위에서는 향토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소규모 클러스터 육성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함을 주장함.
- 김용렬 · 정명운 · 민자혜(2013) 연구에서는 농촌산업육성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음. 농촌산업화와 6차산업화를 위해서는 법적 기반이 매우 중요함.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농촌산업육성법(가칭) 제정의 기본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음. 첫째, 농촌사회와 공동체의 유지 및 발전이 기본 이념,

둘째, 특별법에 부합하는 농촌산업의 법적 개념 설정, 셋째, 체계적인 농촌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넷째, 중간지원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토대 마련, 다섯째, 농촌산업 육성 기반 조성의 법적 근거 마련, 여섯째, 농촌지역내 융복합화와 상생협력 강화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농촌산업육성법(가칭) 조문을 제시하였음.

3.2.2. 농촌산업화 정책 평가 관련 연구

- 농림축산식품부와 관련해서는 신활력사업이 2010년에 종료됨에 따라 성과 분석을 실시한 연구가 일부 있음. 1기 신활력사업과 2기 신활력사업 평가가 이루어짐.
 - 1기 신활력사업 평가는 사례지역 분석과 설문조사를 통한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음. 1기 신활력사업 추진 성과로는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주체를 선정한 것, 지역의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사업 추진, 지역민들의 의식 개혁, 집단적 혁신역량 강화를 들고 있음. 지자체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70.2%가 지역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답하였고, 다소 부족한 점으로는 생산 및 소득 기반 조성이 미약하였다고 평가하고 있음(이동필 · 김용렬 · 최경은 · 강민수 · 박준식 · 이기원, 2007).
 - 2기 신활력사업은 농촌활력증진계획 속에서 이루어졌음. 평가는 성과목표인 농어촌기업 매출액, 일자리 창출, 기업 유치 및 육성, 수출액과 특성화 지표, 예산집행률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음. 성공요인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핵심인물의 마인드와 능력, 짜임새 있는 사업기획과 사업내용, 체계적인 사업추진시스템, 사업종료후에도 지속되는 성과관리시스템을 꼽고 있음. 실패요인으로는 지자체장의 무관심, 담당 공무원의 잦은 교체, 총괄부서의 역할 미흡, 성과에 따른 보상체계 미흡, 핵심인물의 능력과 마인드 결여, 사업추진 시스템의 결여, 부적절한 사업내용, 준비부족으로 분석하고 있음(이기원 · 권오상 · 황태규 · 육철 · 조진상, 2011).

- 성과분석과 자가진단 모델을 중심으로 신활력사업의 성과분석을 시도하였음(손은일, 2011). 이 연구에서는 신활력사업 참여주체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지역혁신 역량강화, 추진체계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 내생적 지역발전 변수간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분석하고, 사업계획단계가 사업실행단계, 사업종료단계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도 분석하고 있음. 분석결과, 사업내용간의 영향은 지역혁신 역량 강화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추진체계 구축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역경제 활성화는 내생적 지역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얻었음. 그리고 사업단계간의 영향에서는 사업계획단계는 사업실행단계와 사업종료단계에 있어 의미 있는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얻음.
- 농림축산식품부(구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촌활력증진사업 종료에 따른 성과분석(이기원·권오상·권혁대·구승모·나정대, 2010)과 2009년에 시작하여 2011년 종료된 향토산업육성사업에 대한 성과분석(김용렬·정은미·민자혜, 2012)이 있었음.
 - 이기원 외(2010) 연구는 농촌활력증진사업 성과분석과 포괄보조사업 평가지표 적합성을 연구하였음. 농촌활력증진사업 성과분석은 본 사업의 평가체계에 있는 공통 성과지표인 경제지표와 역량지표, 특성화 성과지표, 예산집행율, 주민참여실적, 외부 네트워크 강화실적, 사업추진체계, 추진실적을 바탕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였음. 신활력사업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짐. 평가지표로는 공통 성과목표에서는 농어촌기업 매출액, 참여농가당 소득증가, 일자리 창출, 기업유치 실적, 수출실적, 지역리더양성 실적을 바탕으로 평가하였음. 특성화 성과목표는 인구증가, 방문객 증가, 연구회 포럼 등의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제시한 성과를 중심으로 평가하였음. 실적보고서를 중심으로 자료를 취합해 평가를 하였음. 그러나 일부 지자체의 자료가 미비하여 평가가 잘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도 있음. 실적이 우수한 사례와 실적이 의심되는 부분에 대해서 분리하여 평가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평가결과가 전체

적으로 어떠하였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한계임.

- 포괄보조사업에서는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에 대한 평가체계를 제안하고 있음. 사업군의 총괄평가와 내역사업평가로 단계화를 주장하고 있음. 총괄평가에서는 사업비 배분(배분의 적정성, 배분의 전략성, 배분모델의 우수성)과 사업비 집행(사업비 집행의 효율성, 관리체계의 효율성, 사업비 투입의 효과성)을 평가기준으로 제시하였음. 내역사업평가 지표는 사업기획(계획의 타당성, 계획의 일관성, 계획의 적절성), 사업집행(집행체계의 적절성, 사업추진의 진척정도, 추진과정), 사업성과(계획 대비 실적, 지역자립 기여도, 지역발전 파급효과)로 구성되어 있음. 그러나 이러한 평가항목과 평가기준, 가중치 등이 어떻게 추출되었는지에 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논리가 제공되지 않은 점이 한계임.
 - 지속적인 성과관리방안으로 성과 및 사업집행평가와 특성화 평가, 전문화된 농어촌형 컨설팅 및 모니터링체계 구축을 제시하였음.
 - 김용렬 외(2012)의 연구에서는 향토산업육성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실시함. 이 연구에서는 2009년에 시작하여 2011년에 종료된 28개 향토산업육성사업을 대상으로 성과분석을 실시하였음. 그 결과, 사업 초인 2009년도에 비해 사업종료년도인 2011년에 참여업체 매출액 50%, 일자리 46%, 참여농가 소득 32%, 수출실적 24%가 증가하였음. 또한 실적 보정 후의 투입대비 성과평가 결과, 사업지구당 최소 22억 원에서 최대 55억 원의 플러스 효과를 가져왔음. 향토산업 육성사업을 시행한 지역은 미시행지역보다 기업매출액 증가율이 31.4% 더 높았으며, 소득 총액으로 정규직 임금소득 128억 원, 일용직 임금소득 257억 원, 농가소득 48억 원에 해당하는 파급효과를 올린 것으로 분석됨.
- 산업통상자원부(구 지식경제부)의 지역연구산업진흥사업과 지역특구제도 성과, 지역전략산업육성사업에 대한 평가 관련 연구
- 김관수 · 서명천 · 안동환(2010) 연구는 지역연구산업진흥사업을 대상으

로 효율성을 분석하였음. 방법론으로는 요인분석, 군집분석, 자료포락분석을 이용하였음. 성과지표는 네트워킹, 기술개발, 인력양성, 기업지원, 사업의 정착화의 5개 범주로 하였음. 이들 5개 범주의 14개 변수를 요인분석을 통해 군집화하여 효율성 추정을 위한 사업유형을 구분하였는데, 기술개발 중심형, 기술개발 및 기업지원 중심형, 인력양성 중심형, 네트워킹 및 기업지원 중심형, 비특정형으로 구분하였음. 이러한 유형을 바탕으로 자료포락분석기법(DEA)을 활용해 사업의 효율성을 분석하였음. 연구결과 평균효율성은 인력양성 중심형이 가장 높고, 상대적으로 비특정형의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 김주훈·이재호·이경영(2007)의 연구는 지역특구제도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음. 본 제도의 추진성으로 특구제도의 안정적 조기정착,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성과확산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 구축으로 보고 있음.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참여기업 매출액 증가, 지역축제 활성화를 통한 주민 소득 증가, 기업유치 및 고용창출 제고라는 측면에서 성과가 있었음을 강조하고 있음. 그러나, 세부적인 모형을 도입한 다거나 투입 및 산출개념의 정밀한 성과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았음.
- 국회예산처(2010)에서는 지역특화발전특구사업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였음. 2009년 말 현재 운영되고 있는 129개 지역특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음. 평가는 문헌검토와 인터뷰 방법을 사용하였음. 평가는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 사업집행에 대한 평가, 사업 성과목표 달성도에 대한 평가, 사업 성과평가 및 환류에 대한 평가, 지역경제활성화 효과평가로 이루어짐. 평가결과,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에서는 지역특구 지정시 특화사업과 규제특례의 연관성 심사가 미흡하고, 특구 지정시 특화사업 재원 조달 계획 심사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사업집행에 대한 평가에서는 특화사업추진의 부진 등으로 인한 특구계획의 잦은 변경, 명목상의 특구 지정 신청으로 인한 규제특례 활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평가됨. 사업 성과목표 달성도에 대한 평가에서는 재정운영의 비효율 초래 가능성이 상존하고, 특구내 규제특례 적용의 실질적 효과 및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음. 사업 성과평가 및 환류에 대한 평가에서는 규제특례의 활용 효과에 대한 사후분석이 미흡하고, 지식경제부의 지역특구운영 성과 평가결과의 신뢰성이 부족하며, 부진 특구 조치사항 이행여부 점검 및 특구정비가 부진한 것으로 평가됨. 지역경제활성화 효과평가에서는 특구 내 기업유치, 고용증가, 인구증가, 재정자립도 개선 등에서 기대했던 것보다 미흡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따라서 성과평가지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냉정한 평가가 필요함.

- 국회예산처(2009)는 지역전략산업육성사업을 평가하였음. 평가는 사업계획평가(전략산업 선정의 타당성, 성과계획서 평가), 집행평가(지역사업의 유사성, 사업추진의 연계성 평가, 기반시설지원의 적정성 평가), 성과평가(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의 성과평가, 테크노파크조성사업의 성과평가, 지역전략산업육성사업의 연구개발 성과평가)로 구성되어 있음. 사업계획평가에서는 사업목표와 사업구성, 예산체계가 수차례 변경되어 사업계획의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평가되고 있음. 전략산업 선정의 타당성에 대해 일부 지역의 전략산업은 상위계획상 전략산업과 일치하지 않고, 전자, 기계, 바이오산업 등의 특정 산업에 집중되고 있어 국가차원의 전략산업인지 지역차원의 전략산업인지가 불분명하다고 평가되었음. 성과계획서 평가에서는 사업내용은 다양한데 비해 성과지표는 매출액과 만족도만으로 하고 있어 직접적인 성과평가이고, 누적성적을 파악할 수 없어 성취수준 확인이 어렵다는 평가임.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한 사업추진체계의 개선방안으로 성과중심의 예산운용이 필요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및 자율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집행기구의 단순화가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음.

3.3. 6차산업화에 관한 선행연구

- 이원진(2009, 농협경제연구소)은 「일본의 농상공 연대와 농협의 역할」을

통해 농상공 연대의 전개, 사례로 본 농상공 연대의 현황과 과제, 농상공 연대의 과제를 중심으로 일본의 농상공 연대를 모델로 농협의 역할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연구하여 제시하고 있음.

- 일본의 농상공 연대 88선 중 농협이 연대선으로 기재되어 있고, 농협이 어떠한 형태든 주체적으로 이끈 연대의 사례를 본 결과 모두 7건으로 전체의 8%로 아직 농협의 참여가 제한적임.
- 그러나 이러한 농협과 농상공연대에 실수요자·기업과의 연계는 농산물 유통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것이며 즉각적 수요동향을 파악하여 판매 전략을 강화하는 것으로 연결이 됨.

○ (사)한국농업경제학회(2009,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어촌 산업육성을 통한 농어촌경제 활성화 정책방향 연구」를 통해 일본 농상공 사례를 6개의 비즈니스 모델로 유형화 하여 설명함.

- 일본의 농상공 연대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며 이를 생산단계 2개, 가공·제조단계 2개, 판매·유통단계 2개로 유형을 나눠 유형별 사례를 제시함.

○ 농촌진흥청(2010)는 「신시장, 신사업 창출의 농상공연대 사례보고서」는 한국과 일본의 농상공연대 사례와 유형화를 하였으며 앞으로 농상공 연대의 나아가야 할 방향과 현재 한국에서 행해지고 있는 농상공연대의 실태를 소개하고 있음.

- 국내사례는 농상공연대에 있어서 대부분 대기업과의 연계가 많고 기업 중심의 형태임.
- 일본사례의 경우는 대기업과의 연계보다 지역내 중소기업 연계를 통해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음.

○ 김용렬·허주녕·김세종·정명운(2011) 연구는 2010년 7월 ‘제65차 비상경

제대책회의’에서 농어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육성전략을 발표하면서 농림수산식품부와 중소기업청이 협력하고, 농공상이 협력하는 중소기업이나 경영체에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에 따라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제도 방안을 제시함. 이를 위해 농공상 융합의 의미,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의 개념, 농공상 융합 관련 정책들을 고찰함으로써 새로운 농공상 융합의 방향을 모색하고,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정책의 새로운 추진체계를 제시하였음.

- 김태곤 · 허주녕(2011) 연구에서는 농업의 6차산업화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방안을 제시하였음. 6차산업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개념화 하고, 1차 산업 주도형, 2차 산업 주도형, 3차 산업 주도형으로 유형구분하여 사례도 제시하고 있음. 6차산업화의 중요한 것은 1차 산업의 조직화가 가장 중요하고, 둘째, 지역자원의 발굴과 활용, 셋째, 마을단위농지이용 계획의 수립, 넷째 경영상의 채산성 확보, 마지막으로 고부가가치 창출이라고 밝히고 있음.
- 김용렬(2011)은 지역단위에서 농공상 연대를 할 수 있는 방안과 확대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음. 농공상 연대의 의미가 무엇이며, 어떠한 철학적 배경들이 필요한지를 언급하고 있음. 지역단위에서 농공상 연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첫째, 지역단위의 농공상 연대 협력 위원회 발족과 인재 양성 필요, 둘째, 신뢰성 있는 중간조직 육성 필요, 셋째, 지역성을 살린 농공상 연대 확대 필요, 넷째, 중앙부처간의 정책 협조 극대화, 다섯째, 농공상 연대 참여기업의 농공상 연대를 통한 지역활성화 목표 공유, 여섯째, 농공상 연대 활성화를 위한 계약거래 정착, 마지막으로, 농공상 연대 촉진을 위한 법제화를 제시함.

제 2 장

농촌산업과 6차산업화의 개념과 의미

1. 농촌산업의 개념

- 농촌산업이란 광의적 개념으로 보면, 농촌(읍면)이라는 지역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생산적 경제활동을 포함하는 개념임(이동필 외, 2008).
- 좀 더 농업·농촌과 밀착해서 농촌산업을 개념화 해 보면, 1차 산업(농업), 2차 산업(공업), 3차 산업(상업), 1차×2차 융복합, 1차×3차 융복합, 1차×2차×3차 융복합 산업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농촌지역의 자원을 활용하면서 농촌지역을 기반으로 한 산업(rural-based industry)으로 개념화 할 수 있음(김용렬 외, 2012; 김용렬 외, 2013).
- 농어촌정비법에 농어촌산업을 정의하고 있음. 농어촌정비법 제2조 15항에서는 농어촌산업을 “농어촌의 특산물, 전통문화, 경관 등 유형·무형의 자원을 활용한 식품가공 등 제조업, 문화관광 등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산업”

- 국회에 계류 중인 가칭 ‘농촌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농촌 산업’이란 “농업인 또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해당 지역의 자원 및 생산물을 제조·가공·유통·문화·관광·기타 서비스 등 농업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업(業)과 복합적으로 연계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라고 정의함(김용렬 외, 2013).

그림 2-1. 농촌산업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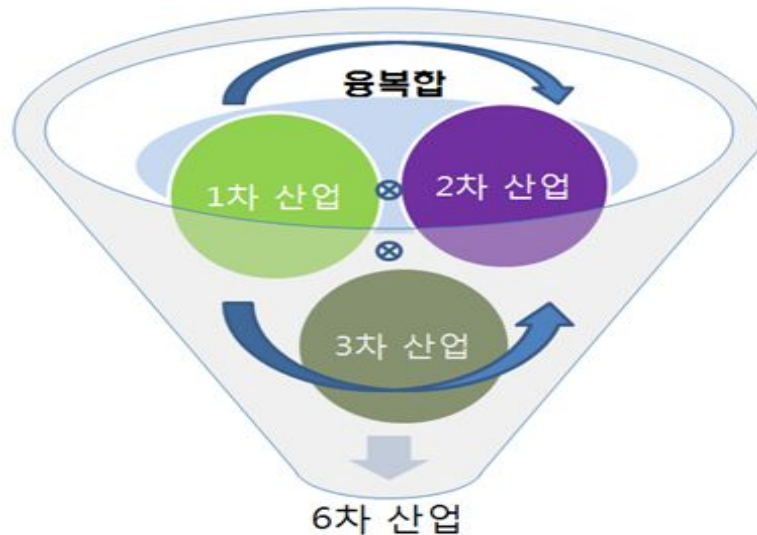
자료: 김용렬 외, 2013

2. 6차산업화와 6차산업의 개념

- 일본의 6차산업화 개념은 농업이 1차산업에만 머물기보다는 2차산업과 3차 산업까지 그 영역을 확장함으로써, 농촌에 새로운 가치를 불러일으키고, 고령자, 여성과 같은 약자 계층에게도 취업기회를 제공하여 기회를 스스로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임(Imamura Nakamura, 1998).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에 존재하는 모든 유·무형의 자원을 바탕으로 농업과 식품·특산품 제조·가공(2차산업) 및 유통·판매, 문화·체험·관광 서비스(3차산업) 등을 연계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
- 김태곤 외(2011) 연구에 따르면 “농업의 6차산업화란 농업생산이라는 1차 산업을 중심으로 하여, 농산물 가공이나 특산품 개발 등 2차 산업과 직판장이나 음식점, 숙박업, 관광업 등 3차 산업을 ‘농촌지역’에서 담당하는 것”
- 따라서, 6차산업화는 ‘1차 산업(농업)×2차 산업(제조업)×3차 산업(서비스업)이 융복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목적은 농산물의 생산-가공-판매를 연계하거나 농촌관광과도 결합해서 부가가치 증대를 통해 소득을 향상시키고, 일자리도 창출함으로써 농업·농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음.

그림 2-2. 6차산업화 개념도



자료: 박준기 외. 2013

- 6차산업은 농촌산업 중 1차 산업(농업)×2차 산업(제조업)×3차 산업(서비스업), 1차 산업(농업)×2차 산업(제조업), 1차 산업(농업)×3차 산업(서비스업)의 융복합과 연대 활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산업 영역이라 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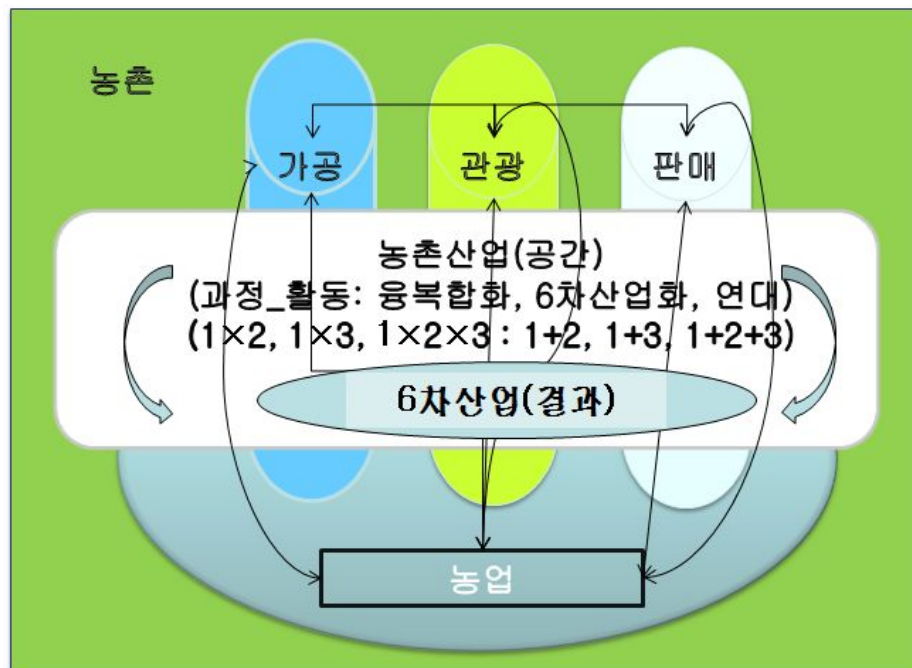
3. 농촌산업과 6차산업의 관계

- 농촌산업은 농촌지역에서 산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산업적 공간이며, 6차산업화는 산업활동 중 융복합 활동에 해당되며, 6차산업은 농촌산업 중 6차산업화 활동을 통해 형성된 산업을 의미함.
 - 농촌산업은 산업활동의 공간으로서 농촌지역을 기반으로 한 농업·농촌 관련 산업을 의미함.
 - 6차산업화는 농촌산업이란 산업적 공간에서 농업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농업과 제조업, 농업과 서비스업, 농업·제조업·서비스업을 융복합화하는 활동이며, 광의적으로는 이들간의 협력 및 연대활동도 포함될 수 있음.
 - 6차산업은 농촌산업 중 6차산업화 활동을 통해 생성된 결과물이라 할 수 있음.
- 융복합화의 중요성
 - 농업의 융·복합화는 ‘농림어업, 공업, 상업이 서로 협력하거나 융합하여 상호이익과 혁신을 증대시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컨버전스(융합, convergence)의 속성’을 지님.
 - ‘융·복합화’는 ‘협력·협동·융합·상생·공생·책임공유·가치공유·가치실현·나눔’이라는 명제들이 잘 이루어질 때 성공할 수 있음.
 - 융합의 한 형태로 서비스이징(servicizing)이라는 용어도 등장하였음. 환경을 보호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모델임. 제

조업체가 서비스를 판매하는 비즈니스 모델임. 제품과 서비스를 결합해서 판매하거나 제품과 관련된 서비스를 판매하는 비즈니스의 한 형태임. 6차산업의 경우, 농산물 생산을 중심으로 하던 농가가 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농가로 사업을 전환하거나 확장하는 것을 의미함.

- ‘네트워크 경제(Network economy)’와 상생협력
 - 첫째, 자원과 리스크를 서로 공유함으로써 이익 추구. 둘째, 동기부여의 원천은 상호 호혜와 신뢰를 바탕. 셋째, 상생(윈-윈)을 성공의 근원. 넷째, 경쟁보다는 협력의 장을 통해 활동
 - 따라서 융·복합화를 위한 상생협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경제에서 주장하는 공유와 상호이익, 상호호혜와 신뢰, 지식과 기술의 융합, 상생의 원리를 잘 적용하여야 함.

그림 2-3. 농촌산업과 6차산업의 관계



- 범위의 경제(Economy of scope)와 시너지 효과
 - 한 기업이 하나의 제품만을 생산할 때 보다 여러 종류의 제품을 생산할 때 비용이 적게 드는 경우임. 하나의 투입요소를 통해 여러 가지 상품을 생산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때 나타는 것임. 농업의 경우, 6차산업화, 복합영농, 농업의 다각화, 농공상 협력 등을 통한 비용절감, 경영 다각화와 연계가 가능함.

- 6차산업화 정책은 상생협력을 기반으로 한 융복합화 활동인 6차산업화를 통해 농업의 부가가치를 증대시키고, 이를 통해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정책적 활동을 의미 할 수 있음. 또한 6차산업화 활동이라는 혁신활동을 확대시킴으로서 농촌산업의 활성화도 꾀하고자 하는 정책이라 할 수 있음.

제 3 장

농촌산업의 동향과 6차산업 현황

1. 지표를 통해서 본 농촌산업 동향

- 농촌산업 동향 전반을 살피기 위해서는 농촌지역경제의 흐름과 농촌산업 전반의 변화를 살필 수 있어야 함.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농촌산업의 동향을 살피기 위해 아래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함.
 - 농촌지역의 경제적 상황은 어떠한가? 지역내총생산(GRDP)
 - 농촌지역의 고용상황은 현재 어떤가? 사업체 종사자 수
 - 농촌지역의 산업 중 어느 분야의 산업이 쇠퇴하고 있나? 사업체 수, 변화할당분석과 입지계수
 - 농촌지역의 경제성장을 이끄는 주요 요인은 무엇인가? 변화할당분석

1.1. 지역내총생산(GRDP)를 통해서 본 농촌지역경제 변화

-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분류될 수 있는 군지역의 경우 지역내총생산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성장률에 있어서는 일반시와 도농복합시에 비

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임.

-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GRDP의 성장의 변화를 살펴보면, 군지역은 이 기간 동안 6.0%의 성장률을 보였고, 도농복합시는 9.0%, 일반시는 4.3%를 보이고 있음.
- 그러나, 2010년부터 일반시인 마산시와 진해시가 도농통합시인 창원시도 통합되면서 일반시에서 마산시와 진해시가 제외됨에 따라 일반시의 GRDP 성장은 적어지고, 도농복합시의 성장은 크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군지역과 도시지역간의 GRDP 성장세 비교를 위해서는 2010년을 제외하는 것이 효과적임. 2010년을 제외할 경우, 군은 4.0%, 도농복합시는 5.0%, 일반시는 5.3%를 보이고 있어 군지역의 GRDP 성장세가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표 3-1. 농촌지역과 도시의 지역내총생산 비교

단위: 백만 원

구분	2007	2008	2009	2010	평균성장률 (%)	
					'10년 포함	'10년 제외
군	98,347,218	101,178,281	106,698,357	117,176,239	6.0	4.0
도농복합시	314,487,399	331,210,417	346,356,174	404,215,918	9.0	5.0
일반시	126,264,837	132,838,355	137,591,585	138,465,016	4.3	5.3

주1. 2010년부터 마산시, 진해시가 창원시로 통합되면서 일반시에서 마산시와 진해시가 제외되고 일반시의 GRDP는 감소하고, 도농복합시인 창원시의 GRDP가 확대되면서 도농복합시의 성장세 크게 나타났음. 이에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주2. 전국 모든 시군에서 GRDP를 생산하게 된 연도가 2007년임.

1.2. 농촌산업 관련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변화

○ 기본 전제

- 농촌산업 관련 사업체 및 종사자의 수만 비교함. 즉 사업체의 건전성 및 직업의 질 등 지역 산업 현황을 좀 더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기에 제한 요소가 있음.
- 본 분석의 경우, 농촌에 기반을 두고 있는 사업체의 기본적인 운영 환경 및 일자리 조건이 조사 기간에 걸쳐 어느 정도 일정할 것이라고 가정함.

○ 기본 조건

- 전국사업체조사의 농림어업 부문 사업체와 종사자 수의 경우, 농림어업 개인경영자는 포함하지 않은 숫자임. 아울러 농림어업 사업체(혹은 법인체) 중 사업체 운영을 위한 실제 사업장이 존재하며, 동시에 사업체 운영에 종사하는 1명 이상의 상근근로자가 있는 사업체의 수와 해당 종사자 수를 집계한 것임.

1.2.1. 사업체수 변화

가. 종합

- 2000년에서 2011년 사이 전국 읍면의 사업체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총계에서 사업체수가 감소한 부문은 대분류 상 농림어업과 도소매업임. 농림어업 부문은 연평균 2.7%씩 감소하여 이 기간 동안 사업체 수가 600개 줄었으며, 도소매업 부문은 연평균 0.8%씩 감소하여 사업체 수가 약 6500개 줄어듦.
 - 전국적으로 읍 지역에 비하여 면 지역의 농림어업 부문 사업체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는데, 읍 지역은 사업체 수가 7개 감소한 반면, 면지역

은 약 600개 감소함. 즉 이 부문 사업체 수 감소는 대부분 면지역 감소에 기인함.

- 전국 읍 지역 도소매업 사업체 수가 소폭(약 500개) 증가한 반면, 면 지역 도소매업 사업체 수는 큰 폭(13,260개)으로 감소함.
 - 면 지역 도소매 서비스 기능 감소로 인해 면 지역의 재화 제공 기능이 상당히 제한될 가능성을 보여줌. 그러나 읍면의 농축산품 유통 부문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농촌지역의 유통 기능은 강화된 것으로 풀이됨.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의 경우 농촌지역 전체적으로 사업체 수가 약간 증가(약 800개)한데에는 읍 지역에서의 이 부문 사업체 수 증가에 기인하는 바가 큼. 그러나 왜 증가하였는지에 대한 것은 심층 조사가 필요한 부분임.
 - 이 부문에서 읍 지역의 중심지 역할이 큰 것으로 판단됨.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의 경우 읍면 모두 사업체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함(읍지역의 증가폭이 면지역의 증가폭을 약간 앞섬).
 - 여행 및 관련 서비스업의 경우, 읍 지역의 사업체 수는 소폭(6개) 증가하였으나, 면 지역의 사업체 수는 큰 폭으로 감소함(약 100개 감소).

나. 세부 사항

- 농림어업 부문의 경우, 특히 농림어업 관련 서비스업종 사업체 수의 감소폭이 크며 이는 주로 면지역에 해당함(약 250개 감소). 전국 면 지역의 농림어업 관련 서비스 기능의 약화가 예상됨.
- 농촌산업(및 6차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조업 부문의 경우 대분류 상으로는 사업체 수가 증가하였으나, 소분류 상 음식료품 제조업과 농림수산물 가공 부문의 사업체 수가 감소하였음.
 - 읍 지역 음식료품 제조업 사업체의 수는 약 1,200개 증가한 반면, 면 지

역의 음식료품 제조업 사업체 수는 약 1,850개 감소함. 즉 읍 지역을 중심으로 음식료품 제조 기능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농림수산물가공 부문의 경우, 읍 지역 사업체 수는 200여개 증가하여 소폭 증가한 반면, 면 지역의 사업체 수는 약 3,100여개 감소하여 그 감소세가 컸음. 즉 면 지역의 농림수산물가공 기능의 약화를 짐작해 볼 수 있음.
- 숙박 및 음식점업 부문의 경우, 읍 지역의 사업체 수는 지속적인 증가세에 있으며, 면 지역의 경우 2000년대 초반기에 사업체 수가 감소하다가 2005년 이후 점차 증가함(표 3-2 참조).
- 연구개발 기반 분야의 경우, 읍면 지역 모두 사업체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함(읍지역의 경우 400여개 증가, 면지역의 경우 360여개 증가함).

표 3-2. 농촌지역 농촌산업 사업체 수 연도별 현황

단위: 개, %

구분	농촌									
	읍지역			면지역			읍면 합계			
	2000년	2005년	2011년	2000년	2005년	2011년	2000년	2005년	2011년	연평균 증감률 (00/11)
농림어업	719	698	712	1,769	1,065	1,176	2,488	1,763	1,888	-2.7%
-농림어업 관련 서비스업	424	452	425	650	439	397	1,074	891	822	-2.6%
제조업	27,816	33,896	37,913	48,417	53,994	63,053	76,233	87,890	100,966	2.8%
○음식료품제조업	6,930	8,119	8,147	16,170	15,019	14,327	23,100	23,138	22,474	-0.3%
-농림수산물 가공	5,694	5,583	5,911	13,979	11,164	10,884	19,673	16,747	16,795	-1.6%
도소매업	80,373	75,482	80,879	77,134	63,874	64,959	157,507	139,356	145,838	-0.8%
-가공및비가공농 축산물유통 숙박 및 음식점업	1,639	1,956	2,821	1,287	1,812	2,928	2,926	3,768	5,749	7.0%
-관광관련 (음식/숙박)	58,079	60,440	66,824	73,232	71,821	76,187	131,311	132,261	143,011	0.9%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34,479	37,667	41,868	52,451	54,178	59,232	86,930	91,845	101,100	1.5%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3,461	3,325	4,274	1,890	1,560	1,829	5,351	4,885	6,103	1.3%
-연구개발 기반분야	216	310	614	154	222	518	370	532	1,132	11.8%
-기타연구개발 지원분야	556	497	757	134	136	183	690	633	940	3.1%
사업시설관리 및사업지원서 비스업	971	1,427	2,641	659	875	1,597	1,630	2,302	4,238	10.0%
-여행및관련 서비스업	394	395	400	347	307	255	741	702	655	-1.2%
그외3차산업	73,045	83,926	97,393	84,645	83,990	88,852	157,690	167,916	186,245	1.7%
전 산업 합계	262,460	284,954	319,568	309,337	302,420	325,973	571,797	587,374	645,541	1.2%

- 주: 1) 농업관련 서비스업은 산업 세분류 상 '작물재배 관련 서비스업', '농산물 건조, 선별 및 기타 수확후 서비스업', '축산 관련 서비스업', '임업 관련 서비스업', '어업관련 서비스업'을 의미
 2) 음식료품 제조업은 산업 중분류 상 '음·식료품 제조업'을 의미
 3) 농수산물 가공은 산업 소분류 상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제조업', '낙농제품 및 식용빙과류 제조업', '곡물가공품, 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 그리고 산업 세분류 상 '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 제조업', '기타 식료품 제조업',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을 의미
 4) 가공 및 비가공 농축산물 유통은 산업 세분류 상 '산업용 농축산물 및 산동물 도매업', '비가공 식품 도매업'을 의미
 5) 관광(음식·숙박)은 산업 세분류 상 '관광 숙박시설 운영업', '일반 음식점업'을 의미
 6) 여행 및 관련 서비스업은 산업 세분류 상 '여행사업'과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을 의미
 7) 연구개발 기반 분야는 산업 세분류상 '자연과학 연구 개발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기술시험, 검사 및 분석업'을 의미
 8) 기타 연구개발 지원은 산업 세분류 상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건축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그외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을 의미
 9) 그 외 3차 산업은 산업 대분류 상 '전기·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을 의미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각 년도

1.2.2. 종사자수 변화

가. 종합

- 농림어업 부문 사업체 종사자의 64%(2011년 기준 20,567명)가 농촌지역(행정구역 상 읍/면)에서 근무하고 있음.
 - 다시 말하여 도농복합시를 포함한 행정구역 상 도시(동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분류 상 농림어업 부문 사업체 종사자의 36%가 근무함.
 - 이는 주로 농촌지역의 농림어업 부문 사업체 종사자의 감소에 기인한 것인데, 농촌지역의 이 부문 종사자의 감소폭이 급격(2011년도의 경우, 2000년 대비 해당 부문 사업체 종사자 수가 절반 이하로 급감)하였던 반면, 도시 지역의 경우 오히려 이 부문 종사자 수가 약 1,400명 가까이(2000년도 도시 지역 농림어업 부문 사업체 종사자 대비 13.7%) 증가함.
- 제조업 부문 종사자 수의 증가폭이 사업체 수 증가폭을 상회함. 즉 이 부문 사업체 수 증가폭은 2.8%였던 반면, 종사자 수 증가폭은 3.8%였음.
 - 읍면 지역에 위치한 제조업체의 규모가 평균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 도소매업 부문의 경우, 면 지역의 증가는 4,000여 명이었던 반면 읍 지역에 서는 2만여 명 증가하여, 읍 지역의 종사자 수 증가폭이 두드러짐.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부문의 경우, 읍 지역의 경우 종사자 증가량이 5,000명에 못 미친 반면 면지역의 경우 약 1만 명 가까이 증가하여, 면 지역의 증가폭이 두드러짐.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의 경우, 읍면 모두 급격한 증가세를 보임.
 - 사업체 수 증가폭은 10%였던 반면 종사자 수 증가폭 16.1%였음. 즉 평

균적으로 해당 분야 사업체의 규모가 증가하였음을 유추해 볼 수 있음.

나. 세부 사항

- 농림어업 부문 사업체 종사자 수가 연평균 7.6%씩 감소한데 반해, 농림어업 관련 서비스업 종사자 수는 비교적 소폭인 1.6%씩 감소함.
 - 다만 읍 지역의 농림어업 관련 서비스업 종사자 수는 2000년도 수준을 유지한 반면, 면 지역의 해당 부문 종사자 수는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감소함.
- 제조업 전체 종사자 수 증가폭인 연 3.8%와 비교할 때, 6차산업과 관련된다 고 여겨지는 음식료품 제조업과 농림수산물가공 부문의 종사자 수 증가폭이 각각 1.7%와 1.5%로 비교적 작음.
- 도소매업 부문 종사자 수의 연평균 증가율(0.7%)과 비교할 때, 농축산물 유통 분야의 종사자 수는 연평균 9.8%의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며, 종사자 수 증가폭이 사업체 수 증가폭을 상회함.
 - 과거보다 큰 규모의 농축산물 유통업체 설립이 지속적으로 늘어났으며, 이에 따라 업체별 종사자 수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임.
- 연구개발 기반 분야의 경우, 읍면 모두 종사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함(읍면 합계 연평균 증가율 7.4%).
 - 다만 사업체 수 증가폭에 비하여 종사자 수의 증가폭이 작음. 즉 평균적으로 과거보다 적은 규모의 연구개발 기반 분야 신규 사업체들이 생겨났음을 유추해 볼 수 있음.
- 여행 및 관련 서비스업의 경우 종사자 수가 연평균 4.1%의 큰 폭으로 감소함.
 - 사업체 수의 감소세보다 종사자 수 감소세가 두드러짐. 즉 본 부문의 경우, 사업체 수의 감소와 더불어 사업 규모의 축소도 동시에 이뤄진 것으로 보임.

표 3-3. 농촌지역 농촌산업 종사자 수 연도별 현황

단위: 명, %

구분	농촌									
	읍지역			면지역			읍면 합계			연평균 증감율 (00/11)
	2000년	2005년	2011년	2000년	2005년	2011년	2000년	2005년	2011년	
농림어업	12,777	8,612	8,620	32,628	11,440	11,947	45,405	20,052	20,567	-7.6%
-농림어업 관련 서비스업	5,818	6,161	5,797	5,046	3,598	3,450	10,864	9,759	9,247	-1.6%
제조업	327,875	402,451	474,194	586,523	679,813	852,034	914,398	1,082,264	1,326,228	3.8%
○음식료품제조업	40,356	46,185	50,730	90,465	93,506	103,501	130,821	139,691	154,231	1.7%
-농림수산물가공	30,815	32,907	37,322	73,134	73,868	83,872	103,949	106,775	121,194	1.5%
도소매업	174,754	167,327	194,404	154,189	134,907	158,292	328,943	302,234	352,696	0.7%
-가공및비가공 농축산물유통	4,673	6,527	10,894	5,269	8,127	14,431	9,942	14,654	25,325	9.8%
숙박및음식점업	133,776	140,591	159,202	168,766	171,318	182,819	302,542	311,909	342,021	1.2%
-관광관련 (음식/숙박)	79,545	91,445	104,514	124,206	134,176	146,944	203,751	225,621	251,458	2.1%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8,705	15,827	23,049	9,579	9,286	18,297	28,284	25,113	41,346	3.9%
-연구개발 기반분야	4,398	5,314	9,084	4,876	4,773	9,815	9,274	10,087	18,899	7.4%
-기타연구개발 지원분야	2,751	2,260	2,819	625	892	1,258	3,376	3,152	4,077	1.9%
사업시설관리 및사업지원서 비스업	7,029	10,903	32,016	5,219	9,718	22,288	12,248	20,621	54,304	16.1%
-여행및관련 서비스업	1,803	1,687	1,317	1,187	985	656	2,990	2,672	1,973	-4.1%
그외3차산업	411,548	466,652	588,931	376,609	406,925	495,645	788,157	873,577	1,084,576	3.2%
전 산업 합계	1,144,352	1,281,621	1,565,449	1,396,139	1,501,544	1,836,473	2,540,491	2,783,165	3,401,922	3.0%

주: 1) 농업관련 서비스업은 산업 세분류 상 '작물재배 관련 서비스업', '농산물 건조, 선별 및 기타 수확후 서비스업', '축산 관련 서비스업', '임업 관련 서비스업', '어업관련 서비스업'을 의미
 2) 음식료품 제조업은 산업 중분류 상 '음·식료품 제조업'을 의미
 3) 농수산물 가공은 산업 소분류 상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제조업', '낙농제품 및 식품빙과류 제조업', '곡물가공품, 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 그리고 산업 세분류 상 '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 제조업', '기타 식료품 제조업',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을 의미
 4) 가공 및 비가공 농축산물 유통은 산업 세분류 상 '산업용 농축산물 및 산동물 도매업', '비가공 식품 도매업'을 의미
 5) 관광(음식·숙박)은 산업 세분류 상 '관광 숙박시설 운영업', '일반 음식점업'을 의미
 6) 여행 및 관련 서비스업은 산업 세분류 상 '여행사업'과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을 의미
 7) 연구개발 기반 분야는 산업 세분류상 '자연과학 연구 개발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기술시험, 검사 및 분석업'을 의미
 8) 기타 연구개발 지원은 산업 세분류 상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건축 및 조정설계 서비스업', '그외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을 의미
 9) 그 외 3차 산업은 산업 대분류 상 '전기·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을 의미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각 년도

1.3. 변화할당 분석(Shift-Share Analysis)을 통해서 본 농촌산업의 변화

○ 기본 전제

- 변화할당 분석은 국가의 전체적인 경제 지형의 변화가 특정 지역에도 유사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온다고 전제함.

○ 변화할당 분석 방법

- 변화할당 분석은 어떤 지역 특정 산업의 기준년도와 비교년도의 성장요인을 분석하는 기법임. 즉 기준년도 대비 비교년도의 연관 수치가 주로 어떤 요인에 의하여 변화하였는지에 대하여 일반화하여 추정해보는 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전국 산업별 수치(본 연구의 경우 종사자 수) 변화량을 기준으로 어떤 지역 내 산업별 수치의 변화가 ①국가산업 전체의 성장(혹은 위축)으로 인한 요인, ②산업 구조적 성장(혹은 위축)에 의한 요인, ③지역적 강점(혹은 취약점)에 의한 요인 등 3가지 요인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하여 추정해 볼 수 있게 해 줌(아래의 수식에서 좌변은 비교년도 간 고용량의 변화량을 나타내며, 우변은 앞서 언급한 ①②③을 차례대로 나타냄. 아울러 표 3-4의 국가성장효과는 ①, 산업 구조효과는 ②, 지역할당효과는 ③을 수치화하여 보여주고 있음).

$$E_{ij}(c) - E_{ij}(0) = E_{ij}(0) \times \frac{E(c) - E(0)}{E(0)} + E_{ij}(0) \times \left\{ \frac{E_i(c)}{E_i(0)} - \frac{E(c)}{E(0)} \right\} + E_{ij}(0) \times \left\{ \frac{E_{ij}(c)}{E_{ij}(0)} - \frac{E_i(c)}{E_i(0)} \right\}$$

* E_{ij} : j지역 i산업의 고용인구

E_i : 전국 i산업의 고용인구

E : 전국의 총 고용인구

c : 비교년도

0 : 기준년도

- 변화할당분석의 각 요인을 살펴보면, 국가성장효과(①)는 당위적 의미를

갖는 지역 외적 요인으로서 지역산업의 성장(본 연구의 경우 종사자 수의 증가) 총량 중 국가 전체의 성장에 의하여 이뤄진 부분을 의미함.

- 산업구조효과(②)는 지역 내적 요인으로서 지역산업의 성장 총량 중 지역의 산업구조적인 측면이 미친 영향을 의미함.
- 지역할당효과(③)는 또 하나의 지역 내적 요인으로서 지역산업의 성장 총량 중 지역의 경쟁적 우위(혹은 열위)로 인해 나타난 부분을 각각 보여주고 있음(박종화 외, 1995; 박원석 외, 2005; 이춘근 외, 2008; 김홍배, 2009).
- 즉 본 연구에서는 각 지역의 산업별 성장요인을 지역적(농촌지역 중심) 관점에서 주로 살펴보고자 하므로 특히 지역 내적 요인에 의한 성장효과를 나타내는 산업구조효과와 지역할당효과를 중심으로 살펴봄.

1.3.1. 농촌지역 전체

- 전국 농촌지역은 비교적 지속적으로 지역의 각종 서비스 관련 산업에 대하여 산업 구조적, 지역적 성장요인 모두에 의한 고용성장효과를 나타냄.
 - 농촌지역의 환경 관련 산업(하수/폐기물/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운수업, 부동산 및 임대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산업구조효과와 지역할당효과 모두 양의 값을 나타냄(표 3-4, 3-5 참조). 즉 산업구조 상 상승 요인(고용 측면)의 이점뿐만 아니라 지역적 요인에 의한 고용성장효과를 동시에 누림. 즉 대분류 상위 산업들은 전국적인 고용 성장 기조의 이점을 누렸을 뿐만 아니라 지역적 성장요인이 고용자 수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됨.
- 제조업과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부문의 경우(표 3-4, 3-5 참조), 지역할당효과가 음의 값을 갖는 산업구조효과를 크게 앞섬. 즉 지역적 성장요인에 의한 고용성장효과가 큼(전국 산업구조상 고용 감소 기조를 상쇄하고 남은 정도의 고용성장효과를 보임).
 - 즉 농촌지역에서 해당 부문과 관련한 6차산업화 정책과 연계가 필요함.

표 3-4. 농촌지역 산업의 고용성장효과(2000/2011년)

단위: 명

구분	총변화효과 ³ ④=①+②+③	국가성장효과 ⁴ ①	산업구조효과 ⁵ ②	지역할당효과 ⁶ ③=④-①-②	순상대효과 ⁷ ②+③
농림어업	-24,838	14,982	-34,128	-5,692	-39,820
광업	-4,522	5,541	-9,811	-252	-10,063
제조업	411,830	301,718	-209,821	319,933	110,112
전기가스수도업	6,853	5,537	-2,545	3,861	1,316
하수/폐기물/원료 재생및환경복원업	16,370	3,219	7,118	6,033	13,151
건설업	63,996	32,763	40,795	-9,562	31,233
도소매업	23,753	108,539	-83,863	-924	-84,786
운수업	47,822	31,006	1,246	15,570	16,816
숙박및음식점업	39,479	99,828	-44,596	-15,753	-60,349
출판/영상/방송통 신및정보서비스업	-2,905	8,040	192	-11,137	-10,945
금융및보험업	-18,005	25,135	-12,114	-31,026	-43,140
부동산업및임대업	14,127	9,401	1,030	3,696	4,726
전문/과학및기술서 비스업	13,062	9,333	30,921	-27,191	3,729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42,056	4,041	34,327	3,687	38,015
공공행정,국방및사 회보장행정	24,191	38,983	-12,615	-2,177	-14,792
교육서비스업	62,799	56,917	38,149	-32,267	5,882
보건업및사회복지 서비스업	109,626	24,305	74,802	10,519	85,321
예술,스포츠및여가 관련서비스업	25,009	15,292	-4,564	14,281	9,717
협회및단체,수리및 기타개인서비스업	10,728	43,689	-12,670	-20,292	-32,961
총계	861,431	838,270	-198,146	221,307	23,161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각 년도 자료 활용

3 비교 년도 간 해당 지역 산업별 고용량의 총 변화량을 나타냄. 즉 이 기간 동안 고용량이 얼마나 증가, 혹은 감소하였는지를 나타냄.

4 해당 산업의 고용 증가분 중 국가 전체의 총산업 성장으로 인해 유발된 정도

5 산업구조효과가 양의 값을 나타낸 경우, 해당 산업의 특화도가 전국 산업 대비 평균 이상임을 나타냄.

6 지역할당효과가 양의 값을 나타낸 경우, 해당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임을 의미함.

7 산업구조효과와 지역할당효과를 합산하여 산출된 값

표 3-5. 전국 농촌지역의 변화할당분석 결과(대분류 기준)

구분	산업구조효과(+) 지역할당효과(+)	산업구조효과(+) 지역할당효과(-)	산업구조효과(-) 지역할당효과(+)
대분류 산업	-하수/폐기물/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운수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건설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3.2. 광역시도의 농촌지역

가. 경기도 농촌지역

- 경기도의 농촌지역은 운수업 부문의 경우 산업구조효과와 지역할당효과 모두 양의 값을 나타내고 있음
 - 제조업과 도소매업 부문의 경우 지역할당효과가 음의 값을 갖는 산업구조효과를 크게 앞섬. 즉 지역적 성장요인에 의한 고용성장이 특히 많이 이뤄짐(각 부문 지역할당효과 1만 명 이상)(표 3-6, 3-7 참조).
 - 이밖에도 농림어업, 숙박 및 음식점업, 그리고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부문에 있어 지역적 성장요인이 존재함.

나. 강원도 농촌지역

- 강원도 농촌지역의 건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부문은 산업구조효과와 지역할당효과 모두 양의 값을 나타냄. 즉 이 부문들은 전국적 고용 성장 기조의 이점을 누렸을 뿐만 아니라, 지역적 요인에 의한 고용 유발이 함께 이뤄짐.
- 강원도의 농촌지역은 농림어업,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그리고 예술/스

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부문에 있어 지역적 요인에 의한 성장이 비교적 많이 이뤄짐.

- 다만, 이들 중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부문을 제외한 타 부문의 경우 산업 구조적 요인(산업구조효과)에 의한 고용감소 폭이 큼에 따라 지역적 강점을 살리는 데에는 일정 부분 제약이 있음.

표 3-6. 경기도 농촌지역 산업의 고용성장효과(2000/2011년)

단위: 명

구분	총변화효과	국가성장효과	산업구조효과	지역할당효과	순상대효과
농림어업	566	513	-1,169	1,222	53
광업	222	444	-787	565	-222
제조업	138,943	106,495	-74,059	106,507	32,448
전기가스수도업	-67	571	-263	-376	-638
하수/폐기물/원료재 생 및 환경복원업	4,289	958	2,118	1,214	3,331
건설업	12,114	5,642	7,026	-554	6,472
도소매업	26,346	21,502	-16,614	21,457	4,844
운수업	24,288	6,916	278	17,094	17,372
숙박 및 음식점업	13,097	20,834	-9,307	1,570	-7,737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629	1,343	32	-3,004	-2,972
금융 및 보험업	-3,230	3,877	-1,869	-5,239	-7,107
부동산업 및 임대업	3,483	3,609	395	-522	-126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2,253	4,617	15,295	-22,165	-6,870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10,017	1,277	10,849	-2,110	8,740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317	4,105	-1,328	-2,459	-3,788
교육서비스업	14,056	11,111	7,447	-4,502	2,945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8,241	5,385	16,574	-3,718	12,856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6,205	5,127	-1,530	2,608	1,078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3,411	8,608	-2,496	-2,701	-5,197
총계	268,416	212,935	-49,407	104,888	55,481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각 년도 자료 활용

표 3-7. 경기도 농촌지역의 변화할당분석 결과(대분류 기준)

구분	산업구조효과(+) 지역할당효과(+)	산업구조효과(+) 지역할당효과(-)	산업구조효과(-) 지역할당효과(+)
대분류업	-하수/폐기물/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운수업	-건설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표 3-8. 강원도 농촌지역 산업의 고용성장효과(2000/2011년)

단위: 명

구분	총변화효과	국가성장효과	산업구조효과	지역할당효과	순상대효과
농림어업	-283	621	-1,415	511	-904
광업	-1,778	1,668	-2,953	-493	-3,446
제조업	4,104	8,208	-5,708	1,604	-4,104
전기가스수도업	197	449	-206	-46	-252
하수/폐기물/원료재 생 및 환경복원업	1,148	164	363	620	984
건설업	6,988	2,773	3,453	761	4,215
도소매업	-643	8,363	-6,462	-2,544	-9,006
운수업	1,330	2,014	81	-765	-684
숙박 및 음식점업	7,979	10,682	-4,772	2,069	-2,703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781	675	16	90	106
금융 및 보험업	-1,599	2,193	-1,057	-2,735	-3,792
부동산업 및 임대업	1,457	612	67	777	845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2,048	576	1,909	-437	1,472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4,386	229	1,948	2,209	4,157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3,055	4,089	-1,323	289	-1,034
교육서비스업	3,688	4,136	2,772	-3,220	-448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7,507	1,723	5,304	480	5,784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3,839	1,539	-459	2,760	2,300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1,036	3,172	-920	-1,216	-2,136
총계	45,240	53,887	-8,442	1,930	-8,647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각 년도 자료 활용

표 3-9. 강원도 농촌지역의 변화할당분석 결과(대분류 기준)

구분	산업구조효과(+) 지역할당효과(+)	산업구조효과(+) 지역할당효과(-)	산업구조효과(-) 지역할당효과(+)
대분류 산업	-하수/폐기물/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운수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농림어업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다. 충청북도 농촌지역

- 충청북도 농촌지역의 운수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각 산업 부문은 산업구조효과와 지역할당효과 모두 양의 값을 나타냄. 즉 전국적 고용 성장 기조의 이점을 누렸을 뿐만 아니라, 지역적 성장요인에 의한 고용성장이 함께 이뤄짐.
- 충청북도 농촌지역의 농림어업, 제조업, 공공행정,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각 산업 부문에 있어 지역할당효과가 음의 값을 갖는 산업구조효과를 앞섬. 즉 지역적 요인에 의한 성장이 많이 이뤄짐.

라. 충청남도 농촌지역

- 충청남도 농촌지역의 운수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 각 산업 부문은 산업구조효과와 지역할당효과 모두 양의 값을 나타냄. 즉 전국적 고용 성장 기조의 이점을 누렸을 뿐만 아니라, 지역적 요인에 의한 성장이 함께 이뤄짐.

- 충청남도 농촌지역의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부문에 있어 지역할당효과가 음의 값을 갖는 산업구조효과를 앞섬. 즉 지역적 요인에 의한 고용 유발이 많이 이뤄짐.
- 충청남도의 농촌지역은 비록 농림어업 부문의 총 고용량은 감소하였으나, 지역적 우수 요인(지역할당효과)에 의하여 그 감소효과가 상쇄됨.

표 3-10. 충청북도 농촌지역 산업의 고용성장효과(2000/2011년)

(단위: 명)

구분	총변화효과	국가성장효과	산업구조효과	지역할당효과	순상대효과
농림어업	577	218	-496	855	359
광업	-291	316	-560	-47	-607
제조업	43,041	23,135	-16,089	35,994	19,906
전기가스수도업	127	193	-89	23	-66
하수/폐기물/원료재 생 및 환경복원업	1,450	308	681	461	1,142
건설업	3,017	2,632	3,277	-2,892	385
도소매업	459	6,981	-5,394	-1,128	-6,522
운수업	2,605	2,101	84	420	504
숙박 및 음식점업	2,029	6,881	-3,074	-1,778	-4,852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221	517	12	-750	-738
금융 및 보험업	-1,429	1,847	-890	-2,386	-3,276
부동산업 및 임대업	1,551	515	56	979	1,036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3,214	370	1,225	1,619	2,84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3,024	323	2,744	-43	2,701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4,342	2,949	-954	2,348	1,393
교육서비스업	5,427	3,950	2,647	-1,170	1,477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7,557	1,520	4,677	1,360	6,037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2,078	888	-265	1,455	1,190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625	2,987	-866	-1,496	-2,362
총계	79,182	58,631	-13,271	33,823	20,551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각 년도 자료 활용

표 3-11. 충청북도 농촌지역의 변화할당분석 결과(대분류 기준)

구분	산업구조효과(+) 지역할당효과(+)	산업구조효과(+) 지역할당효과(-)	산업구조효과(-) 지역할당효과(+)
대분류업	-하수/폐기물/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운수업 및 임대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농림어업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표 3-12. 충청남도 농촌지역 산업의 고용성장효과(2000/2011년)

단위: 명

구분	총변화효과	국가성장효과	산업구조효과	지역할당효과	순상대효과
농림어업	-415	901	-2,053	737	-1,316
광업	802	507	-897	1,193	295
제조업	93,410	36,632	-25,475	82,253	56,778
전기가스수도업	1,649	754	-347	1,242	895
하수/폐기물/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2,303	320	708	1,275	1,983
건설업	8,339	4,696	5,848	-2,205	3,643
도소매업	1,554	14,708	-11,364	-1,790	-13,154
운수업	6,544	3,530	142	2,872	3,014
숙박 및 음식점업	5,772	12,211	-5,455	-984	-6,439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322	1,248	30	-1,600	-1,570
금융 및 보험업	-2,325	3,530	-1,702	-4,154	-5,855
부동산업 및 임대업	2,883	1,075	118	1,690	1,808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2,436	981	3,250	-1,795	1,455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6,319	841	7,144	-1,666	5,478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842	5,221	-1,689	-2,690	-4,379
교육서비스업	11,666	7,885	5,285	-1,505	3,781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3,840	2,725	8,386	2,729	11,115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2,025	1,489	-444	980	536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2,905	5,604	-1,625	-1,074	-2,699
총계	160,227	104,860	-20,141	75,508	55,367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각 년도 자료 활용

표 3-13. 충청남도 농촌지역의 변화할당분석 결과(대분류 기준)

구분	산업구조효과(+) 지역할당효과(+)	산업구조효과(+) 지역할당효과(-)	산업구조효과(-) 지역할당효과(+)
대분류 산업	-하수/폐기물/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운수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건설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마. 전라북도 농촌지역

- 전라북도 농촌지역의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그리고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각 부문은 산업구조효과와 지역할당효과 모두 양의 값을 나타냄. 즉 이 부문들은 전국적 고용 성장 기조의 이점을 누렸을 뿐만 아니라, 지역적 요인에 의한 성장이 함께 이뤄짐.
- 전라북도 농촌지역의 제조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부문에 있어 지역할당효과가 음의 값을 갖는 산업구조효과를 앞섬. 즉 지역적 요인에 의한 고용성장이 많이 이뤄짐.
- 전라북도의 농촌지역은 비록 농림어업 부문의 총 고용량은 감소하였으나, 지역적 우수 요인(지역할당효과)에 의하여 그 감소효과가 상쇄됨.

바. 전라남도 농촌지역

- 전라남도의 농촌지역은 제조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부문에 있어 지역적 성장요인(지역할당효과)에 의한 고용 유발이 이뤄졌으나, 음의 값을 갖는 산업구조효과로 인하여 지역 성장요인이 상쇄됨.

- 전라남도의 농촌지역은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부문에 있어 타 지역 대비 지역적 요인(지역할당효과)에 의한 고용감소가 두드러짐.

표 3-14. 전라북도 농촌지역 산업의 고용성장효과(2000/2011년)

단위: 명

구분	총변화효과	국가성장효과	산업구조효과	지역할당효과	순상대효과
농림어업	-80	630	-1,434	725	-710
광업	-154	293	-519	72	-447
제조업	8,941	11,162	-7,762	5,541	-2,221
전기가스수도업	193	237	-109	65	-44
하수/폐기물/원료재 생 및 환경복원업	742	99	219	424	643
건설업	2,290	1,801	2,242	-1,753	489
도소매업	-3,812	7,090	-5,478	-5,424	-10,902
운수업	1,276	1,771	71	-566	-495
숙박 및 음식점업	-56	5,462	-2,440	-3,078	-5,518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98	661	16	-775	-759
금융 및 보험업	-1,014	1,651	-796	-1,869	-2,665
부동산업 및 임대업	153	348	38	-233	-195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547	278	920	-651	269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1,694	117	995	582	1,577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1,530	3,250	-1,052	-668	-1,720
교육서비스업	1,984	4,221	2,829	-5,067	-2,237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8,576	1,529	4,705	2,342	7,047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964	697	-208	475	267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356	2,893	-839	-2,410	-3,249
총계	23,320	44,189	-8,601	-12,268	-20,869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각 년도 자료 활용

표 3-15. 전라북도 농촌지역의 변화할당분석 결과(대분류 기준)

구분	산업구조효과(+) 지역할당효과(+)	산업구조효과(+) 지역할당효과(-)	산업구조효과(-) 지역할당효과(+)
대분류 산업	-하수/폐기물/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전문/과학 및 교육서비스업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표 3-16. 전라남도 농촌지역 산업의 고용성장효과(2000/2011년)

단위: 명

구분	총변화효과	국가성장효과	산업구조효과	지역할당효과	순상대효과
농림어업	-14,604	6,190	-14,100	-6,694	-20,794
광업	-643	1,344	-2,380	393	-1,987
제조업	13,781	16,722	-11,629	8,688	-2,941
전기가스수도업	270	885	-407	-208	-615
하수/폐기물/원료재 생 및 환경복원업	1,202	266	588	348	936
건설업	6,653	5,235	6,518	-5,100	1,418
도소매업	-6,948	15,081	-11,652	-10,377	-22,029
운수업	4	4,004	161	-4,161	-4,000
숙박 및 음식접업	-3,181	11,083	-4,951	-9,313	-14,264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817	1,202	29	-2,048	-2,019
금융 및 보험업	-2,997	3,799	-1,831	-4,965	-6,796
부동산업 및 임대업	103	638	70	-605	-535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696	1,001	3,317	-2,622	695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1,730	386	3,276	-1,932	1,34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3,606	7,162	-2,317	-1,238	-3,556
교육서비스업	2,747	7,361	4,934	-9,547	-4,614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4,089	3,825	11,771	-1,506	10,264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2,167	1,347	-402	1,222	820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2,229	6,234	-1,808	-6,655	-8,463
총계	16,629	93,762	-20,813	-56,320	-77,133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각 년도 자료 활용

표 3-17. 전라남도 농촌지역의 변화할당분석 결과(대분류 기준)

구분	산업구조효과(+) 지역할당효과(+)	산업구조효과(+) 지역할당효과(-)	산업구조효과(-) 지역할당효과(+)
대분류 산업	-하수/폐기물/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광업 -제조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사. 경상북도 농촌지역

- 경상북도 농촌지역의 건설업, 운수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 각 산업 부문은 산업구조효과와 지역할당효과 모두 양의 값을 나타냄. 즉 해당 부문의 전국적 고용 성장 기조의 이점을 누렸을 뿐만 아니라, 지역적 성장 요인에 의한 성장이 함께 이뤄짐.
- 경상북도 농촌지역의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각 산업 부문에 있어 지역할당효과가 음의 값을 갖는 산업구조효과를 앞섬. 즉 지역적 요인에 의한 성장이 많이 이뤄짐.

아. 경상남도 농촌지역

- 경상남도 농촌지역의 부동산업 및 임대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각 산업 부문은 산업구조효과와 지역할당효과 모두 양의 값을 나타냄. 즉 종사자 수 증가에 있어 전국적 고용 성장 기조의 이점을 누렸을 뿐만 아니라, 지역적 요인에 의한 성장이 함께 이뤄짐.

- 경상남도의 농촌지역의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업, 공공행정,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부문에 있어 지역할당효과가 음의 값을 갖는 산업구조 효과를 앞섬. 즉 지역적 요인에 의한 성장이 많이 이뤄짐.

표 3-18. 경상북도 농촌지역 산업의 고용성장효과(2000/2011년)

단위: 명

구분	총변화효과	국가성장효과	산업구조효과	지역할당효과	순상대효과
농림어업	-74	746	-1,699	879	-820
광업	-351	534	-945	60	-885
제조업	45,040	35,450	-24,652	34,243	9,590
전기가스수도업	1,667	1,110	-510	1,067	557
하수/폐기물/원료재 생 및 환경복원업	1,974	522	1,154	299	1,452
건설업	8,885	3,676	4,578	631	5,209
도소매업	-123	14,108	-10,901	-3,331	-14,231
운수업	4,050	3,560	143	347	490
숙박 및 음식점업	55	13,751	-6,143	-7,553	-13,696
출판/영상/방송통신 및정 보서비스업	-201	1,033	25	-1,258	-1,234
금융 및 보험업	-2,465	3,331	-1,605	-4,191	-5,796
부동산업 및 임대업	865	841	92	-68	24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547	562	1,862	-877	985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2,538	306	2,601	-369	2,232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3,096	5,836	-1,889	-852	-2,740
교육서비스업	7,696	7,913	5,304	-5,521	-217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4,378	2,603	8,010	3,765	11,775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1,935	1,612	-481	804	323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2,193	5,805	-1,684	-1,929	-3,612
총계	92,705	103,299	-26,741	16,147	-10,594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각 년도 자료 활용

표 3-19. 경상북도 농촌지역의 변화할당분석 결과(대분류 기준)

구분	산업구조효과(+) 지역할당효과(+)	산업구조효과(+) 지역할당효과(-)	산업구조효과(-) 지역할당효과(+)
대분류 산업	-하수/폐기물/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운수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표 3-20. 경상남도 농촌지역 산업의 고용성장효과(2000/2011년)

단위: 명

구분	총변화효과	국가성장효과	산업구조효과	지역할당효과	순상대효과
농림어업	-5,914	2,651	-6,039	-2,526	-8,565
광업	-184	213	-377	-20	-397
제조업	48,803	39,337	-27,356	36,822	9,466
전기가스수도업	729	730	-336	335	-1
하수/폐기물/원료재 생 및 환경복원업	2,362	365	808	1,189	1,997
건설업	8,558	4,347	5,413	-1,202	4,211
도소매업	1,103	14,042	-10,849	-2,089	-12,939
운수업	1,919	4,756	191	-3,029	-2,837
숙박 및 음식점업	6,787	11,982	-5,353	158	-5,195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25	977	23	-1,125	-1,102
금융 및 보험업	-2,177	3,297	-1,589	-3,885	-5,474
부동산업 및 임대업	2,047	1,026	112	909	1,021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2,493	683	2,262	-452	1,810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4,116	313	2,663	1,140	3,803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4,796	4,468	-1,446	1,774	328
교육서비스업	7,463	6,881	4,612	-4,030	582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6,910	2,840	8,741	5,328	14,070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1,764	1,553	-464	674	211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1,451	5,650	-1,638	-2,561	-4,199
총계	102,901	106,112	-30,621	27,410	-3,211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각 년도 자료 활용

표 3-21. 경상남도 농촌지역의 변화할당분석 결과(대분류 기준)

구분	산업구조효과(+) 지역할당효과(+)	산업구조효과(+) 지역할당효과(-)	산업구조효과(-) 지역할당효과(+)
대분류업	-하수/폐기물/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업 -숙박 및 음식점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표 3-22. 제주도 농촌지역 산업의 고용성장효과(2000/2011년)

단위: 명

구분	총변화효과	국가성장효과	산업구조효과	지역할당효과	순상대효과
농림어업	-4,106	2,221	-5,058	-1,268	-6,327
광업	70	56	-100	113	14
제조업	1,017	1,110	-772	679	-93
전기가스수도업	135	79	-36	92	56
하수/폐기물/원료재 생 및 환경복원업	67	29	63	-25	38
건설업	318	263	327	-272	55
도소매업	1,230	1,682	-1,299	848	-452
운수업	706	734	29	-57	-28
숙박 및 음식점업	1,712	2,048	-915	579	-336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40	122	3	-265	-262
금융 및 보험업	-463	556	-268	-751	-1,019
부동산업 및 임대업	146	51	6	90	95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77	49	164	-136	28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702	21	182	498	681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122	518	-168	-228	-396
교육서비스업	1,559	950	637	-28	609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106	360	1,108	638	1,746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2,763	465	-139	2,437	2,298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33	702	-204	-466	-669
총계	8,054	12,016	-6,439	2,477	-3,962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각 년도 자료 활용

자. 제주도 농촌지역

- 제주도 농촌지역의 부동산업 및 임대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각 산업 부문은 산업구조효과와 지역할당효과 모두 양의 값을 나타냄. 즉 종사자 수 증가에 있어 전국적 고용 성장 기조의 이점을 누렸을 뿐만 아니라, 지역적 요인에 의한 성장이 함께 이뤄짐.
- 제주도의 농촌지역의 제조업, 도소매업, 전기가스수도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부문에 있어 지역할당효과가 음의 값을 갖는 산업구조효과를 앞섬. 즉 지역적 요인에 의한 고용 유발이 많이 이뤄짐.

표 3-23. 제주도 농촌지역의 변화할당분석 결과(대분류 기준)

구분	산업구조효과(+) 지역할당효과(+)	산업구조효과(+) 지역할당효과(-)	산업구조효과(-) 지역할당효과(+)
대분류 산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하수/폐기물/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업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3.3. 변화할당분석을 통해 나타난 특징

- 우선 각 광역 시도 농촌지역의 2000년도와 2011년도 산업 부문별 종사자 수 비교를 통해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경기도는 5개 분야에서 특화되었는데, 운수업, 농림어업, 제조업, 도소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임.

- 강원도는 건설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에서 특화된 것으로 분석됨.
 - 충청북도에서 특화된 분야는 운수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제조업, 공공행정,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임.
 - 충청남도는 운수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에서 특화되었음.
 - 전라북도는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에서 특화된 것으로 나타남.
 - 전라남도는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개 분야에서 특화된 것으로 나타남.
 - 경상북도는 건설업, 운수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에서 특화되어 있음.
 - 경상남도는 부동산업 및 임대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업, 공공행정,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에서 특화된 것으로 분석됨.
 - 제주도는 부동산업 및 임대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광업, 전기가스수도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에서 특화되어 있음.
- 제조업 부문을 살펴보면, 경기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의 순상대효과가 양의 값을 보임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충청남도의 경우 음의 값을 갖는 산업구조효과보다 3배를 상회하는 지역할당효과를 나타냄. 충청북도의 경우 비록 순상대효과와 절대값은 경기도보다 적으나 지역할당효과가 음의 값을 갖는 산업구조효과의 2배를 상회함. 즉 2000년에서 2011년 사이 충청남도와 충청북도의 제조업 특화도가 특히 상승했음을 알 수 있음.

- 환경 관련 산업(하수/폐기물/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의 경우, 제주도 농촌 지역을 제외한 모든 농촌지역에서 산업구조효과와 지역할당효과 모두 양의 값을 지님. 즉 지역의 내적 성장 요인 두 가지가 모두 존재함.
- 두 연도를 조사한 결과,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의 경우 전국 농촌지역 모두에서 순상대효과 값이 양의 값을 지님. 즉 지역 성장산업으로 볼 수 있음. 특히 이 부문의 고용 상승 정도는 전국 산업 평균 고용 상승률에 미치지 못하였으나(산업구조효과), 전국 농촌지역의 고른 고용 성장요인으로 인해 모든 광역시도의 이 부문 지역할당효과는 음의 산업구조효과를 넘는 양의 값을 지님. 다만 지역 간 효과의 규모 차이를 볼 수 있도록 다음의 표를 작성함.

표 3-24. 순상대효과에 의한 광역 시도 농촌지역의 특화산업

구분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농림어업	○								
광업									
제조업	○		○	○			○	○	
전기가스수도업				○			○	○	○
하수/폐기물/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	○	○	○	○	○	○	
건설업		○					○		
도소매업	○								
운수업	○		○	○			○		
숙박 및 음식점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	○	○				○	○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				○			○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					○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	○	○		○	○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	○	○	○	○	○	○	○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표 3-25.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부문 광역시도간 고용성장효과 비교

순위	구분	고용성장효과
1	강원도	2760
2	경기도	2608
3	제주도	2437
4	충청북도	1455
5	전라남도	1222
6	충청남도	980
7	경상북도	804
8	전라북도	475
9	경상남도	211

1.4. 입지계수(Location Quotient)를 통해서 본 농촌산업의 변화

○ 기본 전제

- 입지계수⁸ 값이 1인 경우, 이는 해당 산업 내 생산물이 자급자족된다는

의미이며 그 이상의 값은 기반 활동, 즉 추가 생산 활동으로 인한 생산물이 외부에 판매되어 지역에 화폐(경제 기반) 유입을 가져 온다고 가정(박종화 외, 1995)

1.4.1. 농촌지역 전체

- 경제기반모형⁹의 가정을 도입하여 입지계수 값을 해석할 경우, 전국 농촌(행정 분류 상 읍/면) 지역에서 농림어업 부문 사업체 종사자가 생산한 결과물 전체 70.6%는 농촌지역 외부에서 사용됨(2011년 기준)(전국사업체통계산업 별 종사자 수 통계 참조).
 - 2000년도의 경우 농촌지역 농림어업 부문 사업체 생산물의 77.1%가 외부 경제에서 사용됨. 각 년도 별 외부 경제로의 유입량 차이(6.5%)는 위에 언급한 농촌지역 종사자 수 감소와 연계하여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2011년 기준, 전국 농촌지역의 농림어업 부문 사업체에서 외부 경제를 위해 생산한 양은 자가 소비를 위해 생산한 양의 2.4배에 이룸. 즉 전국적으로 이 부문에 있어 농촌에 위치한 사업체에 대한 의존율이 높다고 볼 수 있음.
- 농림어업 부문 다음으로 높은 입지계수 값을 갖는 제조업의 경우 자가 소비를 위해 생산한 양과 동일한 수준의 생산물을 외부 경제를 위해 생산함.
 - 2000년도 대비 2011년 제조업 부문 전국 도시 지역 종사자 수는 감소한 반면, 전국 농촌지역 종사자 수는 40만 명 이상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8 전국의 특정 산업 대비, 한 지역의 특정 산업 비중. 즉 전국 산업 전체에서 특정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기준으로, 한 지역의 산업이 해당 지역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산정(입지 계수=(A지역의 i산업 종사자수/A지역의 총 종사자수)/(전국 i산업 종사자수/전국 총 종사자수))

9 경제기반모형은 지역경제구조가 기반활동과 비기반활동의 2개 그룹의 활동으로 구성된다고 가정함. 여기에서 기반활동은 지역의 성장에 기여하는 활동이며, 비기반활동은 지역경제의 안정에 기여하는 활동을 의미함. 본 연구에서는 경제기반모형의 한 방식인 입지계수 분석을 통해, 입지계수 값이 1 이하인 경우는 비기반활동으로 보며 지역 내부의 경제활동으로 간주하였고, 입지계수 값이 1을 초과하는 경우 외부 수요에 따라 재화를 창출함으로써 성장요인을 축적하는 것으로 간주하였음(박종화 외, 1995).

제조업 부문 농촌지역 입지 계수가 크게 증가함. 즉 제조 부문에 있어 도시 지역(혹은 국외 지역)의 농촌지역에 대한 의존도가 커진 것으로 나타남.

- 도소매업 부문의 경우, 농촌지역 종사자 수는 증가(약 2만 4천 명) 하였으나, 산업 전 부문 대비 종사자 수 비중은 2.5% 하락하였으며, 어느 정도 외부 경제에 의존하고 있음(입지 계수 0.7).
- 전국 대비 전국 농촌지역의 입지 계수가 1.0 이상인 산업 부문은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업, 환경 관련 산업, 공공행정,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임. 즉 종사자 수 측면에서 볼 때, 전국 농촌지역은 평균적으로 위 부문들에 대하여 특화되었다고 할 수 있음.

표 3-26. 전국 농촌지역 고용량 변화/산업별 비중/입지계수(2000/2011년)

(단위: 명, %, 기타)

구분	고용자 수			산업별 비중		입지계수(LQ)	
	2000년	2011년	변화량	2000년	2011년	2000년	2011년
농림어업	45,405	20,567	-24,838	1.8%	0.6%	4.37	3.40
광업	16,792	12,270	-4,522	0.7%	0.4%	4.20	4.09
제조업	914,398	1,326,228	411,830	36.0%	39.0%	1.50	1.97
전기가스수도업	16,782	23,635	6,853	0.7%	0.7%	1.57	1.87
하수/폐기물/원료 재생및환경복원업	9,755	26,125	16,370	0.4%	0.8%	1.52	1.96
건설업	99,294	163,290	63,996	3.9%	4.8%	0.83	0.78
도소매업	328,943	352,696	23,753	12.9%	10.4%	0.71	0.70
운수업	93,967	141,789	47,822	3.7%	4.2%	0.68	0.76
숙박및음식점업	302,542	342,021	39,479	11.9%	10.1%	1.04	0.99
출판/영상/방송통 신및정보서비스업	24,366	21,461	-2,905	1.0%	0.6%	0.36	0.24
금융및보험업	76,175	58,170	-18,005	3.0%	1.7%	0.66	0.43

부동산업및임대업	28,491	42,618	14,127	1.1%	1.3%	0.46	0.50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28,284	41,346	13,062	1.1%	1.2%	0.45	0.27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12,248	54,304	42,056	0.5%	1.6%	0.33	0.36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	118,143	142,334	24,191	4.7%	4.2%	1.21	1.19
교육서비스업	172,495	235,294	62,799	6.8%	6.9%	1.00	0.87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73,660	183,286	109,626	2.9%	5.4%	0.81	0.86
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46,344	71,353	25,009	1.8%	2.1%	0.91	1.13
협회및단체,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132,407	143,135	10,728	5.2%	4.2%	1.00	0.87
총계	2,540,491	3,401,922	861,431	100.0%	100.0%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각 년도 자료 활용

1.4.2. 광역시도의 농촌지역

가. 경기도 농촌지역

- 경기도 농촌지역의 입지 계수가 1.0 이상인 산업 부문(2011년도 기준)은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환경 관련 산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임. 즉 종사자 수 측면에서 볼 때, 경기도 농촌지역은 평균적으로 위 부문들에 대하여 특화되었다고 할 수 있음.
- 경기도 농촌지역 농림어업 부문의 입지 계수는 전국 농촌의 평균 입지 계수와 비교하여 낮은 수치이지만, 2000년의 0.59와 비교하여 2011년에는 1.31로 두 배 이상 상승함.
- 경기도 농촌지역 사업체 종사자의 절반 이상이 제조업에 종사(2011년 기준)

하며, 2000년도 대비 2011년 제조업 종사자가 약 13만 9천 명 증가함.

- 건설업 부문의 경우, 종사자 수는 1만 2천 명 이상 증가하였으나, 특화도(입지 계수 값)는 2000년의 0.56에서 2011년 0.52로 오히려 감소함.
- 도소매업 부문의 경우, 종사자 수는 2만 6천 명 이상 증가하였으며, 특화도(입지 계수 값)도 증가함(타 지역 의존도 감소)(0.55=>0.68).
- 운수업 부문의 경우, 종사자 수가 2000년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특화도가 큰 폭으로 증가함(0.6=>0.9).
- 그 밖에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의 특화도가 2000년도에 비하여 급격히 하락함.

표 3-27. 경기도 농촌지역 고용량 변화/산업별 비중/입지계수(2000/2011년)

(단위: 명, %, 기타)

구분	고용자 수			산업별 비중		입지계수(LQ)	
	2000년	2011년	변화량	2000년	2011년	2000년	2011년
농림어업	1,555	2,121	566	0.2%	0.2%	0.59	1.31
광업	1,347	1,569	222	0.2%	0.2%	1.33	1.95
제조업	322,747	461,690	138,943	50.0%	50.5%	2.09	2.55
전기가스수도업	1,732	1,665	-67	0.3%	0.2%	0.64	0.49
하수/폐기물/원료 재생및환경복원업	2,902	7,191	4,289	0.4%	0.8%	1.78	2.01
건설업	17,100	29,214	12,114	2.6%	3.2%	0.56	0.52
도소매업	65,165	91,511	26,346	10.1%	10.0%	0.55	0.68
운수업	20,961	45,249	24,288	3.2%	5.0%	0.60	0.90
숙박및음식점업	63,140	76,237	13,097	9.8%	8.3%	0.86	0.82
출판/영상/방송통신 및정보서비스업	4,069	2,440	-1,629	0.6%	0.3%	0.24	0.10
금융및보험업	11,751	8,521	-3,230	1.8%	0.9%	0.40	0.23
부동산업및임대업	10,939	14,422	3,483	1.7%	1.6%	0.70	0.63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13,991	11,738	-2,253	2.2%	1.3%	0.88	0.29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3,871	13,888	10,017	0.6%	1.5%	0.42	0.34
공공행정, 국방및사 회보장행정	12,440	12,757	317	1.9%	1.4%	0.50	0.40
교육서비스업	33,673	47,729	14,056	5.2%	5.2%	0.77	0.66
보건업및사회복지 서비스업	16,321	34,562	18,241	2.5%	3.8%	0.71	0.60
예술,스포츠및여가 관련서비스업	15,537	21,742	6,205	2.4%	2.4%	<u>1.21</u>	<u>1.29</u>
협회및단체, 수리및 기타개인서비스업	26,087	29,498	3,411	4.0%	3.2%	0.77	0.66
총계	645,328	913,744	268,416	100.0%	100.0%	1.00	1.00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각 년도 자료 활용

나. 강원도 농촌지역

- 강원도 농촌지역의 입지 계수가 1.0 이상인 산업 부문(2011년도 기준)은 농림어업, 광업, 전기가스수도업, 환경 관련 산업, 건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공공행정,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임. 즉 종사자 수 측면에서 볼 때, 강원도 농촌지역은 평균적으로 위 부문들에 대하여 특화되었다고 할 수 있음.
- 강원도 농촌지역 농림어업 부문의 고용자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입지 계수는 전국 농촌의 평균 입지 계수와 비교하여 급격히 증가함(2.82=>4.31). 이는 이 부문 전국 농림어업 부문 사업체 종사자 수의 감소폭 대비 강원도 종사자의 감소폭이 적었기 때문임.
- 강원도 농촌지역 광업 종사자 수의 감소(2000년도 대비)에도 불구하고, 강원도 광업 부문 종사자 비율은 압도적으로 높음.

- 건설업 부문의 경우, 종사자 수는 7천 명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특화도(입지 계수 값) 역시 증가함(1.09=>1.20).
- 숙박 및 음식점업 부문의 경우, 종사자 수는 8천 명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특화도(입지 계수 값) 역시 증가함(1.73=>1.90).
-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부문의 경우, 종사자 수가 2000년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특화도가 큰 폭으로 증가함(1.43=>2.20).
- 그 밖에 금융 및 보험업 부문의 특화도가 2000년도에 비하여 급격히 하락함.

표 3-28. 강원도 농촌지역 고용량 변화/산업별 비중/입지계수(2000/2011년)

(단위: 명, %, 기타)

구분	고용자 수			산업별 비중		입지계수(LQ)	
	2000년	2011년	변화량	2000년	2011년	2000년	2011년
농림어업	1,882	1,599	-283	1.2%	0.8%	2.82	4.31
광업	5,055	3,277	-1,778	3.1%	1.6%	19.67	17.81
제조업	24,874	28,978	4,104	15.2%	13.9%	0.64	0.70
전기가스수도업	1,361	1,558	197	0.8%	0.7%	1.98	2.01
하수/폐기물/원료 재생및환경복원업	498	1,646	1,148	0.3%	0.8%	1.21	2.01
건설업	8,405	15,393	6,988	5.1%	7.4%	1.09	1.20
도소매업	25,346	24,703	-643	15.5%	11.8%	0.85	0.80
운수업	6,104	7,434	1,330	3.7%	3.6%	0.69	0.65
숙박및음식점업	32,373	40,352	7,979	19.8%	19.3%	1.73	1.90
출판/영상/방송통 신및정보서비스업	2,045	2,826	781	1.3%	1.4%	0.47	0.51
금융및보험업	6,645	5,046	-1,599	4.1%	2.4%	0.90	0.61

부동산업및임대업	1,856	3,313	1,457	1.1%	1.6%	0.47	0.64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1,746	3,794	2,048	1.1%	1.8%	0.43	0.41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695	5,081	4,386	0.4%	2.4%	0.30	0.54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	12,392	15,447	3,055	7.6%	7.4%	1.98	2.10
교육서비스업	12,535	16,223	3,688	7.7%	7.8%	1.13	0.98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5,223	12,730	7,507	3.2%	6.1%	0.90	0.97
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4,663	8,502	3,839	2.9%	4.1%	1.43	2.20
협회및단체,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9,614	10,650	1,036	5.9%	5.1%	1.13	1.05
총계	163,312	208,552	45,240	100.0%	100.0%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각 년도 자료 활용

다. 충청북도 농촌지역

- 충청북도 농촌지역의 입지 계수가 1.0 이상인 산업 부문(2011년도 기준)은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환경 관련 산업, 공공행정,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임. 즉 종사자 수 측면에서 볼 때, 충청북도 농촌지역은 평균적으로 위 부문들에 대하여 특화되었다고 할 수 있음.
- 충청북도 농촌지역 농림어업 부문 사업체 고용자 수는 2000년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입지 계수의 경우 전국 농촌의 평균 입지 계수 대비 급격히 증가함(0.91=>2.71).
- 제조업 부문의 경우, 종사자 수는 2000년도 대비 4만 3천 이상 증가하였으며, 특화도(입지 계수 값) 역시 큰 폭으로 증가함(1.65=>2.22).

- 건설업 부문의 경우, 종사자 수는 약 3천 명 정도 증가하였으나, 특화도(입지 계수 값)는 감소함(0.95=>0.69).
- 그 밖에 부동산업 및 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부문의 경우, 비록 입지 계수 값은 1.0 이하였으나 2000년도에 비하여 그 값이 상승함. 즉 타 지역 의존도가 낮아졌다고 볼 수 있음.

표 3-29. 충청북도 농촌지역 고용량 변화/산업별 비중/입지계수(2000/2011년)

(단위: 명, %, 기타)

구분	고용자 수			산업별 비중		입지계수(LQ)	
	2000년	2011년	변화량	2000년	2011년	2000년	2011년
농림어업	660	1,237	577	0.4%	0.5%	0.91	2.71
광업	958	667	-291	0.5%	0.3%	3.43	2.94
제조업	70,115	113,156	43,041	39.5%	44.1%	1.65	2.22
전기가스수도업	584	711	127	0.3%	0.3%	0.78	0.74
하수/폐기물/원료 재생및환경복원업	933	2,383	1,450	0.5%	0.9%	2.08	2.37
건설업	7,977	10,994	3,017	4.5%	4.3%	0.95	0.69
도소매업	21,158	21,617	459	11.9%	8.4%	0.65	0.57
운수업	6,366	8,971	2,605	3.6%	3.5%	0.66	0.63
숙박및음식점업	20,854	22,883	2,029	11.7%	8.9%	1.03	0.88
출판/영상/방송통 신및정보서비스업	1,567	1,346	-221	0.9%	0.5%	0.33	0.20
금융및보험업	5,597	4,168	-1,429	3.1%	1.6%	0.70	0.41
부동산업및임대업	1,562	3,113	1,551	0.9%	1.2%	0.36	0.49
전문/과학및기술서 비스업	1,121	4,335	3,214	0.6%	1.7%	0.26	0.38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979	4,003	3,024	0.6%	1.6%	0.38	0.35
공공행정,국방및사 회보장행정	8,936	13,278	4,342	5.0%	5.2%	1.31	1.47
교육서비스업	11,971	17,398	5,427	6.7%	6.8%	0.99	0.86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4,606	12,163	7,557	2.6%	4.7%	0.73	0.75
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2,692	4,770	2,078	1.5%	1.9%	0.76	1.00
협회및단체,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9,052	9,677	625	5.1%	3.8%	0.97	0.78
총계	177,688	256,870	79,182	100.0%	100.0%	1	1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각 년도 자료 활용

라. 충청남도 농촌지역

- 충청남도 농촌지역의 입지 계수가 1.0 이상인 산업 부문(2011년도 기준)은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업, 환경 관련 산업임. 즉 종사자 수 측면에서 볼 때, 충청남도 농촌지역은 평균적으로 위 부문들에 대하여 특화되었다고 할 수 있음.
- 충청남도 농촌지역 광업 종사자 수가 약 800명 증가(2000년도 대비)함에 따라, 충청남도 광업 부문 특화도(입지 계수 값)는 큰 폭으로 증가함(3.07=>5.54).
- 제조업 부문의 경우, 종사자 수는 2000년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특화도(입지 계수 값) 역시 큰 폭으로 증가함(1.46=>2.16).
- 금융 및 보험업 부문의 특화도가 2000년도에 비하여 급격히 하락함.
- 그 밖에 운수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부문의 경우, 비록 입지 계수 값은 1.0 이하였으나 2000년도에 비하여 그 값이 상승함. 즉 타 지역 의존도가 낮아졌다고 볼 수 있음.

표 3-30. 충청남도 농촌지역 고용량 변화/산업별 비중/입지계수(2000/2011년)

(단위: 명, %, 기타)

구분	고용자 수			산업별 비중		입지계수(LQ)	
	2000년	2011년	변화량	2000년	2011년	2000년	2011년
농림어업	2,731	2,316	-415	0.9%	0.5%	2.10	2.73
광업	1,536	2,338	802	0.5%	0.5%	3.07	5.54
제조업	111,018	204,428	93,410	34.9%	42.8%	1.46	2.16
전기가스수도업	2,285	3,934	1,649	0.7%	0.8%	1.71	2.21
하수/폐기물/원료 재생및환경복원업	970	3,273	2,303	0.3%	0.7%	1.21	1.75
건설업	14,233	22,572	8,339	4.5%	4.7%	0.95	0.77
도소매업	44,575	46,129	1,554	14.0%	9.7%	0.77	0.65
운수업	10,699	17,243	6,544	3.4%	3.6%	0.62	0.66
숙박및음식점업	37,007	42,779	5,772	11.6%	8.9%	1.02	0.88
출판/영상/방송통 신및정보서비스업	3,782	3,460	-322	1.2%	0.7%	0.45	0.27
금융및보험업	10,699	8,374	-2,325	3.4%	1.8%	0.75	0.44
부동산업및임대업	3,259	6,142	2,883	1.0%	1.3%	0.42	0.52
전문/과학및기술서 비스업	2,973	5,409	2,436	0.9%	1.1%	0.38	0.25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2,549	8,868	6,319	0.8%	1.9%	0.56	0.41
공공행정,국방및사 회보장행정	15,823	16,665	842	5.0%	3.5%	1.30	0.99
교육서비스업	23,898	35,564	11,666	7.5%	7.4%	1.11	0.94
보건업및사회복지 서비스업	8,258	22,098	13,840	2.6%	4.6%	0.73	0.74
예술,스포츠및여가 관련서비스업	4,513	6,538	2,025	1.4%	1.4%	0.71	0.74
협회및단체,수리및 기타개인서비스업	16,985	19,890	2,905	5.3%	4.2%	1.02	0.86
총계	317,793	478,020	160,227	100.0%	100.0%	1	1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각 년도 자료 활용

마. 전라북도 농촌지역

- 전라북도 농촌지역의 입지 계수가 1.0 이상인 산업 부문(2011년도 기준)은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업, 환경 관련 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공공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임. 즉 종사자 수 측면에서 볼 때, 전라북도 농촌지역은 평균적으로 위 부문들에 대하여 특화되었다고 할 수 있음.
- 전라북도 농촌지역 농림어업 사업체 종사자 수가 80명 감소(2000년도 대비) 하였으나, 특화도(입지 계수 값)는 큰 폭으로 증가함(3.49=>6.54).
- 제조업 부문의 경우, 종사자 수는 2000년도 대비 약 9천 여 명 증가하였으며, 특화도(입지 계수 값) 또한 상승함(1.05=>1.37).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그리고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의 경우 사업체 종사자가 각각 약 9천 명과 약 1천 명씩 증가 하였으며, 나란히 특화도가 1.0 이하에서 이상으로 큰 폭 증가함(0.97=>1.34, 0.79=>1.06).
- 그 밖에 운수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부문의 경우, 비록 입지 계수 값은 1.0 이하이나 2000년도에 비하여 그 값이 상승함. 즉 타 지역의 존도가 낮아졌다고 볼 수 있음.

표 3-31. 전라북도 농촌지역 고용량 변화/산업별 비중/입지계수(2000/2011년)

(단위: 명, %, 기타)

구분	고용자 수			산업별 비중		입지계수(LQ)	
	2000년	2011년	변화량	2000년	2011년	2000년	2011년
농림어업	1,908	1,828	-80	1.4%	1.2%	3.49	6.54
광업	889	735	-154	0.7%	0.5%	4.22	5.30
제조업	33,827	42,768	8,941	25.3%	27.2%	1.05	1.37
전기가스수도업	719	912	193	0.5%	0.6%	1.28	1.56
하수/폐기물/원료 재생및환경복원업	300	1,042	742	0.2%	0.7%	0.89	1.69
건설업	5,458	7,748	2,290	4.1%	4.9%	0.87	0.80
도소매업	21,487	17,675	-3,812	16.0%	11.2%	0.88	0.76
운수업	5,366	6,642	1,276	4.0%	4.2%	0.74	0.77
숙박및음식점업	16,553	16,497	-56	12.4%	10.5%	1.08	1.03
출판/영상/방송통 신및정보서비스업	2,004	1,906	-98	1.5%	1.2%	0.57	0.46
금융및보험업	5,003	3,989	-1,014	3.7%	2.5%	0.83	0.64
부동산업및임대업	1,054	1,207	153	0.8%	0.8%	0.32	0.31
전문/과학및기술서 비스업	842	1,389	547	0.6%	0.9%	0.26	0.20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355	2,049	1,694	0.3%	1.3%	0.18	0.29
공공행정,국방및사 회보장행정	9,850	11,380	1,530	7.4%	7.2%	1.92	2.06
교육서비스업	12,793	14,777	1,984	9.6%	9.4%	1.41	1.19
보건업및사회복지 서비스업	4,633	13,209	8,576	3.5%	8.4%	0.97	1.34
예술,스포츠및여가 관련서비스업	2,113	3,077	964	1.6%	2.0%	0.79	1.06
협회및단체,수리및 기타개인서비스업	8,767	8,411	-356	6.5%	5.3%	1.25	1.10
총계	133,921	157,241	23,320	100.0%	100.0%	1	1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각년도 자료 활용

바. 전라남도 농촌지역

- 전라남도 농촌지역의 입지 계수가 1.0 이상인 산업 부문(2011년도 기준)은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업, 환경 관련 산업, 건설업, 공공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임. 즉 종사자 수 측면에서 볼 때, 전라남도 농촌지역은 평균적으로 위 부문들에 대하여 특화되었다고 할 수 있음.
- 전라남도 농촌지역 농림어업 사업체 종사자 수는 큰 폭으로 감소(2000년도 대비)하였으나, 특화도(입지 계수 값)는 여전히 높음(16.15=>7.77).
- 제조업 부문의 경우, 종사자 수는 2000년도 대비 1만 4천 여 명 증가하였으며, 그 결과 특화도(입지 계수 값)는 1.0 이하에서 1.0 이상으로 큰 폭 상승함(0.74=>1.08).
- 그 밖에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의 전국 대비 특화도가 2000년도에 비하여 하락함.

표 3-32. 전라남도 농촌지역 고용량 변화/산업별 비중/입지계수(2000/2011년)

(단위: 명, %, 기타)

구분	고용자 수			산업별 비중		입지계수(LQ)	
	2000년	2011년	변화량	2000년	2011년	2000년	2011년
농림어업	18,759	4,155	-14,604	6.6%	1.4%	<u>16.15</u>	<u>7.77</u>
광업	4,074	3,431	-643	1.4%	1.1%	<u>9.11</u>	<u>12.93</u>
제조업	50,677	64,458	13,781	17.8%	21.4%	0.74	<u>1.08</u>
전기가스수도업	2,681	2,951	270	0.9%	1.0%	<u>2.24</u>	<u>2.63</u>
하수/폐기물/원료 재생및환경복원업	806	2,008	1,202	0.3%	0.7%	<u>1.12</u>	<u>1.70</u>
건설업	15,865	22,518	6,653	5.6%	7.5%	<u>1.19</u>	<u>1.21</u>
도소매업	45,704	38,756	-6,948	16.1%	12.9%	0.88	0.87

운수업	12,135	12,139	4	4.3%	4.0%	0.78	0.73
숙박및음식점업	33,588	30,407	-3,181	11.8%	10.1%	1.03	0.99
출판/영상/방송통신 및정보서비스업	3,643	2,826	-817	1.3%	0.9%	0.49	0.35
금융및보험업	11,513	8,516	-2,997	4.1%	2.8%	0.90	0.71
부동산업및임대업	1,934	2,037	103	0.7%	0.7%	0.28	0.27
전문/과학및기술서 비스업	3,034	4,730	1,696	1.1%	1.6%	0.43	0.35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1,169	2,899	1,730	0.4%	1.0%	0.29	0.22
공공행정,국방및사 회보장행정	21,704	25,310	3,606	7.6%	8.4%	1.99	2.39
교육서비스업	22,308	25,055	2,747	7.9%	8.3%	1.16	1.05
보건업및사회복지 서비스업	11,591	25,680	14,089	4.1%	8.5%	1.15	1.36
예술,스포츠및여가 관련서비스업	4,083	6,250	2,167	1.4%	2.1%	0.72	1.12
협회및단체,수리및 기타개인서비스업	18,892	16,663	-2,229	6.6%	5.5%	1.27	1.14
총계	284,160	300,789	16,629	100.0%	100.0%	1	1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각 년도 자료 활용

사. 경상북도 농촌지역

- 경상북도 농촌지역의 입지 계수가 1.0 이상인 산업 부문(2011년도 기준)은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업, 환경 관련 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공공행정 등임. 즉 종사자 수 측면에서 볼 때, 경상북도 농촌지역은 평균적으로 위 부문들에 대하여 특화되었다고 할 수 있음.
- 경상북도 농촌지역 농림어업 사업체 종사자 수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2000년도 대비), 특화도(입지 계수 값)는 증가함(1.77=>3.03).
- 제조업 부문의 경우, 종사자 수는 2000년도 대비 4만 5천 여 명 증가하였으며, 그 결과 특화도(입지 계수 값) 역시 큰 폭 상승함(1.43=>1.90).

- 그 밖에 건설업, 운수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부문의 경우, 비록 입지 계수 값은 1.0 이하이나 2000년도에 비하여 그 값이 상승함. 즉 타 지역 의존도가 낮아졌다고 볼 수 있음.
- 그 밖에 도소매업, 금융 및 보험업의 경우 2000년도 대비 종사자 수가 줄었으며 동시에 특화도 역시 하락함.

표 3-33. 경상북도 농촌지역 고용량 변화/산업별 비중/입지계수(2000/2011년)

(단위: 명, %, 기타)

구분	고용자 수			산업별 비중		입지계수(LQ)	
	2000년	2011년	변화량	2000년	2011년	2000년	2011년
농림어업	2,260	2,186	-74	0.7%	0.5%	<u>1.77</u>	<u>3.03</u>
광업	1,618	1,267	-351	0.5%	0.3%	<u>3.28</u>	<u>3.54</u>
제조업	107,435	152,475	45,040	34.3%	37.6%	<u>1.43</u>	<u>1.90</u>
전기가스수도업	3,365	5,032	1,667	1.1%	1.2%	<u>2.56</u>	<u>3.33</u>
하수/폐기물/원료 재생및환경복원업	1,581	3,555	1,974	0.5%	0.9%	<u>2.00</u>	<u>2.24</u>
건설업	11,142	20,027	8,885	3.6%	4.9%	0.76	0.80
도소매업	42,757	42,634	-123	13.7%	10.5%	0.75	0.71
운수업	10,789	14,839	4,050	3.4%	3.7%	0.63	0.66
숙박및음식점업	41,673	41,728	55	13.3%	10.3%	<u>1.16</u>	<u>1.01</u>
출판/영상/방송통 신및정보서비스업	3,130	2,929	-201	1.0%	0.7%	0.38	0.27
금융및보험업	10,095	7,630	-2,465	3.2%	1.9%	0.71	0.47
부동산업및임대업	2,549	3,414	865	0.8%	0.8%	0.34	0.34
전문/과학및기술서 비스업	1,703	3,250	1,547	0.5%	0.8%	0.22	0.18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928	3,466	2,538	0.3%	0.9%	0.21	0.19
공공행정,국방및사 회보장행정	17,688	20,784	3,096	5.6%	5.1%	<u>1.48</u>	<u>1.45</u>
교육서비스업	23,982	31,678	7,696	7.7%	7.8%	<u>1.13</u>	0.99
보건업및사회복지 서비스업	7,888	22,266	14,378	2.5%	5.5%	0.71	0.87

예술,스포츠및여가 관련서비스업	4,885	6,820	1,935	1.6%	1.7%	0.78	0.91
협회및단체,수리및 기타개인서비스업	17,594	19,787	2,193	5.6%	4.9%	<u>1.07</u>	<u>1.00</u>
총계	313,062	405,767	92,705	100.0%	100.0%	1	1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각 년도 자료 활용

아. 경상남도 농촌지역

- 경상남도 농촌지역의 입지 계수가 1.0 이상인 산업 부문(2011년도 기준)은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업, 환경 관련 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공공행정 등임. 즉 종사자 수 측면에서 볼 때, 경상남도 농촌지역은 평균적으로 위 부문들에 대하여 특화되었다고 할 수 있음.
- 경상남도 농촌지역 농림어업 사업체 종사자 수는 6천 명 가까이 줄었으며(2000년도 대비), 특화도(입지 계수 값) 역시 감소함(6.11=>2.81).
- 제조업 부문의 경우, 종사자 수는 2000년도 대비 5만 여 명 증가하였으며, 그 결과 특화도(입지 계수 값) 역시 큰 폭 상승함(1.55=>2.00).
- 그 밖에 부동산업 및 임대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부문의 경우, 비록 입지 계수 값은 1.0 이하이나 2000년도에 비하여 그 값이 상승함. 즉 타 지역 의존도가 낮아졌다고 볼 수 있음.

표 3-34. 경상남도 농촌지역 고용량 변화/산업별 비중/입지계수(2000/2011년)

(단위: 명, %, 기타)

구분	고용자 수			산업별 비중		입지계수(LQ)	
	2000년	2011년	변화량	2000년	2011년	2000년	2011년
농림어업	8,034	2,120	-5,914	2.5%	0.5%	6.11	2.81
광업	646	462	-184	0.2%	0.1%	1.28	1.23
제조업	119,217	168,020	48,803	37.1%	39.6%	1.55	2.00
전기가스수도업	2,212	2,941	729	0.7%	0.7%	1.64	1.86
하수/폐기물/원료 재생및환경복원업	1,107	3,469	2,362	0.3%	0.8%	1.36	2.09
건설업	13,175	21,733	8,558	4.1%	5.1%	0.87	0.83
도소매업	42,556	43,659	1,103	13.2%	10.3%	0.72	0.69
운수업	14,415	16,334	1,919	4.5%	3.8%	0.82	0.70
숙박및음식점업	36,314	43,101	6,787	11.3%	10.2%	0.99	1.00
출판/영상/방송통 신및정보서비스업	2,960	2,835	-125	0.9%	0.7%	0.35	0.25
금융및보험업	9,991	7,814	-2,177	3.1%	1.8%	0.69	0.46
부동산업및임대업	3,108	5,155	2,047	1.0%	1.2%	0.40	0.49
전문/과학및기술서 비스업	2,069	4,562	2,493	0.6%	1.1%	0.26	0.2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950	5,066	4,116	0.3%	1.2%	0.20	0.27
공공행정,국방및사 회보장행정	13,540	18,336	4,796	4.2%	4.3%	1.10	1.23
교육서비스업	20,854	28,317	7,463	6.5%	6.7%	0.96	0.84
보건업및사회복지 서비스업	8,608	25,518	16,910	2.7%	6.0%	0.75	0.96
예술,스포츠및여가 관련서비스업	4,708	6,472	1,764	1.5%	1.5%	0.73	0.82
협회및단체,수리및 기타개인서비스업	17,123	18,574	1,451	5.3%	4.4%	1.02	0.90
총계	321,587	424,488	102,901	100.0%	100.0%	1	1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각년도 자료 활용

자. 제주도 농촌지역

- 제주도 농촌지역에서 입지 계수가 1.0을 초과하는 산업 부문(2011년도 기준)은 농림어업, 광업, 전기가스수도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 공공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임. 즉 종사자 수 측면에서 볼 때, 제주도 농촌지역은 평균적으로 위 부문들에 대하여 특화되었다고 할 수 있음.
- 제주도 농촌지역 농림어업 사업체 종사자 수는 4천 명 이상 줄었으나(2000년도 대비), 특화도(입지 계수 값)는 여전히 높음(45.23=>33.21). 이는 제주도 전체 산업 대비 농림어업 사업체 종사자가 상대적으로 많은데서 기인함.
- 숙박 및 음식점업, 그리고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의 경우 사업체 종사자가 각각 약 1천 7백 명과 약 2천 7백 명씩 증가 하였으며, 나란히 특화도가 크게 증가함(1.49=>1.75, 1.94=>5.07).
- 그 밖에 제조업, 도소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부문의 경우, 비록 입지 계수 값은 1.0 이하이나 2000년도에 비하여 그 값이 상승함. 즉 타 지역 의존도가 낮아졌다고 볼 수 있음.

표 3-35. 제주도 농촌지역 고용량 변화/산업별 비중/입지계수(2000/2011년)

(단위: 명, %, 기타)

구분	고용자 수			산업별 비중		입지계수(LQ)	
	2000년	2011년	변화량	2000년	2011년	2000년	2011년
농림어업	6,730	2,624	-4,106	18.5%	5.9%	45.23	33.21
광업	171	241	70	0.5%	0.5%	2.98	6.14
제조업	3,363	4,380	1,017	9.2%	9.8%	0.39	0.50
전기가스수도업	239	374	135	0.7%	0.8%	1.56	2.26
하수/폐기물/원료 재생및환경복원업	87	154	67	0.2%	0.3%	0.94	0.88
건설업	797	1,115	318	2.2%	2.5%	0.46	0.41
도소매업	5,097	6,327	1,230	14.0%	14.2%	0.76	0.96
운수업	2,224	2,930	706	6.1%	6.6%	1.12	1.20
숙박및음식점업	6,206	7,918	1,712	17.0%	17.8%	1.49	1.75
출판/영상/방송통 신및정보서비스업	371	231	-140	1.0%	0.5%	0.39	0.20
금융및보험업	1,685	1,222	-463	4.6%	2.7%	1.03	0.69
부동산업및임대업	154	300	146	0.4%	0.7%	0.17	0.27
전문/과학및기술서 비스업	150	227	77	0.4%	0.5%	0.17	0.11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65	767	702	0.2%	1.7%	0.12	0.39
공공행정,국방및사 회보장행정	1,569	1,691	122	4.3%	3.8%	1.13	1.08
교육서비스업	2,879	4,438	1,559	7.9%	10.0%	1.17	1.26
보건업및사회복지 서비스업	1,091	3,197	2,106	3.0%	7.2%	0.84	1.15
예술,스포츠및여가 관련서비스업	1,408	4,171	2,763	3.9%	9.4%	1.94	5.07
협회및단체,수리및 기타개인서비스업	2,129	2,162	33	5.8%	4.9%	1.12	1.00
총계	36,415	44,469	8,054	100.0%	100.0%	1	1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각 년도 자료 활용

부동산업 및 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	○		○	○	○	○	○
교육서비스업					○	○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	○			○	○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			○	○			

1.5. 시사점

- 변화할당분석과 입지계수를 종합하여 살펴본 결과, 각 광역시도 농촌지역의 특화산업을 정태/동태적 관점¹⁰, 정태적 관점¹¹, 동태적 관점¹²에 의하여 해석해 볼 수 있는데, 우선 정태/동태적 관점의 특화산업은 지역산업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 뿐만 아니라 타 지역 대비 성장요인이 우수한 경우에 해당함(박원석 외, 2005). 각 광역시도 별로 1~3개의 특화 산업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경기도는 3개 분야로 농림어업, 제조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임.
 - 강원도는 건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으로 2개 분야임.
 - 충청북도는 제조업, 공공행정이 특화되어 있음.

10 입지계수분석에서 특화산업으로 도출되는 동시에 변화할당분석에서 순상대효과 값이 의미 있는 산업을 선정

11 입지계수분석에서 특화산업으로 도출된 산업 중 그 값이 의미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산업을 선정

12 변화할당분석에서 순상대효과 값이 의미 있는 산업을 선정

- 충청남도는 2개 분야로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업이 특화되어 있음.
- 전라북도는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이 특화되어 있음.
- 전라남도는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만이 특화되어 있음.
- 경상북도는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업으로 2개 분야가 특화되어 있음.
- 제주도는 전기가스수도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으로 3개 분야가 특화되어 있음.
- 즉 위의 각 광역 시도 농촌지역에서 나타난 산업들은 지역경제 내에서 의미있는 비중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성장요인 또한 타 지역과 비교하여 우수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해당 지역에서 산업 육성 전략 수립 시 이와 같은 결과를 참고한다면 효율적인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함.

표 3-37. 지역별 비교우위 특화산업1

구분	지역 특화 산업(순상대효과가 +이며 동시에 입지계수가 1.0을 초과하는 경우)
경기도	농림어업, 제조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강원도	건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충청북도	제조업, 공공행정
충청남도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업
전라북도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전라남도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경상북도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업
경상남도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업, 공공행정
제주도	전기가스수도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지역별 비교우위 특화산업들 중에서 6차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산업은 농림어업, 제조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이라 할 수 있음. 이 중에서 제조업(2차산업)과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3차산업)을 비교우위 특화산업으로 하고 있는 지역들을 분류해 볼 수 있음.

- 제조업에 특화된 농촌지역은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임.
-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에 특화되어 있는 농촌지역은 경기도, 강원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도의 경우 되어 있음.
- 특히, 경기도는 두 그룹 모두에 속함.
- 대분류 상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을 소분류로 나뉘보면,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스업’,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으로 나뉘며, 이러한 소분류 역시 세분류 및 세세분류로 더 세분화하여 나뉘볼 수 있는데, 필요에 따라 이러한 세부 업종별로 지역 비교를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각 시도 별 혹은 시군 별 특화 산업의 세부 특성을 살펴 볼 수 있을 것임.

표 3-38. 6차산업 관련 비교우위 특화지역

구분	해당 광역시도
제조업(2차산업)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3차산업)	경기도, 강원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도

- 정태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우선 전국 농촌지역에서 농림어업과 광업 부문에서 담당하는 부분이 전국 평균과 비교하여 월등함을 알 수 있으며, 이는 특히 강원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도에서 두드러짐.
 - 제조업의 경우 강원도와 제주도를 제외한 광역시도 농촌지역에서 의미 있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남도에서 2.0 이상의 값을 가짐.
 -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강원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제주도에서 의미 있는 비중을 차지하였음. 특히 강원도와 제주도의 경우 입지계수 값이 2000년과 비교하여 상승함.

- 동태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우선 전국 농촌지역에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경우, 경기도와 전라남도를 제외한 지역에서 순상대효과가 양의 값을 나타냄. 즉 농촌 지역에서 사회복지 서비스가 많이 확충되고 있으며, 이를 필요로 하는 지역인 것으로 볼 수 있음.
 - 경기도의 경우, 도소매업과 운수업, 그리고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부문에 있어 비록 의미 있는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으나 나름의 우수한 성장요인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됨.
 - 강원도의 경우,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부문에서 나름의 우수한 성장요인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됨.
 - 충청북도와 충청남도의 경우, 운수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부문에서 나름의 우수한 성장요인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됨.
 - 전라북도의 경우,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부문에 있어 나름의 우수한 성장요인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됨.
 - 경상남도의 경우 부동산업 및 임대업 부문에서 나름의 우수한 성장요인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됨.
 - 제주도의 경우 부동산업 및 임대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부문에서 나름의 우수한 성장요인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됨.
- 위에 언급된 바와 같이, 성격을 달리하는 분석 방식의 차별적 도입을 통해, 첫째, 제한된 가용자원의 활용에 있어 우선순위를 설정할 수 있을 것이며, 둘째, 지역 내에서 한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과 전국 산업 체계 내에서의 위치, 그리고 타 지역 대비 성장요인의 정도를 살펴봄으로써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 가능할 것임.
- 아울러 본 연구에서 진행한 기초 통계 분석을 바탕으로, 예를 들어 제조업에 특화된 5개의 광역시도 간 특성화 정도를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 각 광역시도 별로 제조업 내에서 어떤 특정 제조업에 특화되어 있는

지, 혹은 단일 광역시도 내에서는 어떤 특정 제조업이 특화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특화된 부문을 더 특화시켜 발전시킬지, 혹은 부족한 부문을 어떠한 방식으로 보완할 지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전국의 농촌은 광역시도 별로 산업별로 특성화되는 발전을 하고 있음.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특징을 고려하여 지역의 강점을 살리면서 동시에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하는 농촌산업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표 3-39. 지역별 비교우위 특화산업2

구분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이민지계수	순상대효과	이민지계수	순상대효과	이민지계수	순상대효과	이민지계수	순상대효과	이민지계수	순상대효과	이민지계수	순상대효과	이민지계수	순상대효과	이민지계수	순상대효과	이민지계수	순상대효과
농림어업	0	0	0		0		0		0		0		0		0		0	
광업	0		0		0		0		0		0		0		0		0	
제조업	0	0			0	0	0	0	0		0		0	0	0	0		
전기가스수도업			0				0	0	0		0		0	0	0	0	0	0
하수/폐기물/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건설업			0	0							0		0					
도소매업		0																
운수업		0				0		0						0				0
숙박 및 음식점업			0						0				0					0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0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0		0		0								0		0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0								0						0		0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0		0	0			0		0		0		0	0	0	0
교육서비스업									0		0							0
보건업 및				0		0		0	0	0				0		0	0	0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0					0		0							

2. 통계로 본 6차산업 현황

2.1. 농가분석을 통한 6차산업 현황¹³

2.1.1. 총괄

- 농가단위에서 6차산업화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공식적인 데이터는 현재 없음. 그러나, 농림어업총조사에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 관련 활동을 구분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 본 분석에서 활용함.
- 농림어업총조사¹⁴ 자료를 활용하여 6차산업화 활동을 하는 농가를 분석할 때 1차산업에 종사하는 농가는 제외하였음. 즉, 2차산업(가공)과 3차산업(농산물 판매, 농촌관광 등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농가수의 변화만을 동태적으로 살펴보았음¹⁵.

¹³ 본 내용은 이성우 외(2013) 연구의 분석틀을 차용하여 재분석하였음.

¹⁴ 농림어업총조사의 농가조사 결과에서 1차산업은 농업관련사업경영, 2차산업은 농축산물가공업, 3차산업은 농축산물직판장, 농축산물직거래, 식당경영, 농기계작업대행, 농촌관광사업을 하는 농가들로 구분하였음.

- 최근 5년 간 6차산업화 활동을 하고 있는 농가는 2005년 103,981호에서 2010년 162,640호로 약 5만 8천 호 이상 증가하였음.
 - 2차산업에 종사하는 농가 수는 같은 기간 동안 6,503호에서 8,564호로 2,061호가 증가하여 32%의 증가를 나타냄.
 - 3차산업에 종사하는 농가 수도 2005년 97,478호에서 2010년 154,076호로 약 5만 6천 호 이상 증가하여 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6차산업화 관련 농가 중 2차산업에 종사하는 비중은 2005년 6.3%에서 2010년 5.3%로 감소한 반면, 3차산업에 종사하는 농가 비중은 2010년 94.7%로 2005년 93.7%에 비해 1% 증가하였음.

표 3-40. 6차산업 관련 농가수의 변화

단위: 호

구 분		2005	2010	증감율(%)
1차산업	농업생산관련 경영농가	99,879	151,515	52
2차산업	농(축)산물 가공업	6,503	8,564	32
3차산업	농기계 작업대행		23,331	
	직판장직거래	88,290	117,234	33
	농가식당	5,174	9,043	75
	농촌관광사업 (농가민박+주말농장관광농원)	4,014	4,468	11
	소 계	97,478	154,076	58
6차산업 (2차+3차산업)	소 계	103,981	162,640	56
총 농가수		1,272,908	1,177,318	-8

주1: 2010년의 경우, 2005년 농업관련사업 항목에 없는 농기계 작업 대행도 3차산업에 포함하였음.

주2: 각 년도의 2차산업과 3차산업 항목이 합계가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농업관련사업 항목이 중복체크 항목이기 때문임.

자료: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각년도. 한국통계포털

15 6차산업은 6차산업화 활동, 즉 융복합화 활동을 통해 나타나는데 본 자료에서는 융복합화 활동의 여부를 알 수가 없어, 2차산업과 3차산업에 종사하는 농가들이 융복합화 활동을 한다고 가정하였음.

2.1.2. 시도별 6차산업 현황

가. 시도별 2차산업에 종사하는 농가 수

- 시도별 6차산업 관련 2차산업에 종사하는 농가 수를 살펴보면, 충북, 전남, 경북, 경남에서 많은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
 - 2005년 2차산업에 종사하는 농가가 많은 지역은 경남, 경북, 전남의 순으로 나타남.
 - 2010년 2차산업의 활동을 펼치고 있는 농가는 충북, 전남, 경북, 경남 지역이 천 가구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이 지역들에서 6차산업화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음.

표 3-41. 6차산업 관련 2차산업 농가 수

구분	2005	2010	증감율(%)
서울특별시	44	23	-47.7
부산광역시	44	42	-4.5
대구광역시	31	104	235.5
인천광역시	35	79	125.7
광주광역시	32	26	-18.8
대전광역시	31	25	-19.4
울산광역시	361	28	-92.2
경기도	546	614	12.5
강원도	346	503	45.4
충청북도	736	1,338	81.8
충청남도	595	776	30.4
전라북도	758	690	-9.0
전라남도	914	1,044	14.2
경상북도	923	1,686	82.7
경상남도	1,075	1,514	40.8
제주도	32	72	125.0

자료: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각년도. 한국통계포털

나. 시도별 3차산업에 종사하는 농가 수

- 시도별 6차산업 관련 3차산업에 종사하는 농가 수를 보면 경기, 전남, 경북에서 많은 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남.
 - 2005년과 2010년 시도별 3차산업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 전남, 경북이 시간 변화에 관계없이 꾸준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음.
 - 광주, 경남, 제주지역이 2005년에 비해 2010년에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여 성장률 100% 이상을 나타냄.

표 3-42. 6차산업 관련 3차산업 농가 수

단위: 호

구분	2005	2010	증감율(%)
서울특별시	271	652	140.6
부산광역시	2,592	1,564	-39.7
대구광역시	2,229	3,166	42.0
인천광역시	1,839	3,185	73.2
광주광역시	222	1,387	524.8
대전광역시	952	1,285	35.0
울산광역시	1,605	2,476	54.3
경기도	14,502	22,901	57.9
강원도	7,780	13,083	68.2
충청북도	7,780	13,311	71.1
충청남도	9,427	16,130	71.1
전라북도	9,326	16,383	75.7
전라남도	14,650	19,219	31.2
경상북도	15,131	20,874	38.0
경상남도	8,150	16,330	100.4
제주도	1,022	2,130	108.4

자료: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각년도. 한국통계포털

2.2. 농업법인을 통해서 본 6차산업 현황

2.2.1. 농업법인 수와 종사자 수

가. 총괄

- 농업법인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0년에 5,208개 이던 것이 2012년에는 12,981개로 크게 증가함.
 - 지역별로 보면, 2000년 전남이 982개, 2005년 충남이 950개, 2010년에는 전남이 1,954개, 2012년에도 전남이 2,728로 가장 많은 농업법인이 있는 지역으로 나타남.

- 농업법인에 종사하는 사람은 2012년에 총 79,737명으로 2000년의 47,996명보다 거의 두배가량 성장하였음.
 - 지역별로 보면, 2000년에 전남이 11,180명으로 가장 많은 농업법인 종사자 수를 기록하였음.
 - 2005년에는 충남지역이 5,567명으로 가장 높았음. 이는 전남지역이 5,110명으로 급격히 감소한 영향이 있었음.
 - 2010년에는 경기도가 11,081명으로 가장 많은 농업법인 종사자 수를 보였음. 그 다음으로 전남지역으로 9,827명이었음.
 - 2012년도에는 전남이 14,447명으로 다시 선두로 올라섰음. 그 다음으로 경기도가 12,057명으로 나타났음.

표 3-43. 농업법인 수

단위: 개

구분	2000	2005	2010	2012
전국(계)	5,208	5,260	9,740	12,981
서울특별시	10	18	67	120
부산광역시	17	25	43	74
대구광역시	20	29	60	104
인천광역시	30	33	68	90
광주광역시	20	31	84	133
대전광역시	6	10	52	96
울산광역시	43	40	44	54
세종특별자치시	-	-	-	64
경기도	458	603	1,074	1,304
강원도	375	372	676	944
충청북도	308	281	645	803
충청남도	788	950	1,295	1,504
전라북도	674	631	1,275	1,712
전라남도	982	883	1,954	2,728
경상북도	702	595	1,083	1,429
경상남도	673	612	907	1,129
제주특별자치도	102	147	413	693

자료: 통계청. 농어업법인조사. 각년도. 한국통계포털

표 3-44. 농업법인 종사자 수

단위: 명

구분	2000	2005	2010	2012
전국(계)	47,996	29,901	60,118	79,737
서울특별시	846	139	453	1,037
부산광역시	62	88	452	554
대구광역시	216	335	404	632
인천광역시	757	199	272	459
광주광역시	446	212	542	851

대전광역시	42	56	357	663
울산광역시	845	139	288	548
세종특별자치시	-	-	-	409
경기도	3,289	4,933	11,081	12,057
강원도	2,788	1,714	3,951	5,269
충청북도	1,752	1,850	3,543	4,418
충청남도	7,339	5,567	7,131	8,766
전라북도	5,666	3,072	6,068	9,553
전라남도	11,180	5,110	9,827	14,447
경상북도	7,397	2,823	6,995	9,043
경상남도	4,094	2,408	4,695	5,865
제주특별자치도	1,277	1,256	4,059	5,166

자료: 통계청, 농어업법인조사, 각년도, 한국통계포털

나. 6차산업 관련

- 6차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농업외 생산을 하고 있는 농업법인은 2012년 8,493개로 2000년의 1,941개 보다 거의 4배 성장하였음.
 - 농업외 생산에 속하는 농업법인의 비중도 2000년 58.7%이던 것이 2012년에는 72.3%로 크게 성장하였음.
 - 농업외 생산 법인 중에서 농업서비스업 법인이 연평균 27.1%의 성장을 보임에 따라 가장 두드러짐. 그 다음이 가공업으로 연평균 24.1%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표 3-45. 유형별 농업법인 수¹⁶

구분		2000	2005	2010	2012	단위: 개 연평균 성장률(%)
계		3,306	3,549	8,361	11,747	
농업생산		1,425	1,545	3,112	3,803	11.0
농	2차 가공업	336	498	1,568	2,181	24.1

16 2001년부터 출자자 개별 운영법인은 유형별 농업법인 수에서 제외하였음. 따라서 총계와 유형별 총계가 차이가 남.

업외 생산	3차	유통업	538	540	1,730	3,014	27.1
		농업 서비스업	795	326	613	846	8.3
		위탁영농	0	238	369	549	17.7
		기타 ¹⁷	272	640	1,338	1,903	23.3
	소계	1,941	2,242	5,618	8,493		
	비중(%)	58.7	63.2	67.2	72.3		

자료: 통계청. 농어업법인조사. 각년도. 한국통계포털

- 유형별 농업법인의 비중에서도 유통업과 가공업의 비중이 크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차산업인 가공업의 비중이 2000년에 10.2%이던 것이 2005년 14.0%, 2010년 18.8%로 성장하였음. 그러나 2012년에 18.6%로 약간 감소함.
 - 3차산업의 경우, 유통업의 비중이 2000년에 16.3%이던 것이 2005년에 15.2%로 약간 감소하다가 2010년에 20.7%로 크게 증가하였고, 2012년에는 25.7%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농업서비스업의 경우 2000년에 24.0%로 가장 높았으나 2005년 9.2%, 2010년 9.2%, 2010년 7.3%, 2012년 7.2%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표 3-46. 유형별 농업법인의 비중 변화

구분		2000	2005	2010	2012
농업생산		43.1	43.5	37.2	32.4
2차	가공업	10.2	14.0	18.8	18.6
3차	유통업	16.3	15.2	20.7	25.7
	농업 서비스업	24.0	9.2	7.3	7.2
	위탁영농	0.0	6.7	4.4	4.7
	기타	8.2	18.0	16.0	16.2

자료: 통계청. 농어업법인조사. 각년도. 한국통계포털

17 기타는 2006년 이후 농지분양 및 위탁판매, 관광 및 음식업 포함

2.2.2. 농업법인의 매출액

가. 총괄

- 농업법인의 농업생산 매출액은 2012년에 4조 6백억 원 정도인데 이는 2000년 약 7,354억 원에 비해 약 6배가량 성장하였음.
 - 지역별로 살펴보면, 2000년에는 전라남도 농업법인의 농업생산 매출액이 약 1,421억 원 가량으로 가장 높았으나 최근에 와서는 경기도가 압도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음.

표 3-47. 농업법인의 농업생산 매출액

단위: 백만원

구분	2000	2005	2010	2012
전국(계)	735,369	1,244,429	3,294,850	4,062,460
서울특별시	15,054	1,556	17,519	6,780
부산광역시	297	2,384	2,489	7,946
대구광역시	926	2,840	26,412	15,834
인천광역시	2,244	3,145	1,972	14,976
광주광역시	2,554	1,554	33,990	45,584
대전광역시	-	403	8,206	17,556
울산광역시	4,117	9,527	20,378	29,305
세종특별자치시	-	-	-	32,061
경기도	141,602	283,465	694,203	860,676
강원도	60,594	131,425	216,626	186,383
충청북도	22,483	73,781	264,514	414,218
충청남도	116,629	181,691	521,927	605,979
전라북도	93,896	131,688	368,805	459,584
전라남도	142,105	187,659	461,832	570,712

경상북도	63,296	108,535	279,947	373,060
경상남도	54,632	89,908	241,296	270,797
제주특별자치도	14,940	34,868	134,734	151,009

자료: 통계청. 농어업법인조사. 각년도. 한국통계포털

나. 6차산업 관련

- 6차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농업생산 외 매출액이 2012년 약 13조 원으로 2012년 농업생산 매출액 약 4조 원에 비해 거의 3배 정도임.
 - 2000년에 약 9,650억 원 가량이었던 것이 연평균 104.2%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면서 2012년에 약 13조 원을 넘었음.
 - 지역별로는 경기도와 전라남도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음.
 - 경기도는 2000년에 약 1,157억 원의 매출액을 나타내던 것이 2012년에는 약 2조 1,966억 원으로 나타나 전체에서 12.8%를 차지함.
 - 전라남도는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음. 2000년에는 약 2,120억 원으로 경기도보다 많았음. 2012년에는 경기도와 비슷한 약 2조 1,670억 원을 나타냈음.

표 3-48. 농업법인의 농업생산 외 매출액

단위: 백만원

구분	2000	2005	2010	2012
전국(계)	965,010	2,728,023	9,577,238	13,036,063
서울특별시	2,432	11,463	149,617	185,621
부산광역시	428	2,807	68,358	146,318
대구광역시	8,169	33,818	125,025	183,810
인천광역시	4,914	3,414	21,030	54,460
광주광역시	5,429	19,520	127,493	173,616
대전광역시	3,472	15,075	84,631	138,088
울산광역시	11,524	9,502	11,940	33,535
세종특별자치시	-	-	-	45,081
경기도	115,782	531,239	1,587,452	2,196,633

강원도	34,566	81,749	306,970	426,034
충청북도	44,430	123,423	578,610	910,118
충청남도	78,476	391,469	1,069,352	1,407,578
전라북도	212,045	440,977	1,057,666	1,596,597
전라남도	182,130	409,090	1,965,029	2,167,017
경상북도	70,923	233,025	1,175,940	1,638,856
경상남도	153,392	285,114	806,348	1,030,771
제주특별자치도	36,898	136,338	441,777	701,930

자료: 통계청. 농어업법인조사. 각년도. 한국통계포털

- 농업법인당 평균 매출액을 비교해 보면, 농업생산 외 법인이 2000년에는 평균 매출액이 농업생산 법인보다 적었으나 2005년부터는 농업생산 외 법인의 평균 매출액이 더 높음.
 - 농업생산 법인의 평균 매출액이 많이 성장하였음. 2000년에 약 5억 1천 6백만 원 가량하던 것이 2012년에는 10억 6천 8백만 원으로 성장하였음.
 - 농업생산 외 법인의 평균 매출액도 크게 성장하였는데 2000년에 약 4억 9천 7백만 원 가량하던 것이 2012년에는 약 15억 3천 5백만 원으로 3배 가량 성장하였음. 그러나 2010년에 비해 소폭 감소하였음.

표 3-49. 농업법인의 평균 매출액 비교

구분	단위: 백만 원			
	2000	2005	2010	2012
농업생산 법인 평균 매출액	516	805	1,059	1,068
농업 외 생산 법인 평균 매출액	497	1,217	1,705	1,535

2.3. 6차산업에 종사하는 농가와 법인 종합

- 2010년을 기준으로 6차산업화를 하고 있는 농가와 법인은 총 171,133개임.
 - 2차와 3차산업에 종사하는 농가는 162,640호
 - 2차와 3차산업을 하고 있는 농업법인은 8,493개

표 3-50. 6차산업 대상 규모(2010년 기준)

단위: 호, 개

농가(2차&3차)	농업법인(2차&3차)	합계
162,640	8,493	171,133

3. 우수사례를 통해서 본 6차산업 유형과 실태

3.1. 개요

- 분석대상이 된 사례는 총 95곳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이 우수사례로 발표한 곳들임.
 - 농림축산식품부가 2013년에 발간한 「농업·농촌에 창조를 담다: 6차산업화 우수사례집」에 소개된 35곳
 - 같은 해에 농촌진흥청에서 발간한 「농업·농촌의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6차산업 이야기」에서 소개된 60곳
- 우수사례를 대상으로 매출액 규모, 유형, 주요 원료, 경영형태, 주요 지역, 협력시스템을 살펴보았음.
 - 연 매출액에서는 1억 원에서 3억 원 규모의 사업장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음.
 - 6차산업을 위한 융복합화 형태에서는 1차산업과 3차산업의 결합 형태가 많았음.
 - 주요 농산물은 곡물, 채소, 과일 순으로 나타남.
 - 경영형태에서는 영농조합법인, 마을기업, 개인사업장 순으로 나타났음.
 - 우수사례가 많이 소개된 지역은 강원과 경기지역이었음.
 - 협력시스템에서는 농업인간의 결합을 통한 6차산업화 내부화가 가장 많이 차지하였음.

3.2. 6차산업 유형과 실태

3.2.1. 매출액 규모

- 6차산업 우수사례 95건을 분석해 본 결과 연 매출 1억 원에서 10억 원 미만 이 주를 이루고 있음.
 - 연 매출액 1억 원에서 3억 원 규모의 사업장이 22곳(23.2%)을 차지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음.
 - 반면, 100억 원 이상의 매출액을 내는 경영체들도 9곳임.

표 3-51. 매출액별 우수사례 현황

연 매출액	사례 수	비중(%)
5천만 원 미만	3	3.2
5천만 원 이상~1억 원 미만	7	7.4
1억 원 이상~3억 원 미만	22	23.2
3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14	14.7
5억 원 이상~10억 원 미만	11	11.6
10억 원 이상~20억 원 미만	12	12.6
20억 원 이상~50억 원 미만	9	9.5
50억 원 이상~100억 원 미만	4	4.2
100억 원 이상~200억 원 미만	5	5.3
200억 원 이상~500억 원 미만	1	1.1
500억 원 이상~1,000억 원 미만	2	2.1
1,000억 원 이상~	1	1.1
미상	4	4.2
총계	95	100.0

3.2.2. 유형

- 6차산업을 위해 융복합하는 형태를 구분하여 살펴보면, 생산자가 직접 생산하고(1차산업), 판매하는(3차산업)의 결합이 포함되어 있는 유형이 54건으로 가장 많았음.
 - 그 다음으로 생산과 체험의 결합이 49건, 생산과 가공(2차산업)의 결합이 48건, 힐링이 포함된 형태가 11곳인 것으로 나타남.
 - 평균매출액 면에서는 1, 2차 산업의 결합 유형 약 12억 원 정도로 가장 높았음.
 - 가장 많은 유형인 1차(생산)과 3차(판매 혹은 서비스)산업의 결합은 평균 6억 3천만 원 정도의 매출액을 나타내고 있음.

표 3-52. 산업결합 유형별 우수사례 현황

단위: 천원

사업내용	사례수	평균 매출액
생산+가공	48	1,190,872
생산+판매or식당	54	633,858
생산+체험	49	465,531
힐링 포함	11	191,050

주: 4가지 사업내용의 사례수들 모두 한 곳씩의 매출액 미상인 곳이 있었음.

3.2.3. 원료품목

- 6차산업을 위해 사용되는 주요 농산물은 대체로 균일한 분포를 보인 가운데, 곡물, 채소, 과일이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으로 나타남.
 - 곡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가 18건으로 18.9%를 차지하였으며, 그 뒤로 채소로 15건, 과일 14건, 특용작물 11건 순으로 나타남.

- 평균매출액 측면에서는 축산물을 이용하는 사례가 약 27억 8천만 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약용작물 약 27억 6천만 원, 임산물 약 18억 원 순으로 나타남.

표 3-53. 원료품목별 우수사례 현황

단위: 천원

원료품목	사례수	비중(%)	평균 매출액
곡물	18	18.9	617,223
채소	15	15.8	684,285
과일	14	14.7	231,000
특용작물	11	11.6	360,500
구황작물	9	9.4	316,222
화훼	7	7.4	1,144,866
축산물	6	6.3	2,782,500
약용작물	6	6.3	2,767,500
가공품	5	5.3	1,070,000
임산물	3	3.2	1,876,666
수산물	1	1.1	284,000
총계	95	100	892,208

주: 곡물, 채소, 특용작물, 화훼를 원료로 사용한 우수사례 중 매출액 미상인 사업장이 각 한 곳씩 있었음.

3.2.4. 경영형태

- 경영형태별로는 영농조합법인이 31곳으로 32.6%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마을기업과 개인사업장 순으로 나타났음.
 - 평균매출액의 경우 민·관·학이 연계한 클러스터사업단의 매출액이 가장 많았으며, 연구회와 주식회사가 그 뒤를 이었음. 클러스터사업단은 개별 경영체가 아닌 여러 경영체가 하나의 사업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기 때문에 평균 매출액이 다른 경영체에 비해 높을 수 있음.

표 3-54. 경영형태별 우수사례 현황

단위: 천원

경영형태	사례수	비중(%)	평균매출액
영농조합법인	31	32.6	478,990
마을기업	15	15.8	170,307
개인	13	13.7	154,250
농업회사법인	7	7.4	873,333
연구회	6	6.3	1,446,000
클러스터사업단	4	4.2	5,637,500
주식회사	4	4.2	1,631,250
재단법인	1	1.1	284,000
미상	14	14.7	1,448,428
총계	95	100.0	854,642

주: 마을기업, 개인사업장, 농업회사법인, 연구회의 경영형태를 가진 우수사례 중 매출액 미상인 사업장이 각 한 곳씩 있었음.

3.2.5. 지역

- 우수사례는 강원과 경기 지역에 30% 넘게 분포하고 있음.
 - 경북과 경남, 충북 지역은 우수사례가 다소 적었음.
 - 평균매출액에서는 서울특별시가 가장 높았으나, 사례 수가 2건에 불과했음. 그 뒤를 경북이 약 16억 원으로 높았으며, 충남이 약 12억 원으로 경북 다음으로 높았음.

표 3-55. 지역별 우수사례 현황

단위: 천원

지역명	사례수	비중(%)	평균 매출액
강원도	16	16.8	668,656
경기도	15	15.8	669,266
전라남도	13	13.7	1,001,176
충청남도	13	13.7	1,216,384
전라북도	11	11.6	455,000
경상북도	7	7.4	1,667,571
경상남도	6	6.3	950,783
충청북도	6	6.3	1,026,833
제주특별자치도	5	5.3	128,300
서울특별시	2	2.1	2,000,000
대구광역시	1	1.1	440,000
총계	95	100.0	854,642

주: 우수사례 중 경기도 3곳과 전북 1곳의 사업장이 매출액 미상으로 나타났음.

3.2.6. 협력시스템

- 6차산업화를 위해 협력하는 시스템을 살펴본 결과, 농업인간의 결합을 통한 6차산업화 내부화가 45곳(47.4%)으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였음.
 - 이어서 농업인과 지차제의 민관협력 28.4%, 농업인과 가공업자와 유통업자의 농공상 협력이 11.6%의 순으로 나타났음.
 - 평균매출액에서는 산·학·관 협력시스템이 약 29억 원으로 가장 높았음. 이는 위에서 언급한 경영형태별 분석결과와 일맥상통한 결과임.

표 3-56. 6차산업 협력시스템별 우수사례 현황

단위: 천 원

협력시스템	사례수	비중(%)	평균 매출액
6차산업화 내부화(농업인)	45	47.4	401,588
농공상 협력 (농업+가공+기업 및 유통)	11	11.6	1,891,181
민관협력(농업+지자체)	27(매출액미상3)	28.4	573,375
산학관연협력(농업+클러스터)	10(매출액미상1)	10.5	2,974,611
기타	2	2.1	892,000
총계	95(매출액미상4)	100	892,208

주: 민관협력 사업장 3곳과 산학관연협력 사업장 한 곳의 매출액이 미상으로 나타났음.

3.2.7. 시작년도

- 우수사례 선정 사업체의 시작년도는 2005년에서 2009년 사이가 34곳으로 가장 많았음.
 - 평균매출액 측면에선 1990년 이전에 시작한 곳이 평균 19억 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 경영체 업력이 높을수록 매출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경영이 안정되어 있고, 시장에 잘 안착해 있을수록 매출액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3-57. 6차산업 시작년도별 우수사례 현황

단위: 천 원

시작년도	사례수	비중(%)	평균 매출액
~1990	7	7.4	1,905,000
1990~1994	4	4.2	1,875,000
1995~1999	16	16.8	1,025,500
2000~2004	20	21.1	268,965
2005~2009	34(매출액미상3)	35.8	904,054
2009~2012	10(매출액미상1)	10.5	776,111
미상	4	4.2	889,500
총계	51	100.0	854,642

주: 시작년도 2005~2009년 사업장 3곳과, 시작년도 2009~2012년 사업장 한 곳의 매출액이 미상으로 나타났음.

제 4 장

국내외 6차산업 관련 정책

1. 국내 6차산업 관련 정책

1.1. 농림축산식품부

1.1.1. 6차산업화 대책

가. 기본방향

- 첫째, 함께하는 우리 농촌운동과 연계하고, 지역공동체 중심의 6차산업화 모델을 확산
- 둘째, 농촌의 부족한 인적역량을 귀농귀촌, 재능기부 등 외부전문가로 보완
- 셋째, 마을의 발전단계에 따른 차별화된 지원체계를 구축

나. 세부전략

- 사업초기단계(창업 및 판매 지원체계 구축)
 - 주민주도의 현장포럼 통한 마을 사업계획 수립
 - 농산물 종합가공센터를 통한 사업화하고, 시제품 생산 지원
 - 창업시 필요한 정보나 경영노하우를 전수해 주기 위해 은퇴전문가 고문 제도 도입
 - 6차산업화 창업자금지원

- 성장단계
 - 6차산업화 사업자 인증, R&D 지원, 자금지원, 판매 및 수출지원, 모태펀드, 판로개척 및 통합마케팅 지원
 - 첫째, 6차산업화 사업자 인증. 성장가능성이 있는 경영체를 6차산업화 사업자로 인증해서 2017년 까지 1천개를 인증하다는 계획
 - 둘째, R&D 지원. 기술사업화(R&BD) 지원 확대 및 기술뱅크를 구축하여 새로운 제품 개발과 기술거래 및 이전을 촉진
 - 셋째, 자금지원. 자본 조달 및 확충을 위해 모태(특수목적)펀드에서 2013년 100억 원을 지원할 계획. 창투사의 투자확대를 위해 6차산업화 박람회와 투자설명회 동시에 개최할 계획
 - 넷째, 판매 및 수출지원. 이를 위해 농협 등에 전문매장, 해외안테나숍을 설치 추진할 계획
 - 다섯째, 6차산업화 모태펀드 조성하여, 6차산업화에 기여하는 경영체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민·관합작 방식의 펀드 결성
 - 여섯째, 판로개척 및 통합마케팅 지원. 6차산업화 경영체 생산제품의 전시·홍보와 생산품 판로확보를 위해 지원. 이를 위해 소비지 유통품평회와 6차산업 박람회, 6차산업 경진대회를 각각 개최할 계획

○ 지역 네트워크 강화

- 지역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6차산업화 주체간 연대 촉진, 지역 컨소시엄 사업단 구성 지원, 6차산업화 지구 조성, 활용자원 다양화, 광역중간지원 조직 지정 및 운영을 제시
- 첫째, 6차산업화 주체간 연대를 촉진. 지역 농업인, 생산자단체, 제조·가공업체, 체험·관광마을 등이 참여하는 6차산업화 협의체를 구성하여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6차산업화 사업자의 공동 홍보·마케팅·판매·품질관리 등의 촉진을 위해 6차산업화 공동사업도 지원함으로써 주체간 연대를 강화
- 둘째, 지역 컨소시엄 사업단 구성 지원. 1차 농산물이 6차산업화된 품목을 중심으로 농업인, 제조·가공업체, 체험마을 등이 참여하는 6차산업 협의체를 중심으로 하여 지역 컨소시엄 사업단을 구성. 이를 통해 공동상표 및 디자인 개발, 공동마케팅, 판매 및 수출, 품질관리 촉진. 2014년에 공모를 통해 5개소를 추진 계획
- 셋째, 6차산업화 지구 조성. 지역자원이 집적화된 곳을 6차산업화 지구로 지정해 지역농업의 허브로 구축. 지정된 지구에 대해서는 공동 제조·판매·체험 등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 공동연구개발 및 품질관리에 대한 지원, 참여자 교육 등을 지원하며, 2014년에 공모를 통해 3개소를 시범적으로 추진
- 넷째, 활용자원의 다양화. 우선, 승마시설, 힐링 농장, 이벤트 농장 확대 및 양조장의 복합체험장화 추진. 또한 지역 농산물·문화와 연계된 향토음식·전통제품의 관광상품화를 촉진함으로써 지역 자원을 충분히 활용
- 다섯째, 광역중간지원조직 지정 및 운영. 광역(도) 단위로 총괄조직을 지정하여, 관련 지원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역내 네트워크도 강화하고, 6차산업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여러 가지 지원 서비스 제공

1.1.2. 향토산업육성사업

가. 개요

- 향토산업육성사업은 농어촌지역에 존재하는 유무형의 향토자원을 발굴하여 다양한 1차·2차·3차 산업이 연계된 복합산업으로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득기반을 확충하고, 산·학·연·관 등 사업주체간 유기적인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농어촌지역의 사업역량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사업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함.
- 지원조건은 국고 50%, 지방비·자부담 50%로, 3년간 총사업비는 30억 원 규모임.
- 지원대상은 농어업인조직, 향토기업, 생산자단체, 연구단체 등이며, 사업시행주체는 시·도지사, 시장·군수로 규정함.
- 지원내용은 하드웨어적인 사업과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으로 구분됨.
 - 하드웨어적인 사업들은 제품개발과 농수산물 생산·유통 기반구축 지원, 농수산물 제조·가공 지원, 체험·전시 지원, 농어촌체험·관광 지원, 농공단지 조성 및 정비 지원 등의 시설 지원임.
 - 소프트웨어적인 사업들은 홍보·마케팅, 디자인·브랜드 개발, 제품 및 기술 개발, 지적 재산권 등록, 사업추진단 전담인력 인건비 등 운영비, 역량 강화 등 교육시행, 네트워크 구축 등임.

나. 6차산업과의 관계

- 1차·2차·3차 산업을 연계하여 복합산업으로 육성한다는 측면에서 6차산업

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

- 그러나, 여러 경영체가 모여 사업단을 구성하고, 이 사업단이 단일 경영체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게 됨에 따라 개별 경영체보다는 규모가 크다고 할 수 있음.
- 사업체계 구축 및 네트워킹, R&D, 산업화 및 마케팅 등 S/W분야가 6차산업화 대책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음.

1.1.3.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포괄보조사업)

가. 개요

-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산업과와 각 시·도에서 주관하며, 농어촌의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1차·2차·3차 복합산업화를 촉진하고, 창업 및 기업유치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의 경제활동 다각화와 소득·고용기회 증대 도모를 목적으로 함.
- 지원대상은 농업인, 생산자단체, 농산물가공업체, 체험·휴양마을사업자, 연구단체 등이며, 시행기관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규정됨.
- 지원내용은 농촌 산업주체 역량 강화 및 혁신 체계 구축, R&D 및 컨설팅 등 지원과 같은 소프트웨어적인 것과 농촌자원복합산업화를 위한 생산·유통, 제조·가공, 체험·전시기반 구축과 같은 하드웨어적인 것임.
- 지원조건은 국고 50%, 지방비 50%로, 농공단지선정 정액지원, 세부내역 사업별로 공공성·형평성, 사업자의 책임확보, 특혜시비 배제 등 여건을 고려하여 자부담율을 결정함.

- 시·도자율편성사업으로서, 포괄보조금예산 사업을 활용하여 해당 지출한도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사업 선정, 총사업비 30억 원 이상 토목·건축사업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전사업성 검토를 필요로 함.

나. 6차산업과의 관계

- 1차·2차·3차 복합산업화를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6차산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
- 지원대상이 농업인, 생산자단체, 농산물가공업체, 체험·휴양마을사업자, 연구단체 등으로 6차산업화 주체들이 대상이 되고 있음.
- 소프트웨어적인 지원인 교육, 역량강화,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워크숍, 벤치마킹, 지역리더양성 교육, R&D 및 컨설팅, 상품개발 및 마케팅 등의 지원이 6차산업화 대책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음.

1.1.4.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가. 개요

-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은 지역농식품 주체(산·학·연·관)들의 역량을 집중하여 특화된 농산물의 생산·유통·가공·판매 등을 통해 지역농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핵심기술과 경영이 조화롭게 융합된 시스템을 구축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다는 전략임. 산·학·연·관 주체들이 역량을 집중하여 지역 가용자원(지역 특화품목)을 통합·유기적으로 활용하여 지방농어촌 활성화와 농어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됨.

- 지원내용은 혁신체계 구축 네트워킹 분야와 산업화 및 마케팅 분야로 나누어짐.
 - 혁신체계 구축 네트워킹 분야는 농가교육, 벤치마킹, 사업단 운영비, 전담인력비용, 사업단 컨설팅 비용 등을 지원함.
 - 산업화 및 마케팅 분야는 브랜드 개발 및 관리, R&D지원, 홍보 및 마케팅 지원, 가공시설 등을 지원함.
-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단에서 주관하며, 시행절차는 사업신청을 원하는 법인이나 단체가 산·학·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면 해당 지자체의 선발과정을 거쳐 지자체별 사업계획을 농식품부에 제출하면, 농식품부가 전문평가단을 구성하여 선정하는 체계로 운영하고 있음.
- 사업 규모 및 기간은 시범사업('05~) 20개소, 본사업('08~) 22개소, 광역사업('09~) 12개소가 운영되며, 기본 3년/격년제로 시행, 평가 후 1-2년 추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함. 지원조건은 국고 50%, 지방비 50%로 구성됨.

나. 6차산업과의 관계

- 지역농식품 주체(산·학·연·관)들의 역량을 집중하여 특화된 농산물의 생산·유통·가공·판매 등을 통해 지역농업을 활성화시킨다는 측면에서 6차산업화에서 강조하는 융복합화와 맥을 같이하고 있음.
- 향토산업육성사업과 마찬가지로 여러 주체들이 참여하여 하나의 사업단을 구성하고, 이 사업단이 하나의 법인체 형태로 운영됨. 개별경영체보다는 규모가 큰 컨소시엄 형태의 경영체로 볼 수 있음.

1.1.5.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가. 개요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에서 주관하며, 중소기업청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음.
- 신청대상은 융합형 중소기업으로서 농어업인(단체)과 협력하여 “농공상 융합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제출한 기업으로 한정. 신청기업은 농어업인(영농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등)과 중소기업이 연계하여 농수산물 등 농어촌 자원을 활용하는 융합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사업내용은 R&D와 연계, 국내 농수산물을 활용하여 BT·NT 등 기술 융복합화를 통해 신제품 또는 신물질을 개발하는 사업, 그리고 1차×2차 산업, 1차×2차×3차 산업을 융복합화하여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고, 경영효율화 등 융합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것들로 하고 있음.
- 선정된 융합형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우선지원 정책을 실시. 우선, R&D 및 식품업체, 농식품 수출업체 지원사업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우대 지원. 다양한 정책지원사업에 우대배점을 부여해 식품가공원료 매입, 외식·전처리업체 운영, 식품제조업체 시설현대화, 신선편이 농산물 시설현대화, 생산자 융복합 식품제조기업 육성, 전통발효식품업체 시설현대화, 유기가공식품 명품화 기반구축, 소규모 식품 제조가공 창업지원, 축산물 열처리가공공장지원 등에서 우선적으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그리고, 기술개발·지식서비스 지원을 위해 식품컨설팅 지원사업, 고부가가치 식품기술개발, 연구개발성과 실용화지원사업 등을 활용하고 있음. 기타

우대 지원사업으로는 농식품 모태펀드와 농공상 마케팅 교육지원,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우대조건을 부여하고 있음. 또한 담보능력 부족 등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기업은 각종 전시회·박람회 참가지원, 제품 홍보 등 마케팅에 집중 지원하고 있음. 즉, 농공상융합형 EXPO 및 KFE 행사시 농공상 융합제품 별도 부스 운영, 농협 하나로마트내 파이롯트 슝 설치 등의 마케팅에 대해 지원하고 있음.

나. 6차산업과의 관계

- 1차×2차 산업, 1차×2차×3차 산업을 융복합화하여 부가가치를 향상시킨다는 측면에서 6차산업화와 관계가 깊음.
- 그러나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은 하나의 경영체가 아니고, 여러개의 경영체가 계약을 통해 연대하여 협력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농공상 연대형 6차산업화 형태라 할 수 있음.
- 직접적인 재정 보조가 이루어지는 사업은 아님. 그렇지만 R&D, 식품가공 원료 매입, 시설현대화, 창업지원, 축산물 열처리가공공장지원, 모태펀드, 교육, 박람회, 홍보 등에 우선적으로 자금 지원

1.1.6. 농어촌공동체회사

가. 개요

- 농어촌공동체회사는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공동체가 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여 농어촌의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조직으로 마을단위 법인 등 기업경영 방식의 공동체 조직을 광범위하게 포괄하는 개념임.

-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농어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2011년부터 발전가능성이 큰 공동체회사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음.
- 법적근거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 제19조 3항에 두고 있음. 선정된 업체에게는 제품개발·홍보·마케팅 비용 등 재정지원과 함께 공동체 관련 교육 및 경영컨설팅 등을 통하여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이를 통해 신제품 및 공동브랜드 개발, 운영 프로그램 개선, 홍보 및 주민 교육 등에 지원 사업비를 활용하고 있어 공동체회사의 역량강화 및 경영여건 개선을 꾀하고 있음.
- 선정된 업체에 대한 지원은 개소당 최대 50백만 원을 지원하고 있음. 재원은 국고 50%, 지방비 25%, 자부담 25%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

나. 6차산업과의 관계

- 마을단위 법인이 농축산물을 이용한 가공, 체험, 판매 등을 융복합화를 시도하는 경우 6차산업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음.
- 제품개발·홍보·마케팅 비용 등 재정지원, 공동체 관련 교육 및 경영컨설팅 등을 통하여 역량이 강화, 신제품 및 공동브랜드 개발, 운영 프로그램 개선, 홍보 및 주민 교육 등에 지원이 6차산업화 대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

1.2. 농촌진흥청

1.2.1.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시범사업

가. 개요

- 국내 원료를 기반으로 한 창업활동 지원으로 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 증진 및 농업인의 경제활동 역량을 향상시키고, 소규모 창업사업의 안정적인 정착 및 경쟁력 있는 생산제품 개발을 지원함.
- 지원대상은 창업을 통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농업인 공동 참여 자임.
 - 소자본으로 농업인 특유의 숨씨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농촌자원을 이용한 소득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지원금액은 개소당 1억 원이며, 국비와 지방비 각각 50%임.
- 지원내용은 첫째, 제품의 가공·생산·상품화에 필요한 작업장, 시설 설치 등 기반 조성. 둘째, 경쟁력 향상에 필요한 포장 및 유통개선, 상표등록 및 출원, 전자상거래 홈페이지 제작, 홍보강화 등. 셋째, 위생적인 가공사업장 설계, 건축, 시설, 제품개발 등을 위한 컨설팅. 넷째, 기술습득을 위한 교육 및 우수지역 벤치마킹 등에 대해 지원함.

나. 6차산업과의 관계

- 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 증진 및 농업인의 경제활동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

해 시설지원 이외에도 유통에 필요한 사항, 홍보, 교육, 지적재산권 관련 사항 등의 SW적인 사업들이 6차산업화 대책과 연계가 많음.

1.2.2. 6차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

가. 개요

-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생산, 가공, 유통·외식·체험 산업을 추진코자 할 때 융·복합기술과 기반 조성을 지원함.
- 지원대상은 농촌마을, 품목반, 농업인단체 등 농업·농촌관련 공동체임.
 - 사업추진 역량을 보유하고 사업을 통한 수익창출과 공동체 회복 의지가 강한 15인 이상 참여 공동체로 하고 있음.
- 지원금액은 개소당 10억 원씩 2년간 지원하며, 국비와 지방비를 각각 50% 지원함.
 - 지원 한도액은 개소당 10억 원으로 1년차에 5억 원, 2년차에 5억 원을 지원함.
- 지원용도로는 첫째, 조직화, 경영체 간 연계 및 운영 시스템 구축. 둘째, 유형별 사업 다각화 기반조성(개발기술과 지역자원 연계). 셋째, 사업 참여자 역량개발임.

나. 6차산업과의 관계

- 6차산업에 대한 수익모델을 지원하는 것으로써 6차산업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음.
- 경영체간 운영시스템 구축과 참여자 역량개발과 같은 소프트웨어적인 사업들

이 6차산업화 대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

1.2.3.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 시범사업

가. 개요

- 시군농업기술센터를 지역농산물 가공기술의 전진기지로 육성하고자 함. 농산물 가공기술의 효율적 이전, 보급·확산과 공동기기 지원으로 농업인의 농외소득활동을 지원함.
- 지원금액은 개소당 10억 원으로 국비와 지방비를 각각 50%로 하고 있음. 사업기간은 2년간임.
- 지원자금 사용용도는 다음과 같음.
 - 첫째, 농업인의 가공활동을 통한 농외소득 개발을 위한 종합지원
 - 둘째, 농업인의 농산물 가공 활성화를 위한 공동 이용 공간 확보(증축, 보수, 신축), 건축, 시설 및 장비 배치를 위한 설계, 기자재 및 장비 설치
 - 셋째, 시설물 운전 및 관리, 창업 컨설팅 등 운영인력 확보
 - 넷째, 창업 및 농산물 가공 활동 희망 농업인·농업법인의 상품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
 - 다섯째, 가공 기술이전, 창업보육 및 코칭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여섯째, 가공기술 개발, 표준화, 상품화, 컨설팅 등에 따른 운영
 - 일곱째, 지역의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 구성 및 컨설팅 지원

나. 6차산업과의 관계

- 농산물 가공을 위한 시설지원과 소프트웨어 사업 지원을 통해 농가의 농외소득을 증대시키다는 데 있어 6차산업화가 추구하는 융복합화와 연계되어 있음.

- 농외소득 활동을 위한 종합지원, 컨설팅, 교육, R&D 등을 지원함으로써 6차산업화를 위한 소프트웨어적인 지원이 6차산업화 대책과 맥을 같이하고 있음.

1.3.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

가. 개요

-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대내외의 산·학·연·관 및 기업 지원기관 간의 협력촉진과 연계강화를 통해 지역발전역량을 결집·확충하여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연고자원의 산업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주관기관으로 기업 지원기능을 할 수 있는 대학, 연구소, 기업, 기업 지원기관 등 3개 이상의 참여기관의 참여가 필수조건임.
- 지원 가능한 사업 내용으로는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의 개념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네트워킹, 기업지원 등 S/W사업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장비 구축 등 H/W적 내용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 지속적인 지역혁신 창출을 위한 자립화 사업 추진(3년 선지원후 주관기관을 영리법인화 시행), 기존 R&D 인프라를 활용하거나 고용창출 효과 등이 많은 사업은 가점을 주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음.

나. 6차산업과의 관계

- 지역자원 중 농축산물과 농촌자원을 활용하여 산업화를 추구하는 경우 6차 산업화와 관련성이 높음.
-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네트워킹, 기업지원 등 S/W사업이 6차산업화 대책과 관련성이 있음.

1.4. 중소기업청 지역특화발전특구

가. 개요

- 지역특화발전특구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여건에 맞추어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하여 지역특성화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04년 9월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제정을 통해 시행되었음.
- 전국적으로 완화 또는 철폐하기 어려운 규제를 특구지역에 한해 완화해줌으로써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면서 탄력적인 운영을 통해 편의성 및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함.
- 추진체계는 지자체에서 특구지정 신청 및 특구계획을 제출하면 특구위원회에서 특구계획 승인 및 지정을 거쳐 지자체 주관으로 운영되며, 특구위원회에서는 추후 운영 평가를 담당함.
- 특구지정이 규제완화 등을 통한 특화사업 추진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정부의 직접적인 예산지원 부재로 활성화는 미흡한 실정이므로, 특구 관련 재정사업 확대를 위해 신규사업 선정·기획시 인센티브 부여 및 기존사업에 특구 활성화 방안을 포함하고 있음.

나. 6차산업과의 관계

- 농촌지역의 향토자원을 활용한 지역특화발전특구는 6차산업과 관련성이 높음.
- 특히, 6차산업화 대책중 6차산업화집적화지구(농촌산업집적화지구)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음.

1.5. 광역시도의 자체 사업

1.5.1 충청남도 농어업 6차산업화 지원사업

가. 개요

- 농어업 6차산업화 지원사업의 목적은 농어촌의 다양한 자원에 대한 계획적인 육성관리를 통하여 6차산업화를 촉진하고, 농어촌 산업 기반 마련하기 위해서임.
- 핵심사업으로는 두레기업과 지역단위 우량기업(기업조합, 우량기업) 육성에 있음.
 - 두레기업은 소규모 마을과 자립화 마을로 구분하여 마을단위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임.
 - 소규모 마을의 두레기업은 읍면동단위 또는 법정동리간 연접한 경우 2개면 지역에 있는 마을단위에서 농업을 기반으로 영리법인을 설립하여 6차산업화를 이루려는 사업단을 말함. 두레기업 또는 마을간 연계를 통해 법인화 계획이 있는 사업단으로 규정하고 있음. 지원비는 법인당 10억 원 이하이며, 지원비 부담 비율은 국비 50%, 시군비 30%,

자부담 20%임.

- 자립화 마을의 두레기업은 소규모 마을의 두레기업의 요건을 갖춘 농어업법인이 운영을 1년 이상 했을 경우를 말함. 농어촌 두레센터를 설치·운영하려는 사업단을 말함. 지원비는 법인당 10억 원에서 25억 원 이하이며, 지원비 부담 비율은 국비 50%, 시군비 30%, 자부담 20%임.
- 지역단위 우량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업조합과 우량기업을 육성함.
 - 기업조합은 읍면단위의 3개 이상 기업이 새로운 법인(영리법인)을 구성하고 신상품 개발 및 시장 개척하려는 예비 사업단을 말함. 지원비 규모는 개소 당 10억 원 이하이며, 지원비 부담 비율은 국비 50%, 시군비 20%, 자부담 30%로 하고 있음.
 - 우량기업은 년 매출 규모 3억 원 이상, 30억 이하이며, 영업실적 3년 이상인 도내 법인기업으로, 가공식품의 주원료를 국내산 80% 이상을 사용하는 업체 중 HACCP, GMP, ISO22000 인증 등 기업시설 고도화를 희망하는 업체와 수출업체, 학교급식 가공업체, 중부물류센터 입주 희망업체가 해당됨. 지원비 규모는 개소 당 5억 원 이하이며, 지원비 부담 비율은 국비 50%, 시군비 10%, 자부담 40%로 하고 있음. 그리고 지역농수산물 70% 이상 이용하고, 지역민을 50% 이상 고용할 경우 우대하고 있음.

표 4-1. 충청남도 6차산업화 관련 지원사업

구분	내용
두레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년내 사업비의 1/2 이상 지원 마을 배제 ○ 복합산업화 두레센터 설치운영 추가
기업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 소재 유사한 3개 이상 기업
우량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도 결산서 기준 매출 3억원 이상 30억원 이내인 기업 * 매출 5억원 미만은 3억원 내에서 지원 ○ 3년내 사업비의 1/2 이상 지원 기업 배제

출처: 충청남도, 2013. 내부자료.

나. 6차산업과의 관계

- 사업목적이 6차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6차산업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음. 특히, 농어촌의 다양한 자원에 대한 계획적인 육성 관리를 통하여 6차산업화를 촉진하고, 농어촌 산업 기반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6차산업화 대책과 관련성이 높음.
- 사업들이 이미 단계화 되어 있어 6차산업화 대책에서 담고 있는 내용들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으며, 중앙정부의 각종 정책과의 연계 및 위계화를 통한 효율적인 추진이 필요함.

1.5.2 경상북도 농어촌 공동소득화 사업

가. 개요

- 농어촌 공동소득화 사업은 농어업·농어촌의 다양한 잠재자원 발굴·활용을 통한 새로운 농어촌 공동 수익창출 모델을 발굴하기 위한 사업임. 지역에 산재한 다양한 유무형 자원을 활용, 고부가 2·3차 융복합화 사업 지원으로 마을소득을 높이고 새로운 가치를 가진 부자농어촌 마을 조성하고자 함.
- 농어촌 공동소득화 사업을 위해 경상북도는 자체사업인 농어촌소득자원발굴사업과 부자마을만들기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특징은 이러한 사업을 잘 완료할 경우 중앙정부의 사업인 향토산업육성사업과 지역전략산업육성사업과 연계하여 확대 발전시키고 있다는 점임.
- 농어촌소득자원발굴사업은 2009년부터 지원하기 시작하였는데 공동유통·제조가공 시설, 체험시설 등을 지원함.
 - 지원대상은 마을 및 생산자 조직으로 최소 10호 이상이 참여한 조직이어

야 함.

- 지원기준은 개소 당 3억 원 이내이며, 지원부담 비율은 도비 24%, 시군비 56%, 자부담 20%로 하고 있음.
 - 2012년 말까지 52개소에 14,079 백만 원을 지원하였음.
- 부자마을만들기사업은 2008년부터 시작하였음. 농어촌소득자원발굴사업과 마찬가지로 공동유통·제조가공 시설, 체험시설 등을 지원함. 그러나 차이점은 부자마을만들기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최소 20호 이상이 사업에 참여하여 함.
- 2008년부터 시작하여 2012년 현재 42개소에 329억 원을 지원하였음.
 - 지원규모는 개소 당 10억 원 이내이며, 부담비율은 국비 50%, 도비 9%, 시군비 21%, 자부담 20%임.

그림 4-1. 경상북도 6차산업화 관련 지원사업

	사업명	사업비	참여농가	지원내용
1단계	소득자원발굴사업	3억원	10호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통·가공시설 ▸ 체험시설
2단계	부자마을만들기	10억원	20호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통·가공시설 ▸ 관광·체험시설
3단계	향토산업육성	30억원	마을단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트워크구축 ▸ 유통·가공시설 ▸ 홍보·마케팅
4단계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60억원	광역단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트워크구축 ▸ 유통·가공시설 ▸ 홍보·마케팅

자료: 석태문, 2013. 경북지역의 6차산업화 정책과 사례. 대구경북연구원

나. 6차산업과의 관계

- 농어업·농어촌의 다양한 잠재자원 발굴하여 2·3차 융복합화를 통해 새로

운 농어촌 공동 수익창출을 한다는 데 있어 6차산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고 있음.

- 공동유통·제조가공 시설, 체험시설 등의 HW적인 지원을 하고 있어 SW 중심의 6차산업화 대책과는 차이가 있으나, 6차산업화를 목표로 하고 중앙 정부의 사업들과 연계하여 추진한다는 측면에서 관련성이 깊다고 할 수 있음.

1.5.3 전라북도 6차산업화 사업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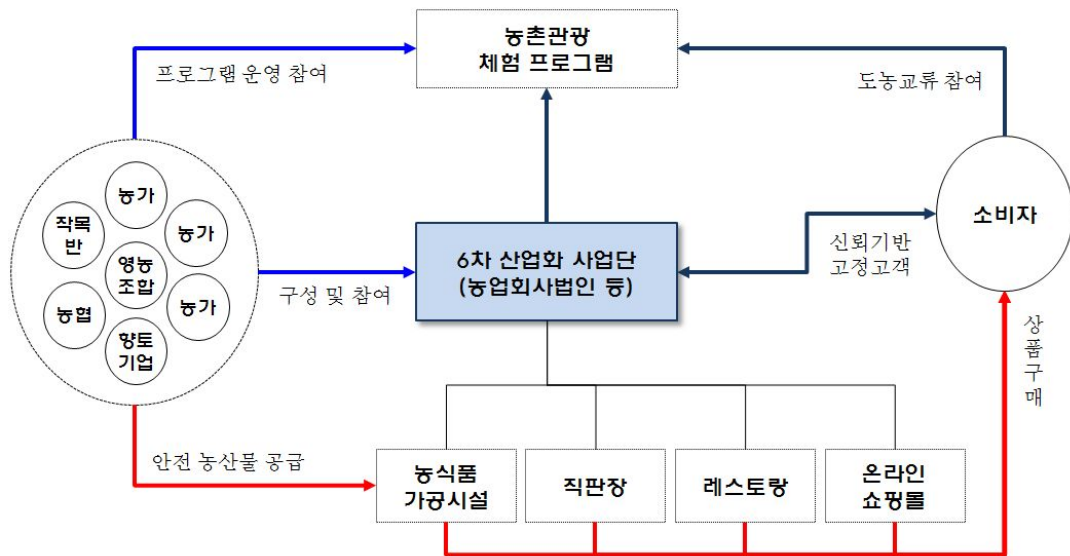
가. 개요

- 6차산업화 사업모델은 기본적으로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인프라를 연계시켜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신규 조성을 지양하고, 기존 사업을 통해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하여 체험로그램 등을 운영중인 사업지구 등 기존사업지구와 연계하여 추진
 - 기존 사업지구 중 농식품 6차산업화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부족한 분야 추가사업 지원
 - 부족한 분야 추가사업은 기존 사업지구 중 인프라 등 역량이 구축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농식품 6차산업화의 핵심시설인 농축산물 직판장, 영농·가공 체험장, 레스토랑 등 부족한 시설에 대해 추가 지원
- 사업주체를 선정할 시에는 기존사업을 통해 구축된 인프라 등을 활용 매출 증대/신뢰확보/판로확보 방안이 구체화된 사업장, 작목반 등 다수 생산농가가 참여하여 농가에 소득이 환원되고 안정적인 수익창출이 가능한 사업주체를 선정함.

- 운영주체 구성은 주관기관(행정, 농·축협, 민간 생산자단체, 민간기업, 마을 등)이 주체가 되어 추진하되,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관련 주체들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 사업단 명칭 및 조직형태는 참여주체의 경영능력/지역여건에 따라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모델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고, 사업단은 반드시 책임 경영체(별도 법인화)로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고 있음.

-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중인 체험시설에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지원하여 매출 및 방문객수를 대폭 확대 할 수 있는 시설에 국한하고 있음. 즉, 영농·가공 체험장, 직판장, 레스토랑, 유통시설, 저온저장고 등을 지원함.

그림 4-2. 전라북도 농식품 6차산업화 사업모델



출처: 황영모, 2013. 전라북도 6차산업화 정책추진 사례. 전북발전연구원

- 지원규모는 연간 총 사업비 100억 원 범위 내에서, 개소 당 20 ~ 50 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되 사업계획서 심의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함. 기존 마을사업에 소요된 단위시설 비용을 고려하여, 6차산업화의 핵심시설인 직판장, 체험장, 레스토랑, 가공·유통시설 비용을 산출함.

나. 6차산업과의 관계

- 사업모델이 6차산업화를 지향하고 있음. 그리고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인프라를 연계시켜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6차산업화 대책과 연관성이 깊음.
- 부족한 시설의 대상은 농식품 6차산업화의 핵심시설인 농축산물 직판장, 영농·가공 체험장, 레스토랑 등으로 6차산업화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HW 지원들임.
- SW적인 사업들인 매출증대/신뢰확보/판로확보, 작목반 등 다수 생산농가가 참여하여 농가를 중심으로 사업주체를 선정하여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6차산업화가 추구하는 바와 맥을 같이 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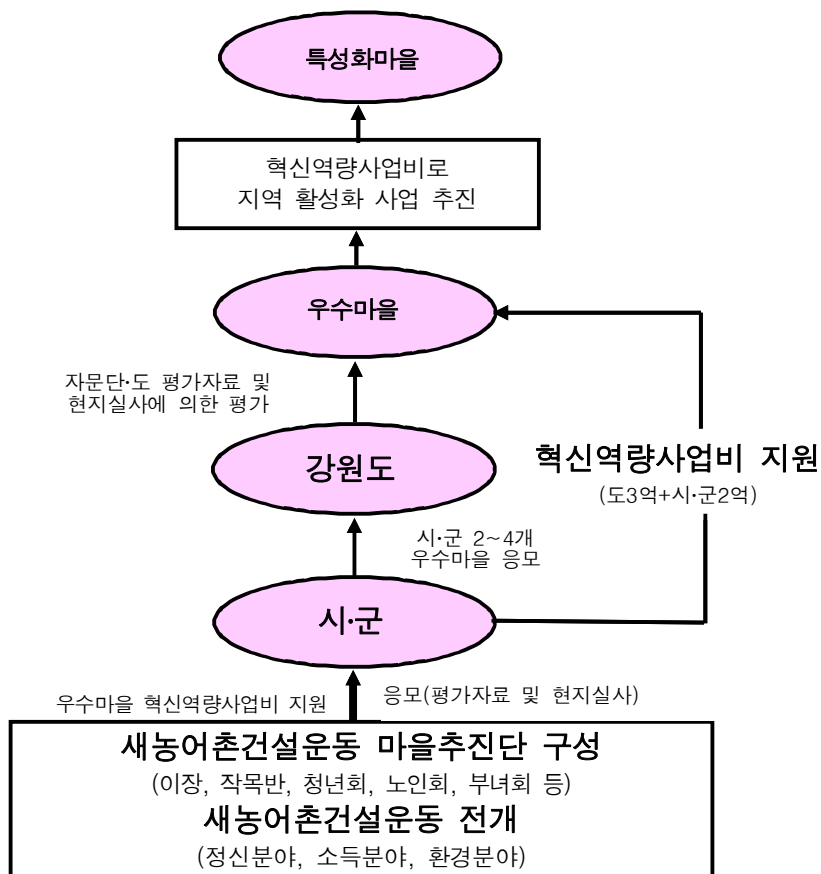
1.5.4 강원도 새농어촌건설운동

가. 개요

- 새농어촌건설운동은 1999년도에 시작하였으며, 농어촌 주민들의 자율적인 마을발전 역량과 의지가 높은 시범마을(우수마을)을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임.
 - 새농어촌건설운동의 주체적·궁극적 중심은 농어업인임. 운동의 추진 또한 농어업인 개개인을 비롯한 작목반, 영농회, 부녀회, 생산자 단체 등 마을단위 추진단이 주체가 되어 스스로 자율실천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음.

- 선정된 우수마을에 대해서는 포괄적 혁신역량사업비 5억 원(도비 3억, 시·군비 2억)을 지원함. 지원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용지침이 없으며, 사업비는 주민들이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고 있음.
- 새농어촌건설운동의 3대 이념은 정신, 소득, 환경이며, 새농어촌건설운동의 3대 목표는 「실사구시」, 「자력갱생」, 「자율경쟁」임.

그림 4-3. 강원도 새농어촌건설운동의 추진체계



출처: 강종원. 2010. 새농어촌건설운동의 보완·발전방안. 강원발전연구원

나. 6차산업과의 관계

- 마을공동체를 중심으로 마을의 활력을 추구하고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역량강화를 추구하고 있음. 농축산물을 활용한 가공 및 판매와 마을자원을 활용한 농촌관광을 마을단위가 주체가 되어 사업화하고 융복합화한다는 측면에서 마을단위 6차산업화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음.
- 도와 시군의 자체사업비로 운영이 되고 있어 중앙정부의 사업들과 연계시키고 위계를 확립하여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효율적인 6차산업화 사업이 될 수 있음.

1.6. 6차산업화 관련 정책의 특징과 문제점¹⁸

1.6.1. 6차산업화 관련 정책의 특징

- 첫째, 지역 자율성 확대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임. 정책 집행 방식이 과거에는 하향식이던 것이 최근에는 모두 상향식 공모제로 전환되었음. 이와 더불어 포괄보조사업이 도입됨에 따라 시군에 좀 더 자율성을 갖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음.
- 둘째, 지역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혁신을 시도하였음. 지역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 선진지 견학, 학습활동 등의 소프트웨어적 사업내용을 일정 비중 투자토록 유도하고 있음. 참여자간 사업단을 만들고, 하부에 운영위원회, 실무

¹⁸ 박준기 외(2013) 연구 내용중 ‘6차산업화를 위한 정책개선 방향(pp54~57)’를 바탕으로 재구성하였음.

- 추진단, 사무국을 두게 하여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 있음.
- 셋째, 지역의 전후방 연계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고 있음. 농촌지역의 경제활성화라는 측면을 강조하면서 지역의 전후방 연계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유도하고 있음. 특히,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산업화는 1차 산업부터 2차 산업, 3차 산업이 융복합화 되도록 하고 있음.
 - 넷째,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농촌산업 정책이 수행되는 면도 있음. 향토산업육성사업 등을 통해서 낙후지역에 대한 집중 투자가 이루어고 있고, 포괄 보조사업을 통해 모든 시·군이 재량으로 숙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문호를 열어 주고 있음.
 - 다섯째,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 수준의 사업으로 분리되어 추진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사업 시행의 공간적 범위가 되는 공간단위가 중첩되면서 오는 비효율성 존재하고 있음. 대부분 시군단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업별로 공간적 차별화가 필요함. 즉, 마을단위, 시군단위, 시도단위의 사업들이 체계적으로 분리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임. 일부 사업에서는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간의 공간적 범위를 차별화해 시너지를 유도하기도 하고는 있으나 단순 연계에 머무는 경향이 강함. 또한 마을단위 사업들 간에도 차별성 부족한 실정임.
 - 마지막으로, 관련 부처간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임. 6차산업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농촌산업 분야의 정책을 주로 수행하는 부처는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안전행정부임. 이들 부처간의 협력은 매우 중요함. 관련 부처들의 사업이 한 지역에서 동시에 수행될 경우, 조정을 통해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투자를 유도해 시너지 발휘할 필요가 있음. 관련 사업간의 연계와 차별화를 통해 시너지가 발휘되도록 해야 농촌

지역에서 좀 더 큰 사업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표 4-2. 6차산업화 관련 정책들의 비교

관련 정책	주관 부처	기준 공간	주체	추진방식	목적	특징
향토산업 육성사업	농림축산식품부	시군	사업단	상향식 공모	향토자원을 활용한 1차, 2차, 3차 융복합	산학관연 협의체 중심
지역전략식품 산업육성사업		시군	사업단	상향식 공모	지역농림수산물을 활용한 1차, 2차, 3차 융복합	산학관연 협의체 중심
농어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		시군	사업자	상향식 공모	지역자원을 활용한 융복합	시군자율로 사업 시행
지자체연계 사업		시군	사업단	상향식 공모	지역자원을 활용한 융복합	지자체간 연대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전국	기업	상향식 공모	농공상 연대 및 협력을 통한 성장	농공상 협력
농어촌 공동체회사		마을	경영체	상향식 공모	지역주민 주도의 지역자원 활용	지역주민 주도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농촌진흥청	마을	경영체	상향식 공모	소규모 창업시 제품 개발
6차산업 수익모델	마을		공동체	상향식공모	융복합화 및 기술과 기반 조성	기반조성 및 운영시스템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	시군		시군	상향식공모	가공시설 지원	시설지원
지역연구사업	산업통상자원부	시군	사업단	상향식 공모	지역특화자원의 산업화	산학관연 협의체 및 기업지원기관 협력
지역발전특구	중소기업청	시군	시군청	상향식 공모	규제완화	규제특례 적용
마을기업	안전행정부	마을	경영체	상향식 공모	지역주민 주도의 지역자원 활용	지역주민 주도

자료: 박준기 외. 2013. 수정 보완

1.6.2. 6차산업화 관련 정책의 문제점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6차산업화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에는 6차산업화 대책, 향토산업육성사업,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등이 있음. 이들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함.
- 첫째, 광역시도나 시군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농촌산업 육성이나 6차산업화 계획이 없다는 것임. 일정한 계획하에서 중앙정부의 지원사업을 활용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음. 이에 따라 체계적인 농촌산업 육성이 되지 못하고 있음. 중앙정부의 사업들을 지역실정에 맞게 활용하고, 로드맵에 맞추어 추진한다면 해당 사업이 지역에 뿌리내림으로써 지역산업의 활성화에 기초가 될 수 있음. 그러나 현재 이와 관련한 지역산업 계획이 미흡한 실정임.
- 둘째, 정책시행의 공간적 차별화가 부족함.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이 중심이 되고 있음. 향토산업육성사업은 기초자치단체인 각 시·군이 향토자원을 활용해 산업화 시·도하고 있고,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은 시·도 광역적 범위로 공간단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사업 시행은 시·군 지역을 두 개 이상 연합해 실시하고 있어 공간적 차별화가 되지 못하고 있음.

표 4-3. 6차산업화 관련 정책들의 공간적 단위

공간단위	중앙정부		지자체	
전국	농림축산식품부	6차산업화 사업자 인증		
		6차산업화 창업자금		
		농공상용합형중소기업		
	농촌진흥청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시범사업		
시도	농림축산식품부	6차산업화 지원 협의체		
시군	농림축산식품부	6차산업집적화지구	전라북도	6차산업화 사업모델
		지역컨소시엄 사업단		
		6차산업화 경영컨설팅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향토산업육성사업		
		농어촌자원복합사업화지원사업		
	농촌진흥청	6차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지역특화발전특구		
읍면			충청남도	우량기업
				기업조합
				두레기업
마을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마을종합개발	경상북도	부자마을만들기
		농어촌공동체회사		소득자원발굴사업
	안전행정부	마을기업	강원도	새농어촌건설운동

- 셋째, 정책사업 내용의 유사성이 존재한다는 점임. 대부분 지역내 농특산물을 활용해서 부가가치를 창출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음. 지역내 관련 주체들을 묶어 협력을 유도하고 운영주체를 꾸리도록 하는 것도 유사함. 지원 내용들도 대부분 기술개발, 역량강화, 브랜드 개발, 홍보 및 마케팅 지원 등 많은 부분에서 유사한 면을 지니고 있음.
- 넷째, 사업내용들이 패키지화되지 못하고 분산적임. 대부분 산업육성 쪽으로 국한되어 있음. R&D, 교육, 역량강화 등에 대한 내용이 있긴 하지만 거

점마련을 위한 집중투자 방식이 아니어서 효과가 낮은 상태임.

- 마지막으로, 사업들간 연계가 부족함. 특히, 시군단위 사업 간의 차별화와 연계가 부족해 시너지를 내는데 한계가 있음. 사업간 역할에 충실하면서 부처간 연계협력을 통해서 중복성을 탈피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연계협력이 필요함.

2. 외국의 6차산업 관련 정책

2.1. EU의 6차산업 관련 정책

- 유럽은 농촌산업이나 6차산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음. 그러나 유럽에서도 농촌의 고령화,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음.
 - 그러한 가운데 EU는 농촌경제 다각화라는 정책을 바탕으로 농촌경제 활성화를 추구하고 있음.
 - 따라서 6차산업화도 농촌경제의 활성화, 농가소득의 증대가 목적이기 때문에 EU의 농촌경제 다각화라는 정책 어젠다는 6차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음.

2.1.1. EU의 리스본 전략과 농촌경제 다각화

가. EU의 리스본 전략

- 2000년 EU 정상들이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에서 모여 역내 구조개혁을 추진함으로써 EU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경쟁적인 지식기반 경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리스본 어젠다(Lisbon Agenda)를 채택하였음. 리스본 전략은 농업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분야를 다루고 있음. 농촌지역뿐만 아니라 도시지역까지를 포함하여 ‘환경과 사회친화적인 방법을 이용한 생활수준의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음.
- 2000년에 수립한 ‘리스본전략’(Lisbon Strategy or Lisbon Agenda)을 2005년에 대폭 수정하여 경제성장과 고용확대에 초점을 맞춘 장기 경제성장 계획인 리스본전략 수정안을 제시하였음.
 - 리스본 전략의 핵심인 경제성장, 고용창출, 지속가능성은 농촌개발과 지속가능한 농업의 발전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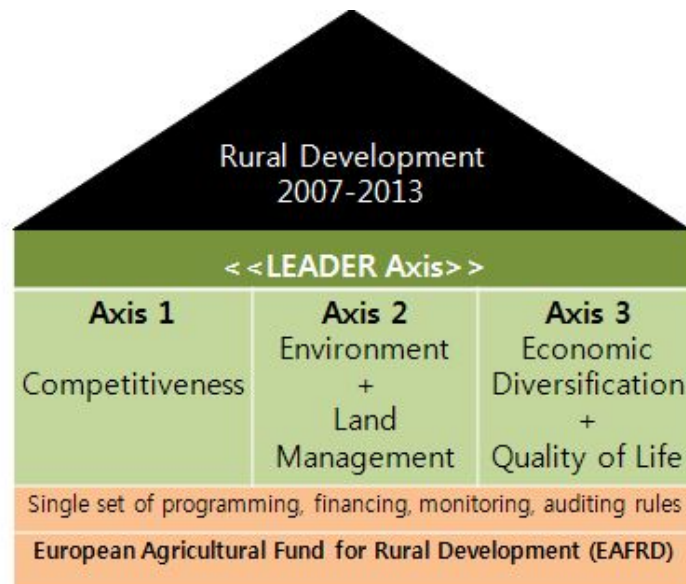
나. EU의 농촌개발 전략 가이드라인

- 2005년 수정된 리스본 전략에 따라 2007년 이후 농촌개발정책에 대한 새로운 지침(EU strategic guideline for rural development, Brussels, 2005. 7. 5)이 제시되었음.
- 유럽의 농촌개발 전략적 가이드라인은 4개의 기둥으로 구성되어 있음.
 - Axis 1: 농업 및 임업 부문의 경쟁력 강화
 - Axis 2: 환경과 경관의 개선
 - **Axis 3: 농촌지역의 삶의 질 및 농촌경제 다각화**
 - Axis 4: 리더(Leader) 어프로치
- 우리나라의 6차산업화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둥 3 ‘농촌지역의 삶의 질

및 농촌경제 다각화'는 다음과 같은 세부사항들을 강조하고 있음.

- 농가구성원의 농업활동 다각화: 상품화, 농업관광, 서비스, 수공업, 승마, 경관관리 등
- 소기업(micro-entreprises) 창업 지원: 10인 미만 고용, 매출액 2백만 유로 이하 소기업의 창업, 경영이양, 취득 지원(시설 및 운영)
- 관광활동의 촉진: 지자체와 연합체 지원, 소규모 체류시설 신축 및 개보수 지원(시설 및 운영)
- 농촌경제와 농촌인구에 대한 서비스: 농촌지역의 공공서비스 개선(탁아소, 노인복지, 건강, 의료, 고용안내, 인접상업시설, 문화, 레저시설 등)
- 인력육성 및 교육훈련지원: Axis 3과 관련한 인력육성 프로그램 지원, 지자체, 공공 및 민간기관 등
- 농촌유산의 보전과 활용: 농촌유산의 보호와 재인식을 위한 프로그램, Natura 2000, 자연유산, 문화유산

그림 4-4. EU의 농촌개발과 다각화 정책



자료: Rural Development in the EU: Statistical and Economic Information Report 2012

2.1.2. 유럽 2020 전략(Europe 2020 strategy, EU의 리스본 전략 이후)

- 2011년 10월에 유럽위원회는 농촌개발 정책에 대한 초안과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의 자금 조달, 관리, 모니터링에 대한 초안을 제시함.
- 제안서에 따르면, 농촌개발 정책은 다른 EU 기금(특히 유럽 지역 개발 기금 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 유럽 사회 기금 European Social Fund, 연합 기금 Cohesion Fund, 유럽해양수산물기금 European Maritime and Fisheries Fund)에서와 마찬가지로 CAP의 다른 요소들과 조정 및 보완 방식으로 작동하도록 하고 있음.
- 이러한 기금들은 EU 수준의 공통 전략 프레임워크 Common Strategic Framework 하에서 이루어짐. 공통전략 프레임워크는 이들 기금을 운영하는 데 있어 필요한 공통된 목적과 규칙들을 포함하는 국가적 수준의 파트너십 계약 Partnership Contracts에 따라 이행됨.
- 이러한 맥락에서 농촌개발 정책은 농업의 경쟁력 강화, 자연 자원과 기후변화에 대한 지속 가능한 경영, 농촌지역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장기적인 전략들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유럽 2020 전략(Europe 2020 Strategy)에서 농촌개발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의 농촌개발 지원에 관해 하위목표로 아래의 6가지를 제시하고 있음.

- ① 농업, 임업 및 농촌지역에서의 지식 이전과 혁신을 촉진
- ② 모든 형태의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가의 생존력 강화
- ③ 식품사슬(food chain)과 농업의 위험관리 촉진
- ④ 농업과 임업의 생태계 보존과 향상, 복원
- ⑤ 농업, 식품, 임업 부분에서 자원 효율성 증진, 저탄소와 기후변화에 탄력적으로 적응하도록 하는 지원
- ⑥ 사회적 통합 향상, 빈곤 감소,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 촉진

2.2. 일본의 6차산업화 정책

2.2.1. 6차산업화 정책 개요

- 일본의 농산어촌도 우리나라처럼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커뮤니티 유지의 어려움, 겸업기회 등 소득창출 감소 등에 의해 피폐해져 가고만 있어, 농어촌의 활력 재생이 불가피한 상황임.
 - 일본의 식품 마켓 규모 축소가 가속화되고 있는데 1995년 80.4조엔이던 것이 2005년 73.6조엔으로 1할 정도가 감소하였음.
 - 농업산출액 감소는 더 심각한데 1990년 11.5조엔에서 2006년 8.3조엔으로 3할이 감소하였음.
 - 농업소득 감소가 가장 심각한데 1990년 6.1조엔이던 것이 2005년에는 3.4조엔으로 절반이 감소하였음.
 - 이에 따라 일본 농산어촌 지역의 기업 폐업이 늘어나고, 또한 공공사업 또한 대규모로 감소하였음.
- 일본 농어촌 활력 증진을 위해 농림수산성은 농산어촌에 유래하는 농림수산물, 바이오매스 등의 자원을 유효하게 활용하고 지역 비즈니스 전개와 신산

업 창출을 도모함으로써, 농산어촌의 고용 확보와 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농산어촌 6차산업화」를 6차산업화 법안에 의거하여 추진하고자 하고 있음.

- 따라서, 2010년 “지역자원을 활용한 농림어업자 등에 의한 신사업 창출 및 지역의 농림수산물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일명 6차산업화법)”을 제정함.
- 최근 2012년에는 “주식회사 농림어업 성장산업화 지원기구법(일명 펀드 법)”을 제정하였음.
- 2013년 5월 31일 까지 종합화사업계획(6차산업화 계획)을 승인한 건은 총 1,478건임.
 - 이중 가공&직판 66.4%, 가공 23.4%, 가공&직판&레스토랑 5.5%, 직판 2.7%, 수출 0.4%, 레스토랑 0.1%, 가공&직판&수출 1.5%임.
 - 활용 농수산물은 채소 31.9%, 과수 18.1%, 쌀 12.5%, 축산물 11.9%, 수산물 5.1%, 두류 4.6%, 임산물 4.1%, 기타 3.9%, 차 2.4%, 맥류 2.3%, 근류 1.8%, 화훼 1.2%, 야생조수 0.3%임.

2.2.2. 6차산업화 법¹⁹

가. 취지

- 지역자원을 활용한 농림어업자 등에 의한 신사업의 창출에 관한 시책 및 지역의 농림수산물 이용 촉진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농림어업 등의 진흥을 도모하는 동시에 식료 자급률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

¹⁹ 본 내용은 김용렬·허주녕(2011) 연구 내용 일부를 재인용 및 수정한 것임.

으로 하고 있다. 또한 농산어촌의 6차산업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새로운 시장·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농산어촌 지역 고용 확보와 농림어업자 소득 향상을 추진하려 하고 있음.

- 농림어업자 등에 의한 농림어업 6차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농림어업자 등이 농림수산물 등의 생산 및 그 가공 또는 판매를 일체적으로 행하는 사업에 관한 계획과 동반하여 해당 사업에 도움이 되는 연구 개발 및 그 성과 이용에 관한 계획에 관련된 제도를 창설함과 동시에, 이들 계획의 실시에 필요한 금융 외 지원조치를 강구하고 있음.
- 농림어업자의 6차산업화 사업과 지역자원을 활용한 신산업 창출을 지원하는 대책(기간 대책)을 농림어업자가 가공·판매하기 위한 시장을 확대·활성화 시키는 대책 (시장확대대책)과 병행하여 실시하였음.

나. 기본이념

- 농림어업자 등에 의한 농림어업 및 관련 사업 종합화는 농업자, 임업자 및 어업자 소득 확보를 통해 지속적인 농림어업 생산 활동이 가능케 하여, 지역 경제에 활력을 가져다 줌과 동시에, 에너지원으로서 이용, 그 외 농림수산물 등의 새로운 수요 개척 등에 의해 지구온난화 방지에 기여함.
- 농산어촌의 중요한 산업인 농림어업의 6차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지역 자연적, 경제적, 사회적 조건에 맞추어 지역에서 창의성을 발휘하며, 농림어업자 등이 필요에 따라 농림어업자 이외의 사람들과 협력하여 농림수산물 등 농산어촌에 존재하는 토지, 물 그 외 자원을 유효하게 활용하여 주체적으로 행하는 사업에 대해 집중적 또는 효과적으로 지원함.
- 농림어업자 등에 의한 농림어업 및 관련 사업 종합화 촉진에 있어서는, 농림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는 신상품 생산 또는 판매에 관한 신기술 도입이

중요하므로, 다양한 주체에 의해 신기술 연구개발 및 그 성과 이용이 추진함.

다. 법 체계

- ‘지역자원을 활용한 농림어업자 등에 의한 신사업 창출 및 지역 농림수산물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6차산업화 법)’은 3개의 장 8개의 절, 50개의 조항,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제1장은 총칙
 - 제2장은 지역 자원을 활용한 농림어업자 등에 의한 신사업의 창출 등에 관한 내용으로 5개의 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절은 총칙, 제2절은 기본방침, 제3절은 농림어업 및 관련 사업의 종합화의 촉진에 관한 시책, 제4절은 잡칙, 제5절은 법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제3장은 지역의 농림수산물 이용의 촉진에 관한 내용으로 3개의 절로 구성되어 있음. 제1절은 총칙, 제2절은 기본방침 등, 제3절은 지역의 농림수산물의 이용의 촉진에 관한 시책으로 되어 있음.
 - 마지막은 부칙으로 가름하고 있음.

2.2.3. 주식회사 농림어업 성장산업화 지원기구

가. 설립목적 및 배경

- 농림수산업·농산어촌으로부터 일손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생산부터 소비까지의 밸류체인을 연결하여, 지역의 활력을 끌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주)농림어업 성장산업화 지원기구는 관·민이 연대하여,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출자나 경영지원을 실시하기 위해서 설립되었음.

- 근거법은 「주식회사 농림어업 성장산업화 支援機構 법」(일명 펀드법)임.

나. 주요 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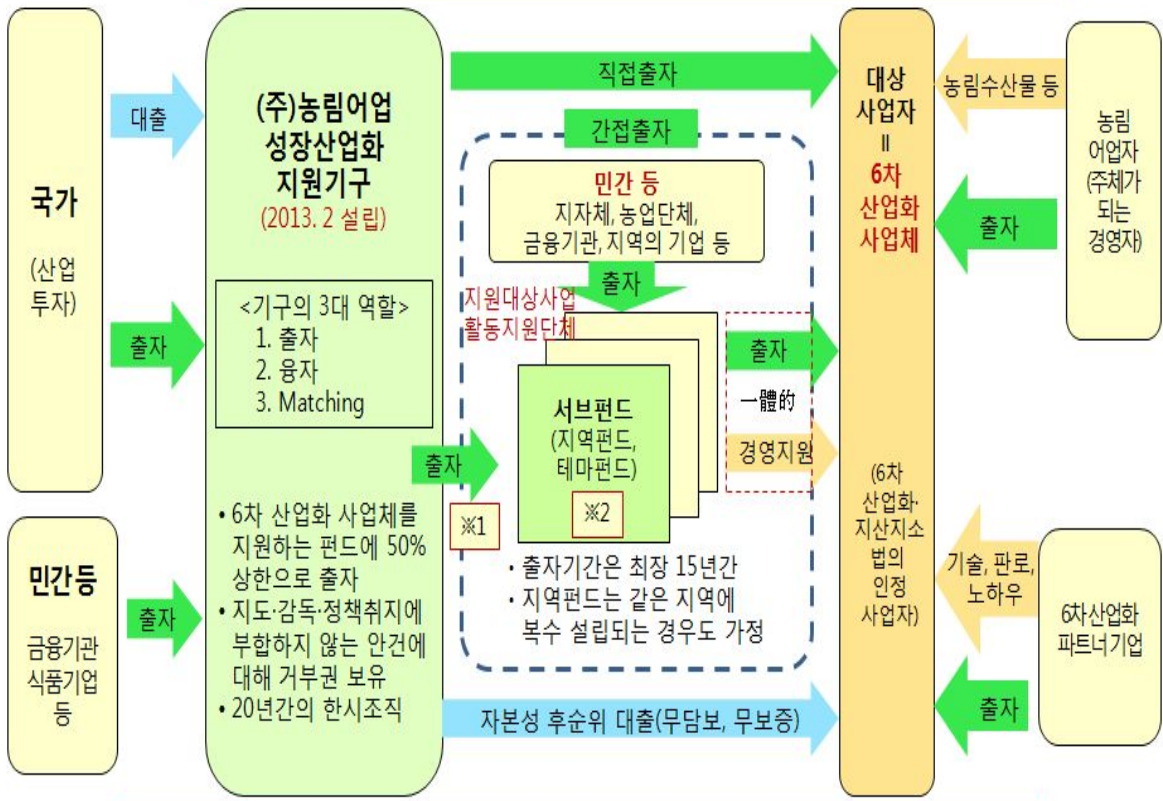
- 출자, 용자, 매칭

다. 펀드의 특징

- 가장 큰 특징은 농림어업의 특성으로 인해, 투자기간을 최장 15년으로 설정한 것임.
 - 이로 인해,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6차산업화의 추진을 지원할 수 있음. 또한 서브펀드와 연계하면서, 지원기구도 경영지원을 실시하며, 투자처와 같이 사업의 유지, 성장을 지향함.

그림 4-5. 일본 6차산업화 펀드 추진 체계

- 국가와 민간의 공동출자에 의해, (주)농림어업 성장산업화 지원기구 설립.
- 농림어업자와 타산업 사업자가 연대하여, 공동출자 하는 회사가 지원대상.
- 국가는 기구의 지원기준을 설정하고, 출자·용자에 대해 인증을 부여 함으로서, 기구에 대한 거버넌스 확보.



※1: 펀드설립을 할 때 기구가 출자약속시 또는 자본성 후순위 대출을 실행시에는 농림어업자의 의견을 청취함.
 ※2: 이 펀드는 투자사업 유한책임조합법 (LPS법)에 근거한, 투자사업 유한책임조합을 가정(그 외는 개별상담).

라. 출자대상 사업 범위

- 지원기구에서는 6차산업화 추진을 통해서 농림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음.
- 출자를 원하는 사업체는 각 지역별 서브펀드(또는 지원기구 본부)와 상담을 실시함.

마. 출자에 필요한 내용

- 우선 사업계획을 작성하여야 함. 이것을 위해 지원기구와 상담이 필요함.
- 또한 투자 이외에도 다양한 지원조치가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지방 농정국이나 지역센터, 6차산업화 서포트 기관과 상담을 통해 해결함.

바. 펀드를 활용함으로써 인한 메리트

- 농림어업자의 메리트
 - 파트너 기업과의 신뢰 형성: 펀드는 파트너기업 선택의 단계에서 파트너기업과 제대로 된 신뢰가 형성되도록 지원함.
 - 농림어업의 생산에 맞춘 경영: 생산현장을 숙지한 농림어업자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펀드가 회사의 경영을 지원함.
 - 다양한 도전을 지원: 사용의 제약이 적고, 자유도가 높은 펀드 자금으로 인해 다양한 도전을 지원함.
- 파트너 기업의 메리트
 - 바람직한 사업자를 소개함: 사업내용, 규모에 따라 같이 추진할 수 있는 바람직한 농림어업자를 펀드가 소개함.

- 각종지원으로 부담을 경감: 생산과 유통·판매 측면에 원-원 할 수 있을 때까지 각종 경영지원제도와 최장 15년의 장기자금으로 지원함.
- 폭 넓은 활용이 가능: 보조금이 아닌 출자이기 때문에 지역자원의 활용이나 수출에 의한 해외전개 등 폭 넓게 활용할 수 있음.

사. 캐치프레이즈인 'A-FIVE'의 의미

- A=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농림어업을
- F=Fund: 펀드를 활용하여
- I=Innovation: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창조하고
- V=Value-chain: 사업자간의 밸류체인을 결합하여
- E=Expansion: 지역활성화와 해외전개를 도모함

2.2.4. 주식회사 농림어업 성장산업화 지원기구법(펀드법)²⁰

가. 개요

- 법의 정식명칭은 「주식회사 농림어업 성장산업화 支援機構 법」(약해서 '펀드법'으로 칭함)임.
- 이 법은 농림어업자가 주체가 되는 6차산업화의 사업활동에 대해 출자·융자 및 경영지원을 통해 농림어업의 성장산업화를 촉진하는 데 있음.

나. 법 체계

- 법은 총 10장 49조로 구성되어 있음.

²⁰ 자세한 법률내용은 부록 참조

- 제1장 총칙(제1조~제5조)
- 제2장 설립(제6조~제11조)
- 제3장 관리(제12조~제20조)
- 제4장 업무(제21조~제25조)
- 제5장 정부의 지원 등(제26조~제27조)
- 제6장 재무 및 회계(제28조~제33조)
- 제7장 감독(제34조~제36조)
- 제8장 해산 등(제37조~제38조)
- 제9장 잡칙(제39조~제41조)
- 제10장 벌칙(제42조~제49조)
- 부칙

2.2.5. 6차산업화 중간지원 조직

가. 서포트센터

- 일본의 “지역자원을 활용하는 농림어업자 등에 의한 신사업의 창출등 및 지역의 농림수산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6차산업 지원법)”에 의해 각 도도부현에 6차산업 서포트센터를 두고 있음.
 - 도·도·부·현에 56개 설치
- 서포트센터는 정부에서 농업관련 법인의 응모를 받아 선정(전국 도도부현에 설치) 하여 정부정책을 대행(정부 실비지원)
- 각 서포트센터에서는 플래너를 두고 각 사업별로 파견 혹은 창구상담으로 사업을 지원

나. 6차산업화 사업 플래너

<6차산업화 플래너에 의한 지원활동>

- 플래너는 중앙 서포트센터가 농림어업자등이나 지역지원기관 등에서 상담을 청취하고 작성한 “지원의뢰서”를 기반으로, 농림어업자 등을 지원
- 지원의뢰서를 기반으로 지원업무를 의뢰받은 플래너는 중앙서포트센터, 또는 농림어업자등과 일정조정을 통하여 지원계획을 작성
- 플래너는 지원대상인 농림어업자등(지원대상사업자)에게 방문을 포함한 지원계획의 수행 등, 중앙서포트센터의 지시에 따라 활동하고, 활동 후에는 신속하게 활동보고서를 제출. 이때 적절하게 활동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같이 제출
- 복수의 플래너가 팀을 만들어 사업자에 대해서 여러회 방문을 할때 방문내용 등 각각의 활동보고서를 제출
- 상기보고가 적절하다고 센터가 확인한 경우, 중앙 서포트센터는 플래너에 대해서 지원의뢰서에 근거하여 정해진 활동비 및 교통비를 지불

제 5 장

6차산업화 대책에 대한 정책수요자 인식

1. 조사 개요

○ 조사 목적 및 주요 내용

- 본 조사의 목적은 농업인들이 6차산업화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현장에서 운영되는 6차산업 실태 등을 조사함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음.
- 주요 내용은 6차산업화에 대한 인지도, 현재 운영 중인 6차산업 영위 업체의 운영 실태, 운영 시 애로사항, 정부에서 추진 예정인 6차산업 정책에 대한 평가 등임.

○ 조사대상²¹

- 설문 참여자 수: 총 554명(이 중 농림어업 종사자는 전체 응답자의 85.5%인 459명)

²¹ 본 조사의 대상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통신원과 우수사례 종사자들은 농림축산식품부 정책과 연구에 대한 정보 등을 많이 접하고 있어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현지리포터 및 통신원(1,604명)과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에서 우수사례로 발굴한 6차 산업 관련 종사자 중 71명을 포함하여 설문을 진행하였음.
- 설문조사 방법
 - 설문지 이메일 발송을 통한 온라인 설문
- 조사 기간
 - 2013년 12월 3일 ~ 12월 10일(총 8일)
- 조사대상 일반 특성
 - 응답자 중 남성이 74.0%, 여성이 22.0%였음.
 - 연령별에서는 50대가 37.9%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60대 이상 28.5%이고, 40대가 21.8%를 차지하였음.
 - 소득수준은 쓸림현상없이 비교적 균일한 분포를 보였음. 5천만 원 이상인 고소득자가 35.7%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미만의 소득을 올리는 응답자가 32.5%, 3천만 원 미만의 소득을 나타내는 응답자는 29.8%였음.
 - 학력에서는 대졸이상이 51.9%(대졸 44.3%, 대학원 이상 8.8%)로 절반 이상을 나타내어 학력수준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고등학교졸업의 학력을 가진 응답자도 35.7%임.
 - 직업으로는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82.9%로 나타났음.

표 5-1. 조사대상 일반 특성

항목	구분	빈도	비율(%)
성별	남	410	74.0
	여	122	22.0
	무응답	22	4.0
연령	20~30대	48	8.7
	40대	121	21.8
	50대	210	37.9
	60대 이상	158	28.5
	무응답	14	2.5
소득 수준	3천만 원 미만	165	29.8
	3천만 원~5천만 원 미만	180	32.5
	5천만 원 이상	198	35.7
	무응답	11	2.0
최종 학력	무학	5	0.9
	초졸&중졸	49	8.8
	고졸	198	35.7
	대졸	239	43.1
	대학원 이상	49	8.8
	무응답	14	2.5
직업	농림어업 종사	459	82.9
	기타(자영업, 사무직, 주부, 학생 등)	78	14.1
	무응답	14	2.5

2. 6차산업화에 대한 인식과 추진 실태

2.1. 6차산업화 인지도

○ 농업인 10명 중 8명이 ‘6차산업화’ 개념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으며, 소득이

높을수록 6차산업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전체 응답자 중 82.1%가 1차 산업(농림수산물 생산)과 2차, 3차 산업의 융복합을 통한 6차산업화 개념에 대하여 대체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소득 구간 별(3천만 원 미만, 3천만 원~5천만 원 미만, 5천만 원 이상)로 살펴보면, 3천만 원 미만 소득 구간에서는 73.9%가 인지한 반면, 5천만 원 이상 소득 구간에서는 90.9%가 인지하고 있음.

표 5-2. 6차산업화 인지 여부

단위: %

구분	전혀 모름	잘 모름	조금 알고 있음	잘 알고 있음	매우 잘 알고 있음	계
전체응답자*	4.2	13.7	37.4	28.8	15.9	100.0
농림어업인**	4.2	12.3	37.4	29.8	16.4	100.0
3천만원 미만	7.9	18.2	38.2	24.2	11.5	100.0
3천만원 이상	3.4	15.3	41.2	25.4	14.7	100.0
5천만원 미만	2.0	7.1	33.0	36.6	21.3	100.0

*주1: 전체응답자는 설문에 참여한 554명 중 무응답을 제외한 응답자를 말함.

**주2: 농림어업인은 설문에 응답한 농림어업 종사자 459명을 의미함.

2.1. 6차산업화 경험정도와 추진실태²²

2.1.1. 6차산업화 경험정도

○ 6차산업화를 과거에 추진하였거나 현재 추진중에 있는 사람은 응답자의

²² 이 소절에서는 ‘2.1.1. 6차산업화 경험정도’를 제외한 모든 내용들은 6차산업화를 경험한 적이 있는 응답자들만의 답변임.

24.4%를 차지하고 있음.

- 향후 추진할 계획이 있는 사람은 27.4%임
 - 추진할 의향은 있으나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사람은 38.9%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추진할 계획 및 의향 모두 없어 6차산업화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9.2%에 불과함.
- 설문에 응답한 459명의 농림어업인 중 약 24%(109명)가 과거 6차산업을 추진하였거나, 현재 추진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전체응답자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냄.
- 향후 추진할 계획이 있는 농림어업인은 29.5%로 전체응답자보다 약간 높음.
 - 추진할 의향은 있으나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농림어업인은 38.3%로 전체응답자와 비슷하나 약간 낮은 수준임.
 - 추진할 계획 및 의향 모두 없어 6차산업화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농림어업인은 8.1%로 나타나 전체수준 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5-3. 6차산업 추진 여부

단위: %

구분	과거에 추진	현재 추진 중	향후 추진할 계획임	추진 의향은 있으나 구체적 계획 없음	추진할 계획 및 의향 모두 없음
전체응답자	2.2	22.2	27.4	38.9	9.2
농림어업인	2.0	22.0	29.5	38.3	8.1

2.1.2 6차산업화의 소득증대 효과

- 6차산업을 추진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중에 94.1%가 6차산업이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함.

- 농림어업인은 92.9%가 소득이 증가하였다고 답하여 전체응답과 비슷하지만 약간 낮은 수준임.
- 소득이 높을수록 6차산업이 소득 증가에 더 크게 영향을 준다고 생각함. 3천만 원 미만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은 85.7%가 소득증대에 효과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3천만 원 이상에서 5천만 원 미만의 소득자들은 94.9%, 5천만 원 이상의 소득자들은 97.1%가 6차산업이 소득증대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

표 5-4. 6차산업이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었는지 여부

단위: %

구분	전혀 안됨	별로 안됨	조금 도움이 됨	많이 도움이 됨	매우 많이 도움이 됨	계
전체응답자	0.7	5.2	39.0	34.6	20.6	100.0
농림어업인	0.9	6.3	40.2	35.7	17.0	100.0
3천만원 미만	3.6	10.7	50.0	32.1	3.6	100.0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0.0	5.1	41.0	23.1	30.8	100.0
5천만원 이상	0.0	2.9	33.3	42.0	21.7	100.0

2.1.3. 6차산업화 추진 목적과 유형

가. 추진 목적

- 6차산업화를 추진한 목적으로 ‘생산·가공·판매의 일원화를 통한 가격 결정권 확보’라고 응답한 사람이 43.0%로 가장 높았음.
- ‘고용증가 등을 통한 지역활성화에 공헌하기 위해’라고 응답한 비율이 16.5%로 두 번째로 많은 응답이었음.
- ‘유통비용을 절감하기 위해’라고 응답한 비율이 13.2%이었음.

- ‘농한기 등의 인력활용을 위해’라고 응답한 비율은 11.2%를 보였음.

표 5-5. 6차산업화를 추진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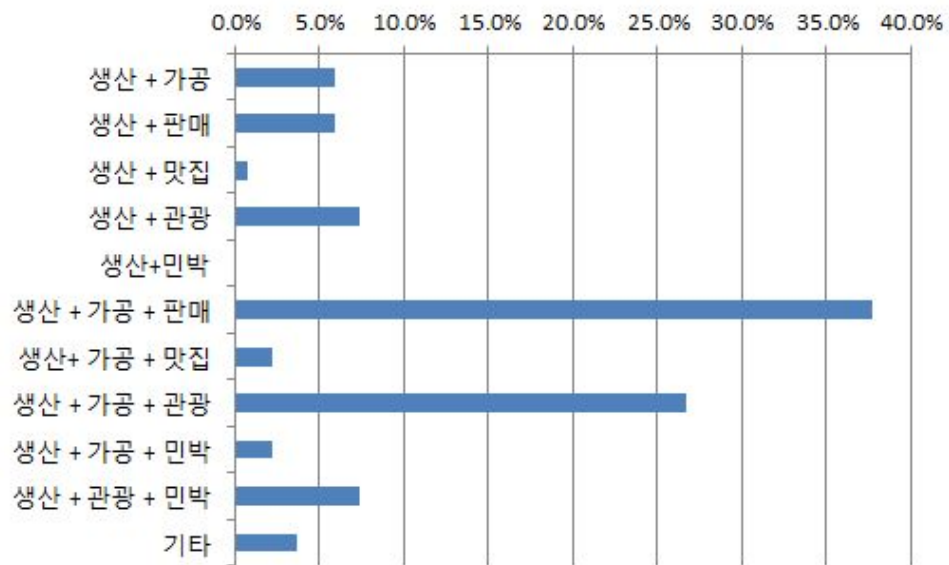
추진 이유	단위: %
	비율
생산·가공·판매의 일원화를 통한 가격 결정권의 확보를 위해	43.0
규격외품, 재고처리를 위해	6.6
고용증가 등을 통한 지역활성화에 공헌하기 위해	16.5
유통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13.2
농한기 등의 인력활용을 위해	11.2
유리한 조건으로 용자 및 보조금을 받기 위해	1.7
후계자의 경영참가 등에 의해 노동력에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1.2
기타	6.6

주: 복수응답

나. 유형

- 6차산업화를 추진한 주요 형태로는 ‘생산+가공+판매’ 형태가 37.8%로 가장 많이 차지함.
- ‘생산+가공+농촌관광(체험)’의 형태가 26.7%로 두 번째 많은 비중을 차지함.
- 이 두 형태가 전체에서 64.5%를 차지하여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 ‘농산물 생산+가공’만의 형태는 5.9%를 차지하지만 ‘농산물 생산+가공+a’의 경우, 농산물 생산과 가공을 기반으로 하여 6차산업화를 추진하는 비율이 74.8%를 차지하고 있어 가공을 하는 유형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그림 5-1. 6차산업화 추진 형태



2.1.4. 6차산업화 추진 시 중점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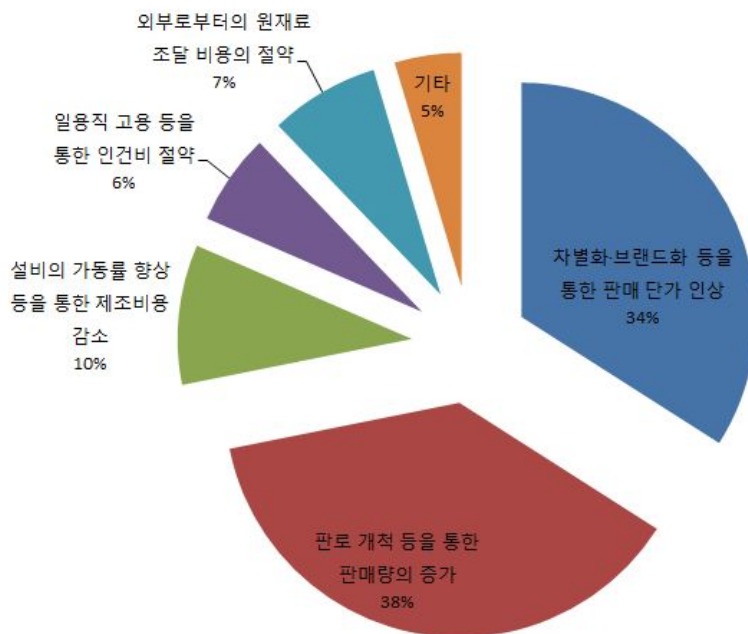
가. 수익 향상 방법

- 6차산업화 추진 시 수익향상을 위해 가장 많이 활용한 방법으로는 ‘판매량 증가를 위한 판로 개척’으로 37.8%를 차지함.
 - 그 다음으로 ‘차별화, 브랜드화 등을 통한 판매 단가 인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4.0%였음.
 - 그 외 ‘설비 가동율 향상’, ‘인건비 절약’, ‘원재료 조달 비용 절약’ 등은

10% 미만을 보였다.

- 따라서, 6차산업화 추진시 수익증대를 위해 취한 전략으로는 차별화 전략을 통한 판매증대로 요약될 수 있음.

그림 5-2. 6차산업화 추진 중점 사항



주: 복수응답

나. 브랜드화 추진

- 상품의 차별화, 브랜드화를 추진한 과정에서 중요시 하는 사항의 경우 ‘산지나 생산자를 어필하는 제품 제조’라고 답한 비율이 27.7%로 가장 높았음.
- 그 다음으로는 ‘유기재배, 생산이력제 등 안전, 안심면에서의 대응’으로

20.7%를 차지함.

- ‘산지 직송 등 신선도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는 응답이 17.0%, ‘상품명, 디자인을 중시한 이미지 창조’를 위해 노력했다는 응답이 15.5%를 차지함.
- 그 외 ‘광고 등을 통한 상품가치 전달’, ‘경쟁상대보다 값싼 제품 제조’, ‘수요와 공급 조절을 통한 판매 조정’ 등은 10% 미만의 응답률을 보였음.

표 5-6. 상품의 차별화, 브랜드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요시 한 사항

구분	비율
산지나 생산자를 어필하는 제품 제조	27.7
유기제배·생산이력제 등 안전·안심면에서의 대응	20.7
상품명·디자인을 중시한 이미지 창조	15.5
산지 직송 등 신선도 강화	17.0
광고 등을 통한 상품 가치 전달	7.0
경쟁상대보다 값싼 제품 제조	3.0
수요와 공급조절을 통한 판매 조정	6.3
기타	3.0

주: 복수응답

다. 부족한 전문 분야

- 6차산업화 추진시 부족한 인력과 전문지식으로는 ‘영업, 판로 개척’에 대한 부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4.2%로 가장 높았음.
- 그 다음으로는 ‘재무, 회계, 세무’에 관해서 부족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17.5%이며, ‘가공’분야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17.1%로 회계 관련사항과 비슷한 수준임.

- ‘조직의 관리운영’과 ‘고객 응대 및 판매’가 각각 10.3%로 동일한 응답을 보였음. 그리고 ‘농산물 생산’에 관해서는 8.4%만이 응답을 하여 비교적 어려움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판단됨.

표 5-7. 6차산업화 추진 시 부족했던 분야

구분	비율
영업·판로 개척	34.2
가공	17.1
조직의 관리·운영	10.3
농산물 생산	8.4
고객 응대·판매	10.3
재무·회계·세무	17.5
없음	0.4
기타	1.9

주: 복수응답

2.1.5. 해외시장 진출

가. 해외시장 진출 의향

- 6차산업화를 추진하는 응답자들 중 해외 진출을 시도하지 않고 있으며 시도할 의향도 없는 경우가 35.6%로 가장 많았음.
- 해외진출을 시행 계획 혹은 의향이 있는 경우는 25.9%, 시행 경험이 있는 경우는 2.2%,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경우가 7.4%로 이를 모두 합할 경우 64.4%에 달함.

- 따라서, 6차산업화를 추진하고 있는 사람들은 해외시장 진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5-8. 해외시장 진출 의향

단위: %

구분	비율
현재 미시행, 향후도 시행 의향 없음	35.6
현재 미시행, 향후 시행 의향 있음	28.9
현재 미시행, 향후 시행 계획 있음	25.9
과거에 시행, 현재는 미시행	2.2
현재 시행 중	7.4

나. 해외시장 진출을 하지 않는 이유

- 해외시장 진출을 하지 않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국내 생산과 판매가 우선’으로 22.8%로 나타남.
- 두 번째로는 ‘해외진출에 대한 전문지식과 전문인력 부족’으로 20.5%의 응답률을 보였음.
- ‘무역회사나 해외 바이어와의 네트워크가 없음’ 13.8%, ‘채산성에 맞는 생산의 확보 불가’ 12.3%, ‘해외진출에 필요한 자금 부족’이 10.8%로 나타났음. 그 외의 이유들은 10% 미만의 응답률을 기록하였음.
- 따라서, 6차산업화를 추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해장시장 진출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전문지식 습득과 해외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표 5-9. 해외시장 진출을 하지 않는 이유

단위: %

구분	비율
국내 생산·판매가 우선	22.8
무역회사나 해외바이어와의 네트워크가 없음	13.8
해외 판매처의 신용이 불안	2.2
해외진출(수출 등)에 대한 전문지식과 전문인력 부족	20.5
채산성에 맞는 생산(주문량)의 확보 불가	12.3
외국어 대응 불가	5.6
해외진출(수출 등)에 관한 절차가 복잡	7.5
해외진출(수출 등)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	10.8
환율이나 해외의 경제동향에 좌우되어 리스크가 큼	2.6
기타	1.9

주: 복수응답

다. 해외시장 진출 시 과제

- 해외시장으로 진출하고자 할 때 중점적으로 해야 할 과제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현지의 마케팅’ 활동으로 식품 기호 차이, 경합품과의 차별화, 판매촉진 활동 등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20.4%로 가장 높았음.
- 다음으로 수출, 검역, 통관 절차 등에 관한 무역실무에 대한 문제가 시급한 해결과제라고 답한 의견이 18.0%로 나타났음.
- 물류문제와 현지 식품안전과 판매규제에 대한 사항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14.6%로 나타남.

- 그 외, 수출규제, 현지 상업 관습, 외국어, 환율리스크 등에 대한 의견들이 10% 미만의 응답률을 보였음.

표 5-10. 해외시장 진출을 하고자 할 때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

단위: %	
구분	비율
수출규제·검역제도	8.8
무역실무문제(수출·검역·통관절차 등)	18.0
물류문제(로트·진열·지속적 출하처 확보, 품질·신선도 유지 등)	14.6
현지(해외)의식품안전규제·판매규제(라벨, 표시, 포장 등)	14.6
현지(해외)의마케팅(식품기호 차이, 경합품과의 차별화, 판매촉진활동)	20.4
현지(해외)의 상업관습(매장 임대료 부담, 채권회수, 지적재산보호 등)	7.5
외국어	8.5
환율리스크, 현지(해외)의 경기 동향	4.8
기타	2.7

주: 복수응답

라. 해외시장 진출 시 정부의 역할

- 해외시장 진출에 있어서 관계부처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개별상담 및 컨설팅의 기회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26.7%로 가장 높았음.
- ‘국내에서의 상담기회 제공’이 17.7%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외전개에 관련한 금융 지원’이 16.9%로 그 다음으로 나타남.
- ‘해외에서의 상담기회 제공’이 14.1%, ‘세미나 등에 의한 정보 제공’이 12.9%로 나타났으며, 그 외의 의견들은 모두 10% 미만으로 나타남.

- 결국, 해외시장 진출시 정부는 꾸준한 컨설팅과 정보제공을 해 줘 알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 깊이 있는 상담과 정보의 생산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

표 5-11. 해외시장 진출 시 필요한 정부의 도움

단위: %	
구분	비율
국내에서의 상담기회 제공	17.7
세미나 등에 의한 정보 제공	12.9
개별상담·컨설팅의 기회 제공	26.7
해외전개(수출 등)에 관련한 금융 지원	16.9
현지(해외)에서의 상담기회 제공	14.1
공동·릴레이 수출 등의 물류 지원	9.0
기타	2.8

주: 복수응답

3. 정부의 6차산업화 정책²³ 관련 인식 조사

3.1. 6차산업화 창업자금 지원사업

정부 대책: 6차산업화 창업자금 지원사업

- 6차산업화 우수경영체 육성을 위해 시설, 장비 현대화 자금 등 융자지원

* 2억원 한도, 연리 3%,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사업계획서 접수 후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 선정

²³ 2013년 7월 26일 농림축산식품부가 6차산업화 대책으로 발표한 내용을 중심으로 설문하였

- ‘6차산업화 창업자금 지원사업’의 실효성 여부에 대하여 문의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82.7%가 긍정적으로 답함.
 - 6차산업화를 과거에 해 봤거나 현재 하고 있는 6차산업화 경험자들은 6차산업화 창업자금 지원사업의 실효성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답했으며, 다른 응답자와 수준도 비슷함. 그러나 본 사업의 실효성이 ‘매우 크게 있음’이 15.0%로 나타나 다른 사람들보다 긍정적 의견의 강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농림어업인들의 경우도 긍정적인 의견이 82.5%로 전체응답자 수준과 유사하게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
 - 소득수준별로는 소득이 높을수록 더 긍정적으로 응답하고 있음. 3천만원 미만의 소득을 가진 응답자 중 78.3%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3천만원 이상에서 5천만원 미만의 소득을 창출하는 응답자는 83.9%, 5천만원 이상의 소득을 내는 응답자는 85.7%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음.

- 그러나,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 판단한 소수 응답자들의 의견도 중요함. 이러한 의견들을 잘 반영하여 정책 시행 시 참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지원금’만을 받기 위한 사업추진이 될 가능성이 있음.
 - 농산물의 가격 불안정성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융자금을 상환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부채만 남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음.
 - 비교적 소규모 자금 지원이 됨에 따라 경쟁력 향상에 있어 실효성을 거두기 힘들 것이라는 의견 등이 제시됨.

표 5-12. '6차산업화 창업자금 지원사업'이 실효성이 있을 가능성은?

단위: %

구분	전혀 없음	별로 없음	조금 있음	크게 있음	매우 크게 있음	계
전체 응답자	1.7	15.7	43.7	29.5	9.4	100.0
농림어업인	1.5	16.0	43.9	30.5	8.1	100.0
6차산업 경험자	1.5	17.3	36.1	30.1	15.0	100.0
3천만원 미만	2.5	19.3	41.0	31.7	5.6	100.0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2.2	13.9	46.1	26.7	11.1	100.0
5천만원 이상	0.5	13.8	43.9	30.6	11.2	100.0

3.2. 6차산업화 사업자 인증제도

정부 대책: 6차산업화 사업자 인증제도

- 성장가능성이 있는 경영체를 6차산업화 사업자로 인증 ('17년까지 1천개)
- * 지원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문가 등으로 6차산업화 추진계획 심의회를 구성하여 사전사업성 검토 강화

- '6차산업화 사업자 인증제도'에 대해서는 전체응답자 중 87.9%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음.
 - 6차산업 경험자도 전체응답자의 의견수준과 비슷함. 그런데 실효성이 '전혀 없음'은 0.8%로 다른 응답자에 비해 낮은 편이며, '매우 크게 있음'은 15.8%로 다른 응답자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남.
 - 농림어업인은 86.6%가 사업자 인증제도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음. 전체응답자와 비슷한 수준임.
 - 소득별로는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은 긍정적인 의견을 주었음. 3천만 원 미만의 소득자들은 84.0%인데 반해, 5천만 원 이상의 소득을 가진 응답

자들은 90.2%의 긍정적인 의견을 주었음.

-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 판단한 소수 응답자들의 의견들은 아래와 같음.
 - 성장 가능성이 있는 경영체를 인증하기 보다는 관리하기 쉽거나 혹은 어느 정도의 규모를 이미 이룬 경영체에 대한 인증제가 될 가능성이 큼
 - 무분별한 지원 혹은 육성을 통해 유사 사업이 과잉됨으로써 결국 모두에게 부정적 효과를 미칠까 염려됨.
 - 확고한 6차산업 모델(혹은 올바른 개념 정립)의 부재로 인한 주관적 인증 남발이 우려됨.
 - 인증만 해 놓고 사후관리를 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음.

표 5-13. '6차산업화 사업자 인증제도'가 실효성이 있을 가능성은?

단위: %

구분	전혀 없음	별로 없음	조금 있음	크게 있음	매우 크게 있음	계
전체응답자	1.5	10.6	51.0	28.6	8.4	100.0
농림어업인	1.3	12.1	51.1	28.7	6.8	100.0
6차산업 경험자	0.8	11.3	44.4	27.8	15.8	100.0
3천만원 미만	2.5	13.5	51.5	29.4	3.1	100.0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2.2	8.4	55.1	23.0	11.2	100.0
5천만원 이상	0.0	9.8	46.9	33.0	10.3	100.0

3.3. 중간지원조직 지정사업

정부 대책: 중간지원조직 지정 사업

- 농촌자원·산업에 대한 조사·분석, 창업·보육·연구·개발 지원 정보제공
인력양성 등 농촌산업 육성을 위한 전반에 관한 지원을 전문적으로 담당

- '중간지원조직 지정사업'에 대한 의견에서도 긍정적인 의견이 높았음.

- 전체 응답자 중 88.0%가 긍정적인 의견을 주었음. 그중 44.1%가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 6차산업 경험자들은 긍정적 의견이 86.8%로 다른 응답자와 비슷한 수준임. 그러나 이 사업에서도 실효성이 ‘매우 크게 있음’이 16.0%로 다른 응답자들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났음.
 - 농림어업인들은 86.6%의 긍정적인 의견을 보여, 전체 응답자 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지만 높은 긍정적인 면을 보여 주고 있음.
 - 소득수준에서는 3천만 원 이상에서 5천만 원 미만의 소득을 가진 응답자는 92.6%의 긍정적인 의견을 나타내어 가장 높았음. 그 다음으로 5천만 원 이상 88.6%, 3천만 원 미만은 82.6% 순으로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음.
-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 판단한 소수 응답자들의 의견
- 중간지원조직을 전문적으로 전담하는 부서나 기관을 두지 않은 채, 기존 인력에 업무를 분담시켜 담당하게 한다면 큰 성과를 기대하기 힘들 수 있음.
 - 지원 시, 위임/위탁/용역 등에 의해 사업을 운영할 경우, 정부가 정책 수혜 대상으로 설정한 이들 보다는 오히려 중간 관리자와 연관이 있는 단체 혹은 개인이 지원금만 취득하고 사업은 형식에 그칠 수 있음.
 - 새로운 만들기 보다는 기존 조직을 잘 활용해야 하며, 중간지원조직이 옥상옥의 역할을 해서는 안 됨.
 - 농업인을 위한 조직이 되어야 하며, 성과가 없을 때는 패널티를 적용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있어야 함.

표 5-14. '중간지원조직 지정사업'이 실효성이 있을 가능성은?

단위: %

구분	전혀 없음	별로 없음	조금 있음	크게 있음	매우 크게 있음	계
전체응답자	1.5	10.6	43.9	33.9	10.2	100.0
농림어업인	1.8	11.6	43.4	34.1	9.1	100.0
6차산업 경험자	2.3	9.9	37.4	34.4	16.0	100.0
3천만원 미만	1.9	15.6	39.4	36.9	6.3	100.0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1.7	5.6	48.0	33.9	10.7	100.0
5천만원 이상	1.0	10.4	43.8	31.8	13.0	100.0

3.4. 농촌산업집적화지구

정부 대책: 농촌산업집적화지구 지원

○ 특정 자원 및 산업의 특화를 통해 6차산업화 추진효과 제고, 지원센터 운영 및 공유이용시설 설치·공동연구개발 지원

- '농촌산업집적화지구(6차산업화)'에 대한 의견도 긍정적 답변이 우세함.
 - 전체응답자 중 90.5%가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이중 43.4%는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판단하였음.
 - 6차산업 경험자들도 93.6%로 대체로 긍정적인 의견이 강함. 특히 실효성이 '매우 크게 있음'이 15.1%로 높게 나타나, 다른 응답자와 차별화되고 있음.
 - 농림어업인들은 89.3%가 긍정적인 의견을 보여주었음. 이는 전체응답자와 거의 비슷한 수준임.
 - 소득수준에서는 중간지원조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3천만 원 이상에서 5천만 원 미만의 소득을 가진 응답자 93.7%로 가장 높은 긍정적 의견을 나타내었음. 그 다음으로 5천만 원 이상 91.0%, 3천만 원 미만은 87.5%

순으로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음.

-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 판단한 소수 응답자들의 의견
 - 집적화보다는 산지에 소규모로 분산 배치되는 것이 6차산업화에 적합함.
 - 기존 농산물 특화지구와 무엇이 다른가? 특화지구 지정 후에도 이전과 달라진 게 없음.
 - 공동운영은 현실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짐.
 - 특정지역과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혜택이 쏠릴 수도 있음.

표 5-15. '농촌산업집적화지구'가 실효성이 있을 가능성은?

단위: %

	전혀 없음	별로 없음	조금 있음	크게 있음	매우 크게 있음	계
전체응답자	0.8	8.8	47.1	34.5	9.0	100.0
농림어업인	0.9	9.9	47.0	34.4	7.9	100.0
6차산업 경험자	0.8	5.6	41.3	37.3	15.1	100.0
3천만원 미만	1.3	11.3	48.1	35.6	3.8	100.0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1.1	5.2	50.6	33.3	9.8	100.0
5천만원 이상	0.0	9.0	43.4	34.9	12.7	100.0

3.5. 모태펀드

정부 대책: 모태펀드

- 6차산업화에 기여하는 경영체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민·관합작 방식의 펀드
결성 운용사 선정 후 농식품투자조합을 결성, 실질적으로 관련 경영체에 투자
* '14년 : 100억 원 예상

- '모태펀드'에 대해서도 6차산업화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하는
의견이 우세하였음.

- 전체응답자 중 84.4%가 긍정적인 의견을 주었음.
 - 6차산업 경험자들도 긍정적인 의견이 83.9%로 다른 응답자들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부정적인 의견이 16.1%로 조금 높게 나타났음. 여기에서도 실효성이 ‘매우 크게 있음’이 13.1%로 다른 응답자들에 비해 높게 나타남.
 - 농림어업인들은 모태펀드에 대해서 84.2%의 긍정적인 의견을 보여 기대감을 나타냈음.
 - 소득수준에서는 3천만 원 이상에서 5천만 원 미만의 소득을 가진 응답자는 88.4%의 긍정적인 의견을 나타내어 가장 높았음. 그 다음으로 5천만 원 이상 86.4%, 3천만 원 미만은 78.4% 순으로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음.
 - 그러나, 모태펀드에 대해서는 다른 사항들에 비해 긍정적인 응답이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남. 특히 3천만 원 미만의 소득을 가진 응답자들이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 모태펀드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방안이 필요해 보임.
-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 판단한 소수 응답자 의견
-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경영체가 부족함.
 - 금융펀드도 아직 수익률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에서, 민/관이 농업을 중심으로 펀드를 운영한다면 현재의 농협의 일부 행태와 유사하게 농민의 소득보다는 펀드 운용에 있어서의 이익 창출 위주로 운영될 가능성이 클 수 있다고 지적함.
 - 일부 소수에게만 지원이 될 가능성이 큼.

표 5-16. '모태펀드'가 실효성이 있을 가능성은?

단위: %

	전혀 없음	별로 없음	조금 있음	크게 있음	매우 크게 있음	계
전체응답자	2.5	13.1	53.0	24.8	6.7	100.0
농림어업인	2.9	12.9	54.2	24.4	5.6	100.0
6차산업 경험자	2.3	13.8	45.4	25.4	13.1	100.0
3천만원 미만	5.1	16.5	44.9	29.7	3.8	100.0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1.7	9.8	60.3	22.4	5.7	100.0
5천만원 이상	1.1	12.6	53.2	23.2	10.0	100.0

3.6 판매 및 수출지원 장려

정부 대책: '판매 및 수출지원 장려'

-> 6차산업화 경영체 생산제품의 전시·홍보 및 생산품 판로확보 지원, 소비자 유통품평회 개최, 6차산업 박람회 개최, 6차산업 경진대회 개최('14. 7~8월)

- '판매 및 수출지원 장려' 에 대해서도 90% 이상의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음.
 - 전체응답자의 92.1% 이상이 긍정적인 기대를 하고 있음.
 - 6차산업 경험자들은 93.8%의 긍정적인 의견을 보여 제일 높은 수준임. 실효성이 '매우 크게 있음'이 20.0%로 매우 크게 나타남.
 - 농림어업인들은 90.8%의 높은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음.
 -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의견이 높음. 3천만 원 미만의 소득자들은 91.0%, 3천만원 이상에서 5천만원 미만은 92.1%, 5천만 원 이상의 소득을 가진 응답자들은 93.3%의 긍정적인 의견을 주었음.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90% 이상의 기대를 보여주고 있음.

-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 판단한 소수 응답자 의견
 - 결국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힘들.
 - 그 동안 정책적으로 진행된 홍보 및 전시 등의 지원이 너무 산발적, 혹은 단기적이었음.
 - 홍보 및 지원에도 불구하고, 6차산업화를 통해 생산되는 상품이 꾸준한 연구 및 개발을 통해 나온 것이 아닐 경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함.

표 5-17. '판매 및 수출지원 장려'가 실효성이 있을 가능성은?

단위: %

	전혀 없음	별로 없음	조금 있음	크게 있음	매우 크게 있음	계
전체응답자	0.8	7.2	46.5	34.6	11.0	100.0
농림어업인	0.9	8.2	45.4	34.7	10.7	100.0
6차산업 경험자	0.8	5.4	39.2	34.6	20.0	100.0
3천만원 미만	1.3	7.6	48.4	35.0	7.6	100.0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1.1	6.9	50.3	30.9	10.9	100.0
5천만원 이상	0.0	6.7	41.8	37.6	13.9	100.0

3.7. 지역컨소시엄 사업단

정부 대책: '지역컨소시엄 사업단'

-> 1차 농산물을 활용하여 6차산업화를 하는 농업인, 제조·가공업체, 체험마을 등이 참여하는 6차산업 협의체를 지원하는 사업

* 공동상표 및 디자인 개발, 공동마케팅, 판매 및 수출, 품질관리 촉진 등을 지원
'14년 : 공모를 통해 5개소 추진예정

- '지역컨소시엄 사업단'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90% 이상의 긍정적인 의견이 있었음.

- 전체응답자 중 93.3%가 지역컨소시엄 사업단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주었음.
 - 6차산업 경험자들은 96.1%로 긍정적인 답변이 가장 높은 수준임. 실효성이 ‘매우 크게 있음’에 19.2%로 나타나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농림어업인들은 92.3%가 본 사업에 대해 긍정적 답변을 주었음.
 - 소득수준별로 상관없이 모든 수준에서 90% 이상의 긍정적 의견을 주었음. 3천만 원 미만의 소득자들은 91.2%, 3천만원 이상에서 5천만원 미만은 94.9%, 5천만 원 이상의 소득을 가진 응답자들은 93.7%의 긍정적인 의견을 주었음.
-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 판단한 소수 응답자 의견
- 공동조직은 지속적 운영에 한계가 있음.
 - 전문가들의 전유물로 전락할 우려가 있음.
 - 지원/관리/홍보 등 지원 사업 운영 시 감독관청의 비전문가적 행정 및 소비자 욕구 충족 해소에 있어서의 어려움이 있음.

표 5-18. ‘지역컨소시엄 사업단’이 실효성이 있을 가능성은?

단위: %

	전혀 없음	별로 없음	조금 있음	크게 있음	매우 크게 있음	계
전체응답자	0.8	6.1	45.5	35.8	11.9	100.0
농림어업인	0.9	6.9	45.7	35.0	11.6	100.0
6차산업 경험자	0.8	3.1	44.6	32.3	19.2	100.0
3천만원 미만	1.3	7.5	43.4	41.5	6.3	100.0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1.1	4.0	46.9	34.9	13.1	100.0
5천만원 이상	0.0	6.3	46.1	31.9	15.7	100.0

4. 6차산업화 추진과 실태에 관한 한일 비교

4.1. 개요

- 한국의 6차산업화 추진 및 실태에 대한 자료는 본 연구에서 조사해서 앞 절에서 정리된 내용을 발췌정리하였음.
- 일본의 6차산업화에 대한 인식 및 실태자료는 일본정책금융공고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였음.
 - 조사대상: 6차산업화·대규모경영을 추진하고 있는 농업인(일본정책금융공고 자금이용자) 2,078명
 - 응답자 수: 1,003명(회수율 48.3%)
 - 조사 시기: 2012년 9월부터 11월
 - 조사결과 보고서: 2012년도 농업의 6차산업화에 관한 조사

4.2. 6차산업화 추진과 실태에 관한 한일 비교

4.2.1. 6차산업화 추진 여부와 목적

가. 6차산업화 추진 여부

- 일본의 경우 설문에 응답한 인원 중 절반 가까이가 되는 45.3%가 6차산업화를 추진 중임.
- 반면, 한국은 4명 중 1명 정도인 24.0%가 6차산업화를 추진함.
- 다만 일본에서 진행된 조사의 경우, 6차산업화 혹은 대규모 농업을 진행하고 있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였음. 중소규모의 농업인을 포함할 경우 격차가 더 많이 벌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표 5-19. 6차산업화 추진 여부에 대한 한일 비교

단위: %

구분	한국(n=459)		일본(n=1,003)	
	6차산업화 추진	6차산업화 미추진	6차산업화 추진	6차산업화 미추진
전체	24.0	76.0	45.3	54.7

나. 6차산업화 추진 목적

- 6차산업화를 추진한 이유를 질문한 결과, 한국과 일본에서 모두 ‘생산·가공·판매의 일원화를 통한 가격 결정권 확보’를 가장 큰 이유로 생각하고 있음.
-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6차산업화를 추진하였다는 의견이 한국이 일본보다 조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일본의 경우 ‘규격외품 및 재고 처리’를 이유라고 밝힌 경우가 39.5%로 높은 데 반해 한국은 12.0%임.
- 한국의 경우 ‘농한기 등의 인재활용’을 위해 추진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이

20.3%로 일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 5-20. 6차산업화 추진 이유에 대한 한일 비교

단위: %

추진 이유	비율	
	한국(n=113)	일본(n=549)
생산·가공·판매의 일원화를 통한 가격결정권의 확보를 위해	76.7	68.9
규격외품 및 재고의 처리를 위해	12.0	39.5
고용증가 등을 통한 지역 활성화에 공헌하기 위해	30.1	25.7
유통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22.6	24.2
농한기 등의 인재활용을 위해	20.3	13.3
유리한 조건으로 용자 및 보조금을 받기 위해	3.0	7.7
후계자의 경영참가 등에 의해 노동력에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2.3	6.6
기타	12.0	12.9

주: 복수응답

4.2.2. 6차산업화 추진 유형과 차별화 전략

가. 6차산업화 추진 유형 비교

- 6차산업화 추진 형태를 살펴보면, 한국의 경우 ‘농산물 가공(78.2%)’을 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으며, ‘농촌 관광(44.4%)’은 일본보다 높은 수준이고, 직접 판매는 일본보다 낮은 수준임.
- 일본의 경우는 농산물 가공, 직접 판매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주류를 이루고 있음. 농촌관광은 한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농가레스토랑은 한국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표 5-21. 6차산업화 추진 형태의 한일비교

단위: %

추진 형태	비율	
	한국(n=133)	일본(n=549)
직접 판매	47.4	68.7
농산물 가공	78.2	67.6
농가 레스토랑	2.3	16.6
농촌 관광	44.4	12.2
농가 민박	9.8	2.6
기타	0.8	4.6

주: 복수응답

나. 차별화와 브랜드화

- 6차산업화 추진 시, 상품의 차별화 및 브랜드화를 추진한 비율은 한국이 85.7%, 일본이 89.8%로 일본이 약간 높지만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

표 5-22. 상품의 차별화·브랜드화 추진 여부 한일비교

단위: 개, %

구분	한국(n=133)		일본(n=549)	
	6차산업화 추진	6차산업화 미추진	6차산업화 추진	6차산업화 미추진
전체	85.7	14.3	89.8	10.2

- 상품의 차별화 및 브랜드화 추진 시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항에 대해 가장 크게 중시하는 부분이 한국 55.6%, 일본 85.8%로 모두 ‘산지나 생산자를 어필하는 제품 제조’라고 응답하였음.
- 이는 양국 모두 지역산물을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높음을 알 수 있음. 특히, 일본은 한국에 비해 이러한 것에 대한 의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

타났음.

-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난 부분은 양국 모두 ‘유기재배, 생산이력제 등 안전, 안심면에서의 대응’이었음. 한국은 41.4%, 일본은 51.7%로 나타나 일본이 이에 대해 조금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음.
- 한국의 경우, ‘새벽 수확, 산지 직송 등 신선도를 강조’한 경우가 33.8%가 비교적 높게 나타나 일본의 24.3% 보다도 높게 나타났음.

표 5-23. 상품의 차별화·브랜드화 추진상의 중시 사항 한일비교

단위: %

중시 사항	비율	
	한국(n=133)	일본(n=549)
산지나 생산자를 어필하는 제품 제조	55.6	85.8
유기재배·생산이력제 등 안전·안심면에서의 대응	41.4	51.7
상품명·디자인을 중시한 이미지 창조	31.6	37.5
새벽 수확, 산지 직송 등 신선도 강화	33.8	24.3
광고 등을 통한 상품 가치 전달	14.3	20.7
경쟁상대 보다 값싼 제품 제조	5.3	12.4
수요와 공급 조절을 통한 판매 조정	12.8	4.1
기타	6	8.9

주: 복수응답

4.2.3. 6차산업화 추진 시 수익향상 노력

가. 수익향상 시 중점 사항

- 수익향상을 위해 주로 추진한 사항의 경우, 한국과 일본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양국 모두 판매확대와 차별화 및

브랜드화를 중시하고 있음.

- 수익향상을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에 있어 한국은 ‘판로 개척 등을 통한 판매수량의 증가’가 64.7%로 가장 높은 반면에, 일본은 ‘차별화·브랜드화 등을 통한 판매 단가 인상’이 77.6%로 나타났음.
- 두 번째로 중시하는 부분의 경우, 한국은 ‘차별화·브랜드화 등을 통한 판매 단가 인상’이 60.2%, 일본은 ‘판로 개척 등을 통한 판매수량의 증가’가 71.4%로 나타났음.
- 양국의 1위와 2위의 순위만 바뀌었을 뿐 중요도에서는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음.

표 5-24. 수익향상시 중점사항 한일 비교

단위: %

중점 추진 사항	비율	
	한국(n=133)	일본(n=549)
차별화·브랜드화 등을 통한 판매 단가 인상	60.2	77.6
판로 개척 등을 통한 판매수량의 증가	64.7	71.4
설비의 가동률 향상 등을 통한 제조 비용 감소	16.5	22.4
파트타임 활용 등을 통한 인건비 절약	11.3	17.5
외부로부터의 원재료 조달 비용의 절약	13.5	10.9
기타	8.3	2.4

주: 복수응답

나. 판매량 증가 노력

- 판매량 증가를 위하여 한국과 일본 모두 ‘새로운 판로 개척’을 주로 추진하였음. 아울러 ‘인터넷 판매’를 활용한 경우와 ‘기존 고객에 대한 영업 강화’에 초점을 둔 경우는 상대적으로 한국에 많았음.
 - 양국 모두 ‘새로운 판로의 개척’을 가장 중요시 하였는데, 한국은 60.9%, 일본은 66.6%의 지지를 받음.

- 한국은 인터넷을 활용한 판매에 대해 중점을 두겠다는 의견이 48.9%로 2위를 차지함. 반면에 일본은 24.5%로 5위에 그치고 있음.
- 한국은 기존 고객에 대해 영업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39.8%로 3위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일본은 13.3%로 6위로 나타나 기존 고객에 대한 공략이라는 차원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일본의 경우 새로운 판로 개척 다음으로 두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신상품 및 신규 작물 등 물품 구비 강화'로 36.5%를 차지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28.6%로 4위를 기록하고 있음. 따라서 일본은 판로 개척을 위해 신상품 개발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한국은 현 제품에 대한 판매에 좀 더 역량을 집중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 신상품 및 신규작물의 필요성에 대한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중장기적 차원의 대비책에 대한 고민이 더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표 5-25. 판매 수량 증가를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사항의 한일비교

단위: %

중점 추진 사항	비율	
	한국(n=133)	일본(n=402)
새로운 판로의 개척	60.9	66.6
신상품 및 신규 작물 등 물품 구비 강화	28.6	36.5
박람회 등 참가	21.8	31.4
시음회 등 이벤트를 통한 판매 촉진	21.8	28.6
인터넷 판매 활용	48.9	24.5
기존 고객에의 영업 강화	39.8	13.3
규격 외 상품 판매	8.3	13.0
세일 등 판매 가격의 인하	3.0	4.6
대용량 패키지 상품의 개발	4.5	2.8
기타	3	3.1

주: 복수응답

다. 6차산업화를 통한 수익향상 노력 시 부족한 점

- 6차산업화를 추진함에 있어 부족함을 느낀 분야의 경우, ‘영업 및 판로 개척’ 부문에 대하여 양국 모두 가장 부족함을 느꼈으며, 한국의 경우 특히 ‘재무·회계·세무’에 대한 부족함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영업 및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느끼는 점에서 있어 한국은 66.9%, 일본은 59.9%로 나타나 한국이 이에 대해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됨.
 - 재무와 회계, 세무에 대한 어려움도 한국은 33.8%, 일본은 13.3%로 나타나 한국이 일본보다 회계적인 부분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두 번째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양국 모두 가공분야를 선택하였음.
 - 가공분야의 어려움에 대해서 한국은 33.8%로 재무, 회계, 세무 부분과 동률로 2위를 기록하였으며, 일본은 35.0%로 단독 2위를 나타내었음. 양국 모두 가공분야에서 기술, 안전성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표 5-26. 6차산업화 추진에 있어 부족함을 느낀 전문 분야 한일 비교

단위: %

분야	비율	
	한국(n=133)	일본(n=549)
영업·판로 개척	66.9	59.9
가공	33.8	35.0
조직의 관리·운영	19.5	27.7
농산물 생산	16.5	19.7
가게 앞接客·판매	20.3	18.8
재무·회계·세무	33.8	13.3
없음	0.8	9.3
기타	3.8	4.6

주: 복수응답

4.2.4. 해외진출 노력

가. 해외진출 여부

- 해외에 진출 중인 경우는 일본이 조금 더 많았으나, 진출 의향 및 계획을 가진 경우는 한국에 더 많음.
- 일본의 경우 해외진출에 대해 현재 하고 있지 않지만 미래에도 할 의향이 없다는 의견이 60.9%로 한국의 36.4%보다 월등히 높아 국내시장을 중시하는 경향이 매우 강함을 알 수 있음.

표 5-27. 해외 진출 여부 및 진행 상황에 대한 한일 비교

단위: %

진행 상황	비율	
	한국(n=132)	일본(n=944)
현재 미 시행, 향후 시행 의향 없음	36.4	60.9
현재 미 시행, 향후 시행 의향 있음	28.8	22.0
현재 미 시행, 향후 시행 계획 있음	25.0	3.2
과거에 시행, 현재는 미 시행	2.3	3.6
현재 시행 중	7.6	10.3

나. 해외진출을 하지 않는 이유

- 해외 진출을 추진하지 않는 이유로는, 일본과 한국 모두 ‘국내 생산 및 판매’가 우선하기 때문이라고 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한국의 경우 ‘해외 진출을 위한 인재 부족’, ‘채산성에 맞는 주문량 확보 불가’, ‘해외 진출을 위한 자금 부족’ 등을 꼽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음.

표 5-28. 해외 진출을 추진하지 않는 이유

단위: %

미추진 이유	비율	
	한국(n=133)	일본(n=847)
국내생산·판매가 우선	45.1	76.7
무역회사나 해외 바이어와의 접점이 없음	26.3	17.4
현지(해외)의 판매처의 신용력이 불안	4.5	12.9
해외전개(수출 등)에 대한 인재 부족	40.6	10.5
채산성에 맞는 생산(주문량)의 확보 불가	24.8	10.4
외국어 대응 불가	11.3	10.2
해외전개(수출 등)에 관한 절차가 복잡	15.0	7.6
해외전개(수출 등)에 관한 자금이 부족	21.8	5.1
환율이나 현지(해외)의 경제동향에 좌우됨	5.3	4.4
원전사고에 따른 규제 강화, 평가 하락	0	3.0
기타	3.8	8.5

주: 복수응답

다. 해외진출 시 과제

- 해외 진출 시 향후 과제에 대한 양국 농업인들의 인식은 차이를 보였는데, 우선 한국의 경우 ‘해외 마케팅’, ‘해외의 식품안전규제 및 판매규제’ 등을 주요 과제로 꼽음. 일본의 농업인의 경우 ‘수출 규제 및 검역 제도’의 개선을 첫 째로 꼽고 있음.

표 5-29. 해외 진출 시 향후 과제에 대한 한일비교

단위: %

향후 과제	비율	
	한국(n=133)	일본(n=335)
수출규제·검역제도	18.8	40.7
무역실무문제 (수출·검역·통관절차 등)	39.8	40.7
물류문제(로트·진열·지속적 출하처 확보, 품질·신선도 유지 등)	32.3	25.9
현지(해외)의 식품안전규제·판매규제 (라벨, 표시, 포장 등)	31.6	23.8
현지(해외)의 마케팅(식품 기호 차이, 경합품과의 차별화, 판매촉진활동)	44.4	22.4
현지(해외)의 상업 관습 (매장 임대료 부담, 채권회수, 지적재산보호 등)	16.5	20.1
외국어	17.3	17.2
환율리스크, 현지(해외)의 경기동향	10.5	11.6
원전사고에 따른 규제강화, 평가하락	0	7.6
기타	6.0	4.7

주: 복수응답

5. 시사점

5.1. 인식조사를 통해서 본 6차산업화

- 6차산업화에 대한 인지도는 매우 높음. 농업인들은 6차산업이 소득증대 효과가 있으며, 6차산업화를 통해 가격결정권을 가지고 싶어 함. 판로확대에 가장 노력을 하고 있으나, 판매와 마케팅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해 큰 애로를

겪고 있음.

- 농업인들의 가격 결정권 증대와 판매 확대를 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함.
 - 농업인들은 소득증대를 위해 판로확대에 치중해 왔으나 이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 바 이에 대해 지원할 필요가 있음.
 - 현장성을 강조한 판로확로 확대와 마케팅 노하우를 전해 줄 수 있는 마케팅 지원단 등의 지원을 통해 판매 애로를 해결해 줄 필요가 있음.
- 정부의 6차산업화 대책에 대해서 대부분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그중 ‘지역컨소시엄 사업단’, ‘판매 및 수출지원 방안’, ‘농촌산업 집적화지구’, ‘중간지원조직 지정사업’에 대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음.
- 모태펀드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의견이 적게 나타났음. 따라서 모태펀드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고, 투자자들이 적극적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펀드 운영자들의 노력도 필요해 보임.

표 5-30. 6차산업화 대책에 대한 의견

구분 사업 구분	실효성 여부						
	1.전혀 없음	2.별로 없음	3.조금 있음	4.크게 있음	5.매우 크게 있음	긍정 (3+4+5)	매우 긍정 (4+5)
6차산업화 창업자금 지원사업	1.7	15.7	43.7	29.5	9.4	82.7	38.9
6차산업화 사업자 인증 제도	1.5	10.6	51.0	28.6	8.4	87.9	36.9
중간지원조직 지정사업	1.5	10.6	43.9	33.9	10.2	88.0	44.1
농촌산업집적화지구	0.8	8.8	47.1	34.5	9.0	90.5	43.4
모태펀드	2.5	13.1	53.0	24.8	6.7	84.4	31.4
판매 및 수출지원 방안	0.8	7.2	46.5	34.6	11.0	92.1	45.6
지역컨소시엄사업단	0.8	6.1	45.5	35.8	11.9	93.2	47.7

- 진정성 있는 중간지원 조직 육성 중요
 - 정부 대책에서도 중간지원조직을 육성하겠다고 하였음. 그러나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진정성 있고, 농업인들의 애로를 해결해 주고, 민관의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함.
 - 중간지원조직이 제대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존 조직에 옥상옥의 역할을 하는 조직이 되어서는 안되며,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을 때는 인센티브를 주고, 그 반대의 경우는 과감한 페널티를 줌으로써 실효성 있는 조직으로 육성해야 함.

- 일부 그룹에게만 지원된다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정책이 되어야 6차산업화에 대한 정부정책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음.
 - 부정적인 의견을 내는 농업인들의 경우, 일부 그룹에게만 지원되는 경우가 많아서, 6차산업을 진정성 있게 추진하고자 하는 농업인들의 참여가 어려울까 염려를 하고 있음.
 - 능력있는 경영체, 규모화된 경영체, 정부사업에 밝은 일부 사람들, 컨설팅업체, 전문가 그룹 등에게만 집중되는 사업이 될까 우려를 많이 하고 있음.
 - 또한 6차산업화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음. 홍보용에 그치지 않고, 단발성의 사업이 아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농업농촌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밑알이 될 수 있는 정책으로 만들어 가야 함.

5.2. 한일 비교를 통해서 본 6차산업화 적용의 차이

- 6차산업화는 일본이 한국보다 먼저 정책화하였기 때문에 현장에서 6차산업

화 추진 경험도 일본이 한국보다 높게 나타났음.

- 6차산업화를 하는 이유에 있어서는 양국 모두 ‘생산·가공·판매의 일원화를 통한 가격 결정권 확보’로 하고 있어, 양국의 농업인들이 농산물 가격에 대한 불안정에 대한 걱정이 나타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6차산업화를 도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6차산업화 추진 형태에서 양국 모두 가공분야를 중심으로 6차산업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국은 농촌관광과의 연계가 강하고, 일본은 농가레스토랑과의 연계가 강한 면을 볼 수 있었음.
- 상품의 판매 수량 확대를 위해 한국은 현재시장 공략을 위한 판매촉진 전략이 우선시 되고 있는 반면에, 일본은 신제품과 신작물까지 염두해 두면서 좀 더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전략을 수립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음.
- 해외진출에 있어서는 양국의 상황이 많이 다름. 한국은 향후 해외진출을 할 의향이 높은 반면에 일본은 해외진출을 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높아 국내시장 지향적인 면이 강함을 알 수 있었음.

제 6 장

농촌산업 활성화를 위한 6차산업 발전 전략

1. 기본방향

- 광역시도단위와 시군단위의 6차산업화와 농촌산업 활성화를 위한 자체 계획 수립
- 농업에 기반한 6차산업화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
- 지역의 고유한 자원을 활용한 생산(농)-가공(공)-유통·판매(상)의 효율적 협력과 융복합을 통한 농촌산업 활성화
- 중앙부처간 협력 강화와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협력 시스템 구축
- 지역 내 협력시스템 구축을 통한 상생협력 시스템 구축

2. 정책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사항

2.1. 광역시도 자치단체와 시군 자치단체의 농촌산업육성계획 수립

2.1.1. 기본 방향

- 시도단위와 시군단위의 농촌산업육성계획 수립
- 사업들간 공간단위 위계를 설정하여 시너지 발휘
- 지역단위의 책임있는 농촌산업정책 추진

2.1.2. 추진 방안

- 현재 지자체 수준에서 농촌산업 육성을 위한 계획 수립 없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정책적 효과가 반감되고 있음.
- 따라서, 광역시·도지사와 시장 혹은 군수는 해당 지역 여건에 맞게 농촌산업육성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계획 수립 시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 마을단위, 시군단위, 시도단위의 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간적 차별성을 갖도록 하여야 함. 그래야 정책시행의 공간적 차별화가 부족에 따른 혼선을 막을 수 있음.

- 지자체 자체사업, 포괄보조사업, 향토산업육성사업,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시군연계협력사업 등 사업 간 위계 확립이 중요함.
 - 낮은 단계(마을단위)의 사업부터 군 단위 사업, 도 단위로 추진할 사업내용들을 구분할 필요가 있음.
 - 단계적 성장론에 바탕으로 한다면 이상적임. 즉 마을단위 사업이 성공한 후 시군단위 사업으로 발전하고, 이를 통해 하드웨어와 역량이 강화되고 시도차원에서 연관산업과 연계하여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시도사업으로 확대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본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포함시켜야 함.
- 지역의 자원 현황
 - 지역의 6차산업 및 농촌산업 현황과 전망
 - 지역의 6차산업화와 농촌산업 육성목표 및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 지역내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 지역내 중간지원조직 구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지역의 6차산업화와 농촌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

2.2. 중간지원조직 활성화

2.2.1. 기본 방향

- 현장에서 문제를 찾고
-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며
- 내부와 외부로 네트워크화 하여 현장을 찾아가는 조직

- 지자체 자율로 선정

2.2.2. 국내 중간지원조직 사례

가. 농촌활성화지원센터: 농림축산식품부

- 주요 업무: 마을 공동체 역량 강화, 주민주도 발전을 지원 활동 수행
 - 정책지원: 마을·권역·지역단위 신규 사업이나 정책·제도 건의
 - 지역인적자원 육성·관리: 현장 활동가·마을리더 교육, 민간전문가 육성
 - 현장포럼 지원: 마을자원분석·주민역량평가 지원, 관련 전문가 및 퍼실리테이터 지원
 - 정보교류: 마을 발전 관련 정보, 우수사례 등을 수집·배포
 - 조사 및 연구: 마을 활력화를 위한 연구과제 발굴, 조사 등 수행
 - 네트워크 구축: 민간기관, 관계 전문가, 마을리더 및 행정기관 등 관련기관·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및 유지
- ‘13년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선정(‘13.3.27)
 - 9개도 13개 대학을 신청받아 최종 각 도 1개소(총 9개소) 선정

표 6-1.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선정대학

도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대학	협성대	강원대	충북대	공주대	전북대	목포대	경북대	경상대	제주대

나. 충남발전연구원 농어업6차산업화센터

○ 주요 업무

- 충남 농어업 6차산업화의 계몽 및 확산·보급 활동
- 충남 농어업 6차산업화 경영체 모니터링 및 컨설팅 지원 활동
- 충남 지역순환농식품체계(로컬푸드) 구축 및 지원 활동
- 농어업 6차산업화의 모델 개발 연구 활동

○ 조직 및 구성

- 센터장 외 5명

다. 전라북도 마을만들기 협력센터(도단위)

○ 일반현황

- 설치근거: 전북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 운영방식/위탁기관: 위탁운영, (사)지역활력센터

○ 조직 및 구성

- 총원: 12명(센터장, 총괄국장, 실장, 팀장 조사원 등)
- 3개 운영분과, 1개 운영위원회, 2개 단위조직

○ 주요사업

- 향토산업마을 사업추진 컨설팅 및 모니터링
- 마을리더 등 역량강화 교육사업
- 홍보 및 마케팅 지원
-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협력사업 등

라. 진안군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군단위)

- 주민들이 만든 마을개발계획서를 검토하여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유사

정책사업을 해당 마을에 유치하도록 지원

- 소규모 사업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우수마을로 평가받은 마을에 더 큰 규모의 사업을 지원
 - 그린빌리지 → 참살기좋은마을가꾸기 → 으뜸마을가꾸기 → 국·도비사업
- 마을만들기지구협의회를 구성하여 정보교류 및 공동사업 추진
- 외부조직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백운면 Art in City 사업 성공
 - 진안 백운 마을조사단과 함께 시민문화네트워크 티팟, 전주대학교 도시환경미술연구소 등이 간판정비 등 디자인 프로젝트 공동 진행
- 귀농귀촌인을 마을간사로 활용, 외부 네트워킹·홍보 등 담당
- 다양한 민간단체 활동을 지원하여 역량 강화를 유도, 종국에는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설립('12.12)하여 마을만들기 핵심 역할

마. 완주군 읍면별 지역경제순환센터(읍단위)

- 군의 정책을 현장에서 주민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활동을 추진하며, 현장의 필요를 정책에 피드백
 - 마을회사육성센터,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로컬푸드센터, 도농순환센터, 공감문화센터 등 5개 지원조직으로 구성
- 읍면별로 구성된 지역발전위원회에 지역경제순환센터 직원이 간사, 분야별 외부전문가(12명)가 책임마스터로 협력·지원
- 마을공동체회사 육성을 위한 단계별 사업지원 체계 구축

- 맛있는 마을 → 멋있는 마을 → 참 살기좋은 마을 → 파워빌리지 → 마을 회사

-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 등을 위한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육성에 관한 조례 등 3건의 조례 제정

바. 홍성군 홍동면 지역밀착형 중간지원조직(면단위)

- 홍동면에는 농업 및 가공, 농촌관광, 교육, 문화, 공동체, 에너지 등 36개 단체가 활동 중
- 지역밀착형 중간지원조직으로서 대내외 파크너십 형성, 민관 거버넌스 구축, 정보 공유 및 지역인재 육성, 자주적 협동경제의 활동양식 발굴 및 확장 등 담당
- 귀농·귀촌자에 대한 지원협력체계가 잘 갖춰져 귀농·귀촌자가 마을총무, 사무장 등으로 활발히 마을만들기 참여

2.2.3. 추진 방안

가. 필요성

- 신뢰성 있는 중간지원조직은 6차산업화와 농촌산업 발전에 중요한 사항임.
 - 6차산업화를 하거나 농촌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중간지원조직이나 지역의 활동가의 육성과 지원이 매우 중요
 - 지금까지 많은 자금이 농촌지역에 투자되었으나 잔뿌리를 내리게 하고, 지역에 착근 되도록 하는 데에는 미흡
 - 지역화하고 지역의 자본이 축적되도록 할 수 있는 매개체가 없었기 때문
 - 따라서, 향후 6차산업화가 지역에 착근되고 지역에 뿌리내려 지역활성화

에 도움이 되고 진정한 지역순환경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간지원조직이 반드시 필요

- 중간지원조직은 6차산업화와 농공상 협력을 통한 농촌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로 협력함에 있어 소통의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음.
 - 농업기술센터, NGO, 대학, 연구소, 기업 등 법인을 중심으로 신뢰를 구축하고 있거나, 신뢰 구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직체 육성이 필요
 - 이를 위해서는 농업인과 상공업인 간 융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자원조사, 교류회, 코디네이팅, 융합형 기업 조사연구 등을 지원하며, 산업간 융합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 조직 육성이 필요

나. 형태

-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민관 협력형 중간지원조직
 - 향후 관련 중간지원조직(예, 농촌활성화지원센터)와 통합하는 형태가 바람직 함.

다. 역할

- 중재자이자 촉진자로서의 역할
 - 지역 내: 민관의 연결자, 민민간의 중재자
 - 지역 외: 지역과 지역간 가교, 지역과 중앙간의 가교
 - 사업 추진에 필요한 역량을 결집시키는 촉진자
- 사업 추진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코디네이터
 - 인력, 자금, 정보, 교육, 자원조사 등에 대한 상담 및 지원
- 6차산업화 추진 과정상에 필요한 현장 중심 지원 수행
 - 주관기관(주도적 역할을 하는 기관): 관련 지원기능 수행조직 간의 협력 체계 구축 및 전문가 관리·파견 등 총괄경영·기획 담당

- 연구·기획: 해당 농촌지역의 자원을 조사하고, 이를 통해 적절한 6차산업화 모델 개발·적용, 필요한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등
- 기술지도: 생산-제조·가공-판매·유통·체험 등 6차산업화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관련 기술의 지도·보급, 현장 농업인 교육 등 지원
- 판로·유통: 6차산업화로 생산된 제품 및 서비스의 판로확보 및 유통망 확충, 홍보 등 지원
- 사업화 지원: 6차산업화 희망 경영체에 대한 창업 컨설팅 및 사업추진현황 및 경영실태에 대한 관리를 통한 실질적인 사업화 지원
- 기타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기능을 부여

라. 지녀야 할 주요 요소

- 지역을 기반으로 한 지역적 정체성
- 지속가능성
- 지역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진정성과 공동체성
- 비정치성
- 독립성과 전문성

마. 중간지원조직 지정시 유의사항

-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협의를 통해 지역에서 가장 활발히 활동하고, 진정성이 있는 주체 지정
- 특정 단체, 중앙정부 혹은 지자체 조직을 일방적으로 정할 경우 사조직화와 관료화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중앙정부의 장, 지자체장, 지자체 의회 등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함.
- 홍보와 캠페인성이 아닌 지역의 어려움을 느리더라도 진정성 있게 해결하려는 자세를 지닌 조직 필요

2.3. 지역 내 6차산업화와 농촌산업 발전을 위한 농촌산업발전협의회 구성

2.3.1. 기본 방향

- 정보 소통과 학습그룹화
- 민민간, 민관간, 민관정간 갈등 해소를 위한 소통체
- 중앙단위와 지자체단위의 관련 사업들의 지역 내 시행 시 기능조정

2.3.2. 사례

- 마을단위
 - 마을공동체를 중심으로 마을소득사업과 공동체 문제해결 등을 위해 구성원간 연대

(사례) 경기 양평군의 「농촌나들이」는 해당 지역의 농촌체험마을간 연대를 통해 농촌체험마을육성,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체험진행 등을 지원

- 시·군단위
 - 시·군단위의 품목별 연구회가 주축이 되어 농업인, 생산자단체, 가공 및 유통업체, 행정기관과의 연대를 통해 네트워크형 6차산업화 추진

(사례) 강원 인제군의 「하늘내린인제 로컬푸드사업단」은 해당 지역의 농촌·생태관광, 도농교류사업을 하는 마을의 대표, 인제군 공무원, 해설사 등이 사업단을 만들어 인제 홍보, 인제관광상품 시범 운영, 체험관광 상품 개발 수행

(사례) 파주 장단콩연구회를 중심으로 지역농협, 농업기술센터, 파주시, 외식업체(과내외 식당), 가공업체 등이 상호 연계·협력하여 안정적인 생산 기반 및 유통기반 확보

* 장단콩 연구회는 장단콩을 생산하는 농가들이 회원으로 참여한 조직으로써 재배기술 향상, 가격결정 및 축제운영 등을 추진함

○ 시·도단위

- 6차산업화 자문 및 지원에 대한 전주기적 연계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통합적 광역단위 연대

(사례) 충청남도 6차산업협의회('13.12월) 설립

- 충남도내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향토산업육성사업 등 지원을 받은 농기업체가 참여
- 공동 사업내용 : 참여기업체가 생산한 제품 공동판매 및 홍보, 국내외 시장개척, 참여주체 역량강화 등

2.3.3. 추진 방안

가. 역할

- 시군, 시도단위 농촌산업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학습그룹화를 통한 소통체
 - 지역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 할 수 있는 역량 강화와 정보교환

및 네트워크 구축

- 농어촌산업과 관련하여 단일 시·군 지역에 다수의 정부사업을 유치하게 될 경우, 자동적으로 “농어촌산업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투자내용 조정을 통해 중복투자 방지와 시너지 효과 발휘하도록 유도
 - 정부사업의 특장단점을 고려하여 시너지 효과 발휘하도록 투자내용 조정
-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을 모색하고, 지역 네트워크형 6차산업화와 농촌산업화 촉진

나. 구성

- 지역의 농업인, 마을공동체, 생산자단체, 법인, 도 담당자, 지자체 담당자, 외부 전문가 등의 다양한 주체로 구성

2.4. 6차산업화와 농촌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 마련: 농촌산업집적화지구(6차산업집적화지구)

2.4.1. 기본 방향

- 네트워크형 클러스터
- 소프트웨어 사업이 중심이 되는 지구
- 기존에 투자된 하드웨어적인 자원의 충분한 활용

2.4.2. 필요성

- 6차산업화와 농촌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농촌산업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해야 하며, 국가는 농촌에 소재한 농촌산업 사업자의 창업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자 등이 추진하는 농촌산업에도 지원해야 함.
- 6차산업화와 농촌산업을 클러스터화 시킴으로써 역량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집적화지구는 농촌산업의 지역거점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임.
 - 지역적 특성, 역사적 배경, 경제적 효율성 등의 요인으로 인해 농촌산업 중 특정한 분야가 자연스럽게 집중화되어 있는 지역이나 농공단지 등 산업단지의 조성을 통해 인위적으로 특화된 지역이나 미래에 특정한 농촌산업 분야를 집중적으로 집적화하고 네트워크하고자 하는 지역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음.
- 농촌지역내 농촌산업화에 대한 거점으로 육성함으로써 농촌산업자본과 사회적 자본의 축적이 이루어지고, 대외경쟁력 향상을 통해 농촌산업의 보호와 발전의 핵심주체로서 성장할 수 있음.
- 그리고, 특화품목의 특성에 따라 하나의 지자체만이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지자체와 연계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 연계되어 있을 경우에는 타 지자체와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4.3. 추진 방안

가. 성격

- 집적화 지구는 기존의 산업단지 등과 같은 계획입지 형태의 지구와 비교할 때 저비용 고효율의 집적화 단지가 될 수 있음. 본 집적화지구는 자연발생적으로 집적화 된 곳과 기존의 농공단지 혹은 특구 등과 연계하여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지구의 형태이기 때문에 신규투자라기 보다, 기존 투자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예산투자의 성격이 강함.

나. 역할

- 특정 품목을 중심으로 관련 산업이 집적화된 지역을 집적화 지구로 지정, 생산-제조-가공-관광·서비스가 지구 내에서 통합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농촌산업과 6차산업화 고도화 필요
 - 투자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기존 하드웨어적인 투자의 실태를 면밀히 검토하여 중복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것임. 하드웨어 부분에서는 신규투자가 필요한 부분과 리모델링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하여 투자의 효과를 극대화 할 것임.
 - 6차산업화는 식품가공과 농촌관광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음. 최근 식품위생법 강화에 따라 소규모 농산물 가공을 위해서 막대한 시설투자 비용이 필요함. 시설현대화를 추진하지 않을 경우, 음성적인 생산이 확대될 우려가 많아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따라서 지구 지정이 이루어지는 곳에는 하드웨어적인 시설현대화를 위한 지원과 경영컨설팅,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소프트웨어적인 투자를 강화에 역량 강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음. 지역협력체계와 역량 강화가 이루어져야 만 기존의 투자가 이루어진 곳과 신규로 지정되는 많은 지구들의 지속가능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음.

다. 지구지정 범위

- 읍·면, 시·군 또는 시·군 연계

라. 지원대상

- 생산기반 정비, 공동시설(제조·가공 공장, 판매장 등) 설치 및 운영지원
- 공동브랜드 개발, 공동 마케팅·홍보, 판로 확대에 대한 지원
- 공동연구개발 및 품질관리에 대한 지원
- 참여주체의 역량 강화, 참여자 교육, 코디네이터 양성, 협의체 구성 등에 대한 지원

마. 유형

<가능지역>

- 순창 장류, 영광 보리, 하동 매실, 하동&보성 녹차, 고창 복분자
- 강릉 한과, 서천 소곡주, 이천 쌀&쌀가공, 서산 마늘
- 안동 소주, 병천 순대, 봉평 메밀
- 영동 포도, 상주 꽃감, 청도 반시, 제주 감귤 등

- 산업단지 연계형 집적화 지구
 - 특정품목을 집중 산업화 하는 특화농공단지가 인근 지역의 해당품목을 집중 생산하고 있는 지역과 연계하여 집적화 지구로 확대 지정(예, 고창 복분자 등)
- 전통 특화품목 집적화 지구
 - 전통적으로 일정한 지역을 범위로 하여 특산품을 중심으로 관련 산업이 자생적으로 집적화가 이뤄진 지역(예, 논산 강경 젓갈단지/문경오미자 등)

○ 재배단지형 집적화 지구

- 산과 밭, 과수원 등이 큰 규모로 집적화되어 있고, 주변 자연경관이 뛰어나 농촌관광과도 연계가 가능한 지역으로써 6차산업화가 가능한 지역 (예, 사과·배, 고랭지 배추 등의 주산지)

○ 지역특화발전특구 연계형 집적화 지구

- 지역특화발전특구는 규제완화 중심 특구임. 그러나 실제적인 규제완화가 부족한 상태임.
-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이미 지정이 된 지역. 이들 지역 중 집적화가 되어 있어 규제완화 외에 다른 수단을 통해 활성화가 가능한 경우 필요한 지원 강구
- 현재 갖추고 있는 시설 등 하드웨어적인 사항을 체크하고, 노후된 시설 현대화, 경영역량 강화 등의 지원을 통해 활성화 모색

○ 지자체간 연계형 집적화 지구

- 특정 품목이 인근 지역에 광범위하게 집적화되어 있어 지자체간 연계를 통해 규모화, 집중화, 특화가 가능한 지역을 집적화 지구로 지정함으로써 지자체간 협력을 통해 발전 모색
- 지자체간 역할을 분담하거나 연계하여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조정. 생산기반, 가공, 유통과 판매, 농촌관광 등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지자체간 협력체계를 구축
- 현재 갖추고 있는 시설 등 하드웨어적인 사항들을 지자체별로 체크하여 보완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연계협력이 중요한 만큼 협의체를 구성하여 협력거버넌스를 구축하도록 하며, 또한 중재하고 촉진시킬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도 지원

3. 비즈니스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사항

- 6차산업화와 농촌산업 활성화는 기본적으로 상품을 기획하여 개발하고, 품질 좋은 상품을 만들고, 이를 마케팅을 통한 판매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음.
- 지역적 관점에서 보면 지역내에서 자원을 저렴하게 생산해서 제공 하고, 그 가공품을 지역 외에 높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어야 함.
- 따라서, 6차산업화와 농촌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품 개발, 생산, 마케팅, 경영 자원 확보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3.1. 상품개발

- 첫번째 중요한 사항은 "상품 개발"임.
 -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이 발굴한 우수사례 95개 중 6차산업화를 위해 농산물 가공을 하는 곳이 65.3%에 달함.
 - 일본 정책금융공고의 조사에서도 6차산업화 사업의 약 80%가 농산물 가공을 실시하고 있음.
 - 이처럼 가공식품의 개발을 실시하는 경우, "팔리는 상품"을 개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님. 전문 식품 제조자에 의해 매일 새로운 상품이 출시되고 슈퍼마켓, 대형유통업체, 편의점 등의 매장에 수많은 상품이 줄지어 있는 가운데, 기존 상품과의 차별화를 도모하여 소비자에게 매력적인 상품을 내놓기가 쉽지 않음.

- 따라서, 상품개발에 필요한 연구개발, 소비자 분석, 상품의 전략적 선택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
 - 6차산업화와 농촌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기술의 연구개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대학, 민간단체 및 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여 6차산업화와 농촌산업 발전에 필요한 연구개발 사업을 지원함.

3.2. 상품 생산

- 다음은 개발한 상품을 안정된 품질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생산 및 공급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과제임. 특히 6차산업화에 관해서는 상품이 대부분 식품이 되기 때문에, 식품위생 리스크 관리 등의 식품안전 측면에서 협력과 지원이 필요함.
- 농촌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연구개발의 발전이 필수적임. 농산물 가공을 위한 식품안전연구, 전문 품종개발이나 기능성 확보를 위한 원천기술 연구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가 필요함.
 - 따라서 상품생산과 관련된 R&D의 전략적인 지원정책 추진이 되고, 연구 성과를 촉진하기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하게 할 수 있게 하고, 또한 개발된 연구 성과의 이용·보급 및 관련 산업과의 연계를 촉진할 필요가 있음.
- 생산설비의 현대화 촉진과 이를 위한 지원책 마련이 뒤따라야 함.
- 상품생산과 관련된 전문가 등을 상시적으로 파견하여 현장애로를 해결해주고 상품의 질을 높이는데 지원할 필요가 있음.

3.3. 마케팅

- 가장 중요한 것이 "판매"임.
 - 즉 첫째, 상품의 가치를 인정하고, 구입 해주는 소비자를 타겟으로 정하고, 둘째, 상품의 가치에 맞는 가격을 설정하고, 셋째, 대상 상품의 판로를 개척하고, 넷째, 상품의 가치를 전하는 광고 홍보 등을 수행 할 필요가 있음.

- 여기서 마케팅 문제가 대두됨. 농업인 등을 사업 주체로 하는 6차산업화의 경우 마케팅과 판로가 가장 큰 장애물임.
 - 일부 농업인을 제외하고 많은 농업인에게 판매는 매우 어려운 부분임. 농업인에게는 생산물을 어떤 소비자가 구입하고, 판로 개척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이 가장 미숙한 영역임.
 - 따라서, 마케팅에 관해서는 농산물의 생산과는 전혀 다른 노하우와 경영 능력이 필요함.

- 6차산업화와 농촌산업을 비즈니스로 하는 사업자의 국내외 시장 개척과 판로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지원들이 필요함.
 - 제품의 국내 유통망 구축과 홍보·판매 또는 사후관리 지원에 관한 지원
 - 농업인이나 사업자의 국내외 전시·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에 관한 지원
 - 국내외의 거래알선과 상품홍보를 위한 정보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지원
 - 6차산업화와 농촌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에 관한 지원
 -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상시적 컨설팅 시스템 필요

3.4. 경영자원 확보

- 위에서 언급 한 상품개발 , 생산, 마케팅 등의 사업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경영자원(사람, 제품, 자금, 정보)를 확보 할 필요가 있음.
- 새로운 6차산업화와 농촌산업에 종사하는 사업자에게 인력 등 경영자원을 어떻게 확보하는가는 매우 중요함. 특히, 자금이나 인재의 확보, 또한 새로운 사업 진출에 필요한 정보(노하우, 경영능력 등)의 확보가 매우 중요함.
- 따라서, 6차산업화와 농촌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이 매우 중요함.
 - 6차산업화와 농촌산업화는 1차, 2차, 3차 산업간의 융복합이나 협력을 통해 발전을 추구해야 함. 이를 통해 농촌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음. 지역단위에서 산업간 협력과 융복합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융복합형 전문인력 양성 절실함.
 - 6차산업화와 농촌산업 활성화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전문인력임. 이를 위해 고등학교에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농촌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역량강화를 추진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음.
- 자금지원 시스템
 - 모태펀드를 활용 한 자금지원 중요

4. 6차산업화 관련 사업들의 위계화

-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의 6차산업화 관련 사업들을 대상으로 분석함.
- 사업들의 위계화를 통해 공간적 차별화, 지원내용의 차별화, 발전적 단계화가 가능함.

4.1. 위계화 평가기준

- 위계화 순서를 정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평가기준이 필요. 평가기준은 사업 참여주체의 과소, 경영체 규모, 사업비 규모, 사업수행 공간단위로 구분하여 평가함.
 - 사업 참여주체의 과소여부는 많은 참여주체가 참여할 경우 지역 내 파급효과가 크고, 사업수행의 난이도가 높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참여주체가 많으면 많을수록 점수를 높이 책정함.
 - 경영체 규모는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참여자 수로 하였음. 단일 주체보다는 다수의 참여주체가 참여할 때 각 주체에 속한 종사자들이 함께 참여하게 됨으로써 규모가 커지게 됨. 참여자 수나 종사자 수가 많을수록 점수 높음.
 - 사업비 규모는 국비, 지방비, 자부담 등 많은 재원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사업비 규모가 클수록 점수를 높게 책정함.
 - 공간단위는 마을단위, 읍면단위, 시군단위, 시도단위, 전국단위로 나눌 수 있는데, 마을단위일수록 기초사업에 가깝기 때문에 위계를 하위로 놓음.

○이 기준에 따라 점수화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계순위를 정함.

4.2. 위계화 평가결과

○ 6차산업화 관련 사업들의 위계화를 위해 위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내용을 기입하여 평가점수화 시도

표 6-2. 6차산업화 관련 사업들의 위계화를 위한 평가

	구분	참여주체 과소	경영체 규모	사업비 규모 (억 원)	공간단위
농 식 품 부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다수	대	50	시군&시군연합
	향토산업육성사업	다수	대	30	시군
	농촌자원복합산업화	단일&다수	중	10	시군
	6차산업집적화지구	다수	대	20	시군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단일	소	0	마을-시군-전국연계
	농어촌공동체회사	단일	소	0.5	마을
농 진 청	6차산업수익모델	단일	중	10	마을
	농업인소규모창업기술	단일	소	1	마을
	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	다수	소	10	시군

- 평가결과에 따라 상위위계, 중위위계, 하위위계 사업들로 구분함.
- 상위위계는 참여주체가 많고, 경영체 규모도 크며, 사업비 규모는 30억 원 이상이며, 활동공간단위는 시군이상의 지역으로 함.
- 중위위계는 참여주체가 많고, 경영체 규모는 중간정도이며, 사업비 규모는 10억 원에 20억 원 정도이며, 활동공간단위는 시군이나 마을-시군간의 연계를 한 지역으로 한정함.
- 하위위계는 단일 주체가 참여하며, 경영체 규모는 작고, 사업비 규모는 10억 원 미만이며, 활동공간은 마을단위로 하는 지역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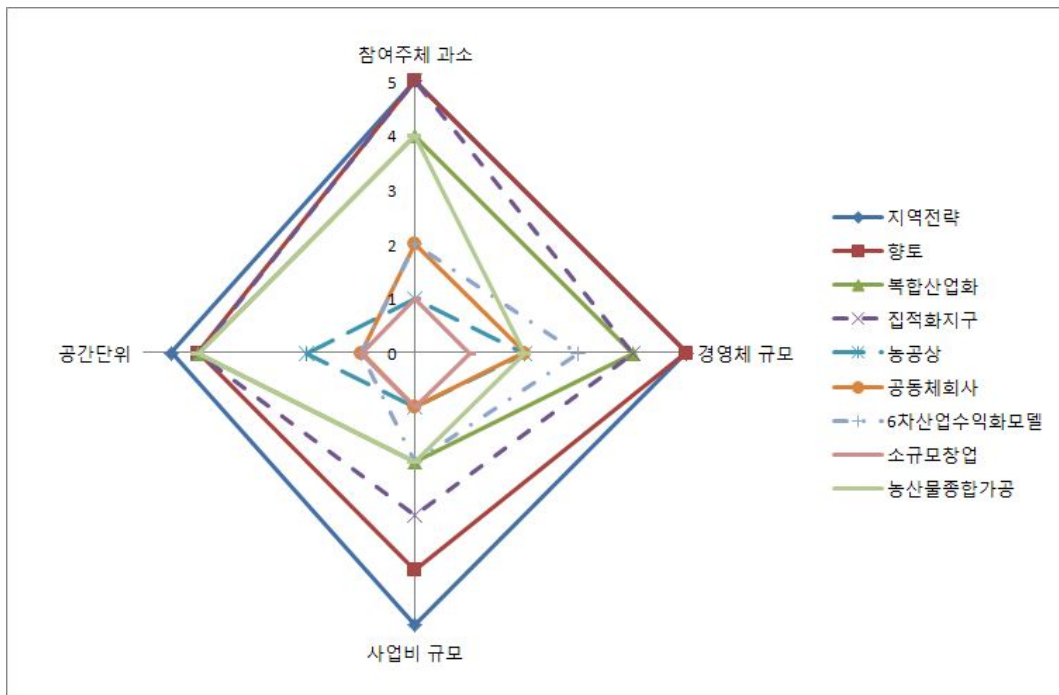
- 6차산업화 관련 사업들의 위계화 평가결과를 점수화하여 위계화 시도
 - 평가결과,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과 향토산업육성사업이 90점 이상을 얻었음.
 - 6차산업집적화지구는 80점의 점수를 나타냄.
 - 농촌자원복합산업화이 70점의 점수를 얻음.
 - 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사업은 60점을 기록함.
 - 농공상용합형중소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6차산업수익모델, 농업인소규모창업기술지원사업은 50점 미만의 점수를 얻음.

- 따라서, 80점 이상을 상위위계사업, 60점 이상 80점 미만을 중위위계사업, 60점 미만을 하위위계사업으로 구분함.
 - 상위위계사업에는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향토산업육성사업, 6차산업집적화지구가 속함.
 - 중위위계사업에는 농촌자원복합산업화, 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사업이 속함.
 - 하위위계사업에는 농공상용합형중소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6차산업수익모델지원, 농업인소규모창업기술지원사업이 해당됨.

표 6-3. 6차산업화 관련 사업들의 위계화를 위한 평가결과

구분	참여주체 과소	경영체 규모	사업비 규모	공간 단위	총점		
					20점	100점	
농 식 품 부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5	5	5	4.5	19.5	97.5
	향토산업육성사업	5	5	4	4	18	90
	농촌자원복합산업화	4	4	2	4	14	70
	6차산업집적화지구	5	4	3	4	16	80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1	2	1	2	6	30
	농어촌공동체회사	2	2	1	1	6	30
농 진 청	6차산업수익모델	2	3	2	1	8	40
	농업인소규모창업기술	1	1	1	1	4	20
	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	4	2	2	4	12	60

그림 6-1. 사업들 간 위계화 평가결과 도식도



4.3. 위계화 결과에 따른 사업간 체계화

4.3.1. 전제

- 현재 시행되고 있는 6차산업화와 관련된 각종 사업들은 동시다발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사업간 위계에 따른 차별화와 단계화를 위한 체계가 미흡한 실정임.
- 따라서, 사업간 위계화를 통해 단계화하고, 단계화에 따른 지원내용의 차별화, 수준별 차등화, 시기적 차이성, 지원 대상자에 대한 명확성을 통해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4.3.2. 원칙

- 첫째, 사업의 진화적 단계화
- 둘째, 사업활동 공간단위의 차별화
- 셋째, 지원내용의 차별화 및 연계
- 넷째, 지원대상의 시기 차등화와 발전단계별 차별화
- 다섯째, 기존의 하드웨어적 시설 활용을 극대화하고, 소프트웨어적 사업의 단계적 차별화 추구
- 여섯째, 같은 위계사업들은 동시다발적 시행 가능. 그러나 위계에 차이가 있을 경우, 시차적 차별성, 기능적 차별성, 능력의 차이성을 고려 후 시행

4.3.3. 사업간 체계화

○ 하위위계사업

- 공간단위는 마을단위
- 핵심주체는 소규모 농가, 작목반 등 소규모 생산자 단체와 마을단위 법인체 중심
- 주요활동은 1차와 2차산업의 융복합, 1차와 3차사업의 융복합, 1차·2차·3차산업의 융복합화이며, 이를 위한 역량강화와 기술습득
- 지원에 있어서는 하드웨어적인 사항은 기본적인 것에 국한하고, 사업아이템 발굴, 구성원들과의 협력, 학습활동, 기술습득 등을 중점 지원
- 지원규모는 5천만 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들로부터 구성
- 중간지원조직은 낮은 단계의 컨설팅을 수행하는데 자원발굴, 사업화 방법, 계획 구상, 논의 요령, 선진지 견학, 협력의 중요성 등을 중심으로 측면 지원함.
- 하위위계사업이 종료된 후 사업평가를 통해 우수한 경영체에 한해서 중위위계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성과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교육 등을 통한 준비단계를 반복적 수행이 요구됨.
- 관련사업은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6차산업수익모델, 농업인소규모창업기술임.

○ 중위위계사업

- 공간단위는 읍면 및 시군단위
- 핵심주체는 농업회사법인, 사회적 기업, 마을공동체 등 경영체로서 자격을 갖추었으며, 경영체간 연대를 통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닌 협의체 중심
- 주요활동은 하위위계에서 추진했던 융복합화 활동이 어느 정도 기초가 된 상태에서 판매를 위한 본격적인 생산품을 개발하고, 사업화 할 준비

의 완성단계를 지나 사업화 초기에 진입함으로써 기술개발, 마케팅, 고급 기술 습득 등

- 지원에 있어서는 소규모 시설이나 공동이용시설과 같은 하드웨어 시설을 지원하며, 제품개발, 홍보마케팅, 제품생산 기술, 협력, 학습활동, 역량강화 등을 중점 지원
- 지원규모는 최대 10억 원 이하의 사업들로 구성
- 중간지원조직은 하위위계 보다는 좀 더 체계를 갖추고 구체성이 이어야 함. 중급 수준의 컨설팅을 통해 사업화 초기단계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함. 사업아이템 개발, 비즈니스적 계획 실천, 시설의 적절한 이용, 네트워크 강화 등을 중심으로 측면 지원함.
- 상위위계사업으로 발전하기 위해 사업성 여부가 확실하여야 하며, 경영의 안정성, 판로의 안정성, 원료공급의 원활성, 시장의 트렌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필요.
- 중위위계의 사업 종료된 후 사업평가를 통해 우수한 경영체에 한해서 상위위계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성과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하위위계 단계의 교육과 학습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역량을 끌어 올려야 함.
- 관련사업으로는 농촌자원복합산업화사업과 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사업임.

○ 상위위계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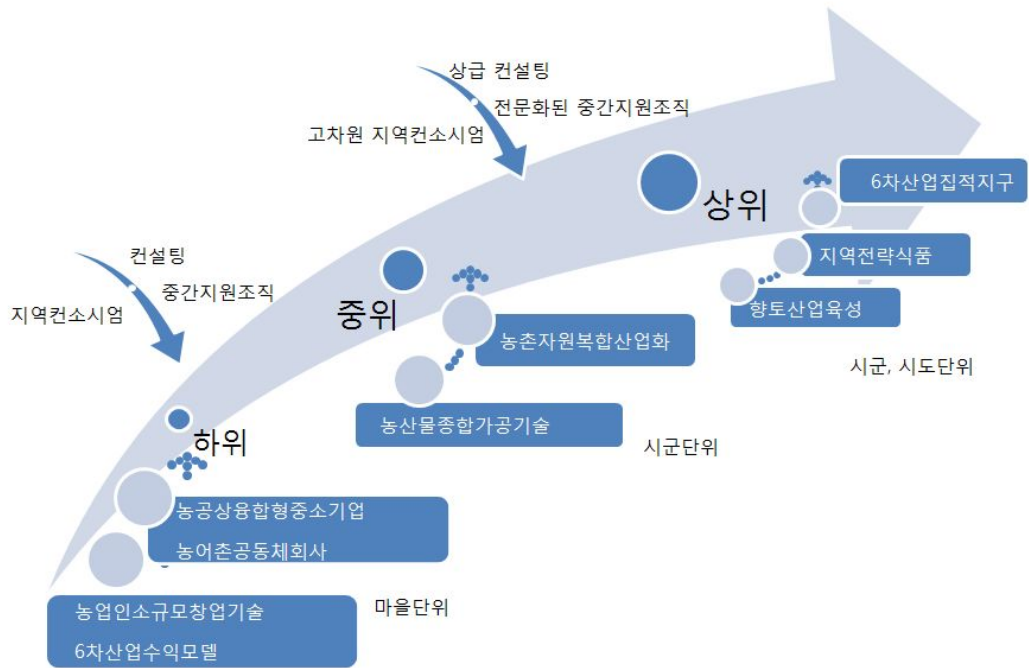
- 공간단위는 시군, 시군연계, 시도단위
- 핵심주체는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참여법인들로 구성된 사업단형태의 법인 등 사업적 능력을 갖추었으며, 경영체간 연대를 통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닌 협의체 중심
- 주요활동은 융복합화 활동, 사업화 활동, 기술개발 활동, 연대활동 등 시장메커니즘의 변화에 따라 원활하게 경영이 될 수 있게 하는 사업활동. 시장에서 판매될 수 있는 상품의 개발과 판촉 등 본격적인 마케팅 활동.

- 지원에 있어서는 중대규모의 시설이나 설비와 같은 하드웨어 시설을 지원하며, 고차원의 제품개발, 홍보마케팅, 제품생산 기술, 협력, 학습활동, 역량강화 등을 중점 지원
 - 지원규모는 최대 10억 원 이상의 사업들로 구성
 - 중간지원조직은 좀 더 전문화되어야 하며, 고급 수준의 컨설팅을 통해 사업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함. 사업아이템의 기술수준, 기술개발, 화 방법, 계획 구상, 논의 요령, 선진지 견학, 협력의 중요성 등을 중심으로 측면 지원함.
 - 정부의 지원없이도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되어야 함.
 - 상위위계의 사업이 종료된 후 사업평가를 통해 자립화가 준비되고 우수한 경영체로서의 기틀을 마련하였을 경우, 중소기업청과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협력하여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 필요. 성과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중하위위계 단계의 교육과 학습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역량을 끌어 올려야 함.
 - 관련사업으로는 6차산업집적화지구,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향토산업육성사업임.
- 위계간 연결 및 보완 사업
- 위계가 올라갈수록 사업비 단위가 커지고, 참여자 수도 늘어나기 때문에 사업별 차별화도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단계별로 발전하기 위해선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어야 함.
 - 이를 위해 지역컨소시엄, 컨설팅, 중간지원조직 등을 충분히 활용하여 원활한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표 6-4. 6차산업화 관련 사업들의 평면적 위계화

위계	사업	공간	지원내용										
			시설지원	홍보·마케팅	디자인·브랜드개발	제품및기술개발	지적재산권등록	운영비	역량강화/교육	네트워크구축	컨설팅	경영체간연계	
상위	6차산업집적화지구	시군	○	○	○	○				○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시군 & 시군연계	○	○	○	○	○	○	○	○	○		
	향토산업육성사업	시군	○	○	○	○	○	○	○	○	○		
중위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시군	○			○				○		○	
	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	시군	○			○			○	○	○		
하위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마을-시군-전국연계		△		△				△		△	○
	농어촌공동체회사	마을		○	○	○				○		○	
	6차산업수익모델	마을								○	○		○
	농업인소규모창업기술	마을	○	○	○		○			○		○	

그림 6-2. 6차산업화 관련 사업들의 입체적 위계화



참고 문헌

- 강종원. 2010. 새농어촌건설운동의 보완·발전방안. 강원발전연구원.
- 강창식 등. 2008. 지역특화 농특산물 생산·가공 연계육성 및 마케팅 방안 연구. 농촌진흥청
- 강현수. 2002. “최근 지역산업정책의 흐름에 대한 평가와 제안”. 환경논총 제40호
- 국회에산정책처. 2010. 지역특화발전특구사업 평가. 국회예산정책처
- 김관수 등. 2010. 정부정책사업의 유형화와 효율성 분석 :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을 대상으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 김덕호. 2007. “농촌산업정책 추진방향.” 「제2기 신활력사업 추진방향 및 향토산업육성사업 교육 교재」. 국가균형발전위원회·농림부.
- 김병률 등. 2010. 농식품산업특구 제도의 법제화 방안 및 타당성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병률 등. 2012. “2012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전망”. 「농업전망 2012(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영수 등. 2007. 지역산업정책 10년의 성과와 과제-지역산업진흥사업을 중심으로. 산업연구원
- 김영수 등. 2010. 「신지역산업발전전략 수립 연구」. 산업연구원.
- 김영수 등. 2013. 지역산업의 고용 동향과 일자리 창출 정책방향. 산업연구원
- 김용렬 등. 2011.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지원 실효성 확보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용렬 등. 2012.. 농어촌산업화 정책 성과평가 및 향후 발전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용렬 등. 2012. 향토산업육성사업의 성과와 정책 수요 조사결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용렬 등. 2013. 농촌산업 고도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비즈니스생태계 구축 방안. 경기도 농업기술원
- 김용렬 등. 2013. 농촌산업육성법(가칭) 제정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정섭 등. 2011. 농촌지역 활성화 정책의 평가와 발전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정섭 등. 2012. “농어촌 지역의 인구·산업·일자리 동향과 전망”. 「농업전망 2012(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태곤. 2008. 농촌활성화를 위한 농업의 6차산업화 전략.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 김태곤 등. 2011. 농업의 6차산업화와 부가가치 창출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주훈 등. 2007. 지역특구제도 운영성과 및 발전방안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 김홍배. 2009. 「도시 및 지역경제 분석론」. 기문당.
- 농림축산식품부. 2013. 농업·농촌에 창조를 담다 : 6차산업화 우수사례집
- 농촌진흥청. 2009. 전통향토음식의 산업화 사례분석. 농촌진흥청.
- 농촌진흥청. 2010. 신시장, 신사업 창출의 농상공연대 사례보고서, 농촌진흥청.
- 농촌진흥청. 2013. 농업·농촌의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6차산업 이야기. 농촌진흥청.
- 박석두 등. 2004. 「농촌 지연산업 활성화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원석 등. 2005. “영남지역의 특화산업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11권 제4호. pp463~475.
- 박준기 등. 2013. 창조경제 기반의 농업농촌 신성장 전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종화 등. 1995. 「지역개발론」. 박영사.
- 서종혁 등. 1986. 농가재무구조와 부채상환능력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석태문. 2013. 경북지역의 6차산업화 정책과 사례. 대구경북연구원.
- 손은일 등. 2011. PDCA 사이클을 적용한 신활력사업 성과 관리 실증 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송하울. 2007. 지역전략산업 지원사업 성과제고 방안. 산업경제분석. 산업연구원
- 이기원 등. 2010. 농촌활력증진사업 성과분석 및 포괄보조사업 평가지표 적합성. 농림축산식품부
- 이동필 등. 2007. 「신활력지역 지원사업 평가·성과측정을 위한 지표개발 및 향토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 방안·평가지표 개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동필 등. 1994. 「전통가공식품육성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동필 등. 1995. 「농촌지역 2·3차산업 활성화 방안」. 전국경제인연합회.
- 이동필 등. 1996. 「농어촌지역의 유형구분과 농공단지개발사업의 활성화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동필 등. 1997. 「농어촌부업단지 실태와 활성화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동필 등. 2001. 농촌지역의 정보화 실태와 정보격차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동필 등. 2004. 「도농간 소득 및 발전격차의 실태와 원인 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동필 등. 2006. 「농어촌지역개발·복지분야지원체계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기획예산처·농림부.
- 이동필. 2007. “향토산업의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제2기 신활력사업 추진방향 및 향토산업육성사업 교육 교재」. 국가균형발전위원회·농림부.
- 이동필 등. 2007. 「신활력지역 지원사업 평가·성과측정을 위한 지표개발 및 향토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 지원 방안·평가지표 개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동필 등. 2008. 「농어촌산업정책 추진체계 개편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동필. 2008.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향토산업 육성방안.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 이동필 등. 2009. 경제 생활권 광역화에 따른 농어촌경제 활성화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성우 등. 2013. 농업농촌 6차산업화 통계구축 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 이원진. 2009. 일본의 농상공 연대와 농협의 역할. 농협경제연구소.
- 이춘근. 2008. 「최신 지역경제론」. 법문사.
- 장재홍 등. 2002. 「지역산업정책 평가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IT, BT, NT를 중심으로)」. 산업정책연구원.
- 전인우 등. 2010. 중소기업육성정책의 농어촌산업분야 적용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정기환 등. 2009. 시·군 지역농업 특성화 중장기 목표와 전략. 농촌진흥청
- 정종석 등. 2011. 지역산업 육성 지원제도의 개편방안. 산업연구원.
- 조상필. 2007. “시·군 농촌활력증진계획 수립을 위한 과제”. 전남발전연구원 <리전인포>, 제112호. 2007.
- 지식경제부. 연례보고서 :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식경제부.
- 최양부·김형모. 1980. “농촌공업의 개념과 농촌공업개발의 의미 - 농촌공업개발정책의 이론적 기초”. 농촌경제 제3권 제1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최호중. 2007.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 방향.” 「제2기 신활력사업 추진방향 및 향토산업육성사업 교육 교재」. 국가균형발전위원회·농림부.
- 통계청. 2012. ‘2010 농림어업총조사 자료 활용성 제고를 위한 심층분석 연구’
- 통계청. 2008. 2007 사업체기초통계조사
- 통계청. 2009. 2008 사업체기초통계조사
- 통계청. 2010. 2009 사업체기초통계조사
- 통계청. 2011. 2010 사업체기초통계조사
- 통계청. 2012. 2011 사업체기초통계조사
- 통계청. 2008. 2007 광업제조업조사통계
- 통계청. 2009. 2008 광업제조업조사통계
- 통계청. 2010. 2009 광업제조업조사통계
- 통계청. 2011. 2010 광업제조업조사통계
- 통계청. 2012. 2011 광업제조업조사통계
- 통계청. 2008. 2007 전국사업체조사
- 통계청. 2009. 2008 전국사업체조사
- 통계청. 2010. 2009 전국사업체조사

- 통계청. 2011. 2010 전국사업체조사
- 통계청. 2012. 2011 전국사업체조사
- 통계청. 2008. 2007 농림어업총조사
- 통계청. 2009. 2008 농림어업총조사
- 통계청. 2010. 2009 농림어업총조사
- 통계청. 2011. 2010 농림어업총조사
- 통계청. 2012. 2011 농림어업총조사
- 통계청. 2008. 2007 농어업법인조사
- 통계청. 2009. 2008 농어업법인조사
- 통계청. 2010. 2009 농어업법인조사
- 통계청. 2011. 2010 농어업법인조사
- 통계청. 2012. 2011 농어업법인조사
- (사)한국농업경제학회. 2009. 농어촌 산업육성을 통한 농어촌경제 활성화 정책방향 연구. 농림수산식품부
- 황영모. 2013. 전라북도 6차산업화 정책추진 사례. 전북발전연구원.
- 황의식 등. 2010. 농어촌 지역 농식품산업 활성화 전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Adams, F.G. and L.R. Klein, 1984, Industrial Policies for Growth and Competitiveness: An Economic Perspective, *The Economic Journal* 94(375): 685-686.
- Berbman, E.J. and E.J. Feser. 1999. Industrial and Regional Clusters: Concepts and Comparative Applications. Regional Research Institute(Web Book).
- Braczyk, H-J., P. Cooke and M. Heidenreich(eds.). 1998. *Regional Innovation Systems: the Role of the Governances in a Globalized World*. UCL Press.
- Commission for Rural Communities. 2006. *The State of the Countryside 2006*. Countryside Agency.
- Commission for Rural Communities. 2007. *The State of the Countryside 2007*. Countryside Agency.
- Cooke, P. 2002. *Knowledge Economies: Clusters, Learning and Cooperative Advantage*. Routledge.
- EEAG(European Economic Advisory Group), 2008, *EEAG Report on the European Economy: Europe in a Globalised World*.
- ERS(USDA), 1998, "Rural Industry Issue", *Rural Conditions and Trends*, 8(3).
- ERS(USDA), 1999, "Rural Industry Issue", *Rural Conditions and Trends*, 9(3).
- EU. 2012. Rural Development in the EU : Statistical and Economic Information Report.

- EU D-G for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2007. *Rural Development in the European Union: Statistical and Economic Information Report 2007*. European Union.
- Food Valley. 2010. "Food Valley Where Food Ideas Grow.
- Hassink, R. 1999. "Technopoles: A Policy Concept at the End of its Life Cycle?" 「과학기술정책」 9(3/4): 45-61.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
- Johnson, C., 1984, *The Industrial Policy Debate*, Ics Press.
- Kotler, P., D.H. Haider & I. Rein. 1993. *Marketing Places: Attracting Investment, Industry, and Tourism to Cities, States, and Nations*. Free Press.
- Kuhlman, J.M. 1953. "Notes: Rural Industries and Agricultural Development." *Journal of Farm Economics* 35(3): 436-438.
- Lundvall, B-Å. 1996. "The Social Dimension of the Learning Economy". *DRUID Working Paper* No.96-1.
- MacKinsey and Company. 1994. *Lead Local Compete Global: Unlocking the Growth Potential of Australia's Regions*, Final Report for the Department of Housing and Regional Development.
- OECD, 1983, *Positive Adjustment Policies: Managing Structural Change*.
- OECD, 2000, *The service Economy*.
- OECD. 2005. *OECD Regions at a Glance*.
- OECD. 2007. *OECD Regions at a Glance*.
- Pine II, B.J. & J.H. Gilmore, 1999, *The Experience Economy: Work is Theatre and Every Business a Stage*, Boston: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 Porter, M.E. 1990. *The Competitive Advantage of Nations*. Free Press.
- Porter, M.E. 1998. "Clusters and the New Economics of Competition". *Harvard Business Review* 76(6): 77-90.
- Power, D. & A.J. Scott(eds.). 2004. *Cultural Industries and the Production of Culture*. LD & NY: Routledge.
- Queensland Government(Department of Employment and Industrial Relations). 2005. "Rural Industry action Plan 2004-2007."
- Queensland Government(Department of Employment and Industrial Relations). 2008. "Industry action Plan 2008-2010: Rural Industry."
- Research International Ltd. 2006. *England Leisure Visits: Report of the 2005 Survey*.
- Robock, S.H. 1952. "Rural Industries and Agricultural Development." *Journal of Farm Economics* 34(3): 346-360.
- Robyn, Shelley. 2006. Conversion of Building for Establishment of a Winery and Cellar Door.

- Scott, A.J.(eds.). 2001. *Global City-Regions: Trends, Theory, Policy*. Oxford university Press.
- Scott, A.J. 1988. *New Industrial Spaces: Flexible Production Organization and Regional Development in North America and Western Europe*. Pion Limited.
- Shapiro, H. 2007. “Industrial Policy and Growth.” *DEAS Working Paper No.53*.
- 大内力. 2000. “食料・農業・農村基本法をどうみるか”. 大内力 編輯代表「新基本法-その方向と課題」. 農林統計協會.
- 今村奈良臣. 1998. “新たな価値を呼ぶ農業の6次産業化—動き始めた農業の総合産業化戦略”. 「地域に活力を生む農業の6次産業化」. 21世紀村づくり塾.
- 農林水産省. 2011. 「食料・農業・農村白書」.
- 農林水産省. 2012. 6次産業化支援策活用ガイド. 2012年7月版
- 山形縣. 2010. 「あなたもチャレンジ！農家民宿」.
- <http://gt-yamagata.com/04gt/100805.pdf#search>
- http://www.maff.go.jp/j/nousin/kouryu/kyose_tairyu/k_gt/yokaho.html.
- 都市と農山漁村の共生・対流に関するプロジェクトチーム, 「都市と農山漁村の共生・対流の—層の推進について」, 2005.
- 株式會社農林漁業成長産業化支援機構法の概要
- 일본금융공고. 2013. 2012년도 농업의 6차산업화에 관한 조사.
- 농림수산성. 2013. 주식회사 농림어업 성장산업화 지원기구법.
- <http://www.maff.go.jp/j/press/kanbo/kihyo01/pdf/121010-02.pdf>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06701&mobile&categoryId=233>

부록 1

주식회사 농림어업 성장산업화 지원기구법(일본)

목 차

제1장 총칙(제1조 - 제5조)

제2장 설립(제6조 - 제11조)

제3장 관리

제1절 이사진 등(제12조·제13조)

제2절 농림어업 성장산업화 위원회(제14조 - 제19조)

제3절 정관 변경(제20조)

제4장 업무

제1절 업무의 범위(제21조)

제2절 지원기준(제22조)

제3절 업무의 실시(제23조 - 제25조)

제5장 정부의 지원 등(제26조·제27조)

제6장 재무 및 회계(제28조 - 제33조)

제7장 감독(제34조 - 제36조)

제8장 해산 등(제 37조·제38조)

제9장 잡칙(제39조 - 제41조)

제10장 벌칙(제42조- 제49조)

부칙

제1장 총칙 (기구의 목적)

제1조 주식회사 농림어업 성장산업화 지원기구는 일본의 경제사회 활력향상 및 지속적 발전, 농산어촌의 활성화와 농림어업자의 경영안정 향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내외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한 농림어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며 지역과의 조화를 이루면서 농림어업이 농림어업자의 소득을 확보하고 농산어촌에 고용기회를 창출하는 성장산업으로 만들기 위해 농림어업자가 주체가 되어, 농림수산물과 농림어업의 생산활동 및 농산어촌의 특색을 살린 새로운 상품의 개발과 수요 개척, 새로운 판매방식 도입 및 판매 방식의 개선, 새로운 역할의 개발과 이것의 제공 또는 수요 개척 및 농산어촌의 재생가능한 에너지 개발과 이것의 공급 또는 수요의 개척을 통하여 국내외의 새로운 사업분야를 개척하는 사업활동에 대한 자금공급과 그 외의 지원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 한다.

(數)

제2조 주식회사 농림어업 성장산업화 지원기구(이하 「기구」로 함)는 단일로 설립하는 것으로 한다.

(주식)

제3조 정부는 항상 기구가 발행한 주식(주주총회에서 결의사항의 전부에 대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과 일부 종류의 주식은 제외. 이하 항도 동일)의 총수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주식을 보유하여야 한다.

2. 기구는 회사법(2005년 법률 제86호)제199조제1항에 규정한 모집주식(제48조제1호의 「모집주식」이라고 함) 또는 동법 제238조제1항에 규정한

모집신주예약권(동호 「모집신주예약권」 이라고 함)을 인수하는 사람을 모집할 때, 주식교환에 있어서 주식 또는 신주예약권을 발행하려고 할 때에는 농림수산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기구는 신주예약권의 행사에 의해 주식을 발행했을 시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농림수산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부 출자)

제4조 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산에서 정해진 금액 범위내에서 기구에 출자할 수 있다.

(상호)

제5조 기구는 그 상호중에 주식회사 농림어업 성장산업화 지원기구라고 하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기구가 아닌 것은 그 명칭중에 농림어업성장산업화지원기구라고 하는 문자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2장 설립 (정관 기재 및 기록사항)

제6조 기구의 정관에는 회사법 제27조 각호에 나열된 사항과 함께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 ① 기구 설립에 즈음하여 발행하는 주식(이하 「설립시 발행주식」 이라고 함)의 수량(기구를 종류주식발행회사로서 설립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 종류 및 종류별 수량)
- ② 설립시 발행주식의 지불금액(설립시 발행주식 1주와 교환에 사용된

금전 또는 지급한 금전외의 재산액을 말함)

- ③ 정부가 할당받은 설립시 발행주식의 수량(기구를 종류주식 발행회사로서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종류 또는 종류별 수량)
- ④ 회사법 제107조 제1항 제1호에 나열된 사항
- ⑤ 이사회 및 감사등을 설치한 내용
- ⑥ 제21조 제1항 각호에 나열된 업무 완료에 의한 해산 사항

2. 기구 정관에는 다음에 나열된 사항을 기재하고 또는 기록하여야 한다.

- ① 회사법 제2조 제12호에 규정된 위원회의 설치
- ② 회사법 제139조 제1항 단서 별단의 규정

(설립 인가 등)

제7조 기구의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고 또한 발기인이 할당받은 설립시 발행주식을 인수한 후, 신속하게 정관 및 사업계획서를 농림수산장관에게 제출하고 설립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 농림수산장관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해 인가 신청이 있을 시에는 그 신청이 다음 나열된 기준에 적합한가를 심사하여야 한다.

- ① 설립 수속 및 정관내용이 법령의 규정에 적합할 것
- ② 정관에 허위기재 또는 기록 및 허위 서명 또는 기명날인(회사법 제26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 또는 기명날인에 대신한 조치를 포함)이 없을 것
- ③ 업무의 운영이 건전하게 이루어지며 제2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대

상사업활동 및 동호에 규정되어 있는 대상사업자에 대한 자금공급, 그 외의 지원을 실시하는 사업활동의 추진에 기여하는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것

2. 농림수산성장관은 전항 규정에 의해 심사한 결과, 그 신청이 동항 각호에 나열된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설립 허가를 하여야 한다.

(설립시 이사 및 감사의 선임 및 해임)

제9조 회사법 제3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설립 시 이사 및 동 조항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설립 시 감사의 선임 및 해임은 농림수산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으면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회사법 규정의 대체)

제10조 회사법 제30조 제2항, 제34조 제1항, 제59조 제1항 제1호 및 제963조 제1항의 규정 적용에 있어서는 동법 제30조 제2항 중 「전항의 공증인 인정을 받은 정관은 주식회사의 설립 전」이라는 것은 「주식회사 농림어업 성장산업화 지원기구법(2012년 법률 제83호) 제8조 제2항의 인가 후 주식회사 농림어업 성장산업화 지원기구의 성립전은, 정관」으로, 동법 제34조 제1항 중 「설립시 발행주식의 인수」이라는 것은 「주식회사 농림어업 성장산업화 지원기구법 제8조 제2항의 인가의」로 하며, 동호 중 「정관 인정의 연월일 및 그 인정을 한 공증인의 성명」이라는 것은 「주식회사 농림어업 성장산업화 지원기구법 제8조 제2항의 인가의 연월일」로 하며, 동법 제963조 제1항 중 「제34조 제1항」은 「제34조 제1항(주식회사 농림어업 성장산업화 지원기구법 제10조 규정에 의해 대체하는 경우를 포함)」으로 한다.

(회사법 규정 적용 제외)

제11조 회사법 제30조 제1항 및 제33조의 규정은, 기구 설립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3장 관리

제 1절 이사 등

(이사 및 감사 선임 등의 허가)

제12조 기구 이사 및 감사의 선임 및 해임 결의는 농림수산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사 등의 비밀유지 의무)

제13조 기구의 이사, 회계담당, 감사 및 직원 또는 이러한 직을 가진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발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안 된다.

제 2절 농림어업 성장산업화 위원회

(설치)

제14조 기구에는 농림어업 성장산업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권한)

제15조 위원회는 이하 나열하는 사항의 결정을 실시한다.

- ① 제21조 제1항 제8호 규정에 의해 지도 권고 및 그 외의 조치내용을 결정
- ② 제23조 제1항의 대상사업 활동지원의 대상이 되는 대상사업자 또는 대상사업 활동 지원단체 및 해당 대상사업 활동지원 내용의 결정
- ③ 제25조 제1항의 주식 또는 채권 양도 및 그 외의 처분 결정

- ④ 전항 3호 뿐만 아니라 회사법 제362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있는 사항 중 이사회 결정에 의해 위임을 받은 사항의 결정
2. 위원회는 전항 제2호에 있는 결정을 하려고 할 때에는 사전에 농림어업자 및 그 외의 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제2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지원대상사업자 및 동항 제2호에 규정한 지원대상 사업활동 지원단체의 사업활동 상황을 적절히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1항의 결정에 반영한다.
 4. 위원회는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나열한 결정에 대해서 이사회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으로 한다.

(조직)

제16조 위원회는 이사인 위원 3인 이상 7인 이내에서 조직한다.

2. 위원 중에는 대표이사 및 사외이사가 각각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3. 위원에는 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가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위원은 이사회의 결정에 의해 정해진다.
5. 위원의 선정 및 해직의 결의는 농림수산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6. 위원은 각각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7. 위원회에 위원장을 두며 위원의 호선에 의해 선출한다.
8.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9. 위원회는 사전에 위원 중에서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할 위원을 정하여야 한다.

(운영)

제17조 위원회는 위원장(위원장 유고시는 전조 제9항에 규정된 위원장 직무대리자, 다음항 및 제3항도 동일)이 소집한다.

2. 위원회는 위원장이 출석하며, 현재 재직하고 있는 위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회의를 시작하여 의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3. 위원회의 의결은 출석한 위원의 과반수를 넘어야 가결한다. 가불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4.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에 있어서 특별 이해관계자인 위원은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5. 전항의 규정에 의해 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 의원의 수는 제2항에 규정하는 재직 위원의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6. 감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필요할 시에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7. 위원회 위원 중 선임된 위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해당 의결 내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8. 위원회 의사진행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성령에 의해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사록이 서면으로 작성되었을 때에는 출석한 위원 및 감사는 여기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9. 전항의 의사록이 전자적 기록(전자적 방식, 자기적 방식 그 외 사람의 지각에 따라서는 인식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작성된 기록이며 전자계산기에 의한 정보처리용으로 제공되는 것을 말함. 이하 본 항 및 제18조 2항 제2

호 동일)으로 작성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전자적 기록에 기록된 사항에 대해서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해진 서명 및 기명달인을 대체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10. 전 각항 및 제18조에 규정된 이외에 의사 수속 및 그 외 위원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의사록)

제18조 기구는 위원회 일부터 10년간 제17조 제8항의 의사록을 본점에 보관하여야 한다.

2. 주주는 그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소의 허가를 받아 다음에 열거하는 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
 - ① 전항의 의사록이 서면으로 작성되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서면의 관람 또는 복사를 청구
 - ② 전항의 의사록이 전자적 기록으로 작성되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전자적 기록에 기록된 사항을 농림수산성령에서 규정된 방식으로 표시한 것의 관람 또는 복사 청구
3. 채권자는 위원의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서 필요할 시에는 재판소의 허가를 받아 제1항의 의사록에 대해서 전항 각호에 열거한 청구를 할 수 있다.
4. 재판소는 제2항의 청구에 대해 관람 또는 복사하는 것이 기구에게 현저한 손해를 끼칠 것으로 인정 될 때에는 제2항의 청구를 허가 할 수 없다.
5. 회사법 제868조 제1항, 제869조, 제870조 제2항(제1호 일부분), 제870조 2, 제871조 본문, 제872조(제5호 일부분), 제872조 2, 제873조 본문, 제875조 및 제876조의 규정은 제2항 및 제3항의 허가에 대해서 준용한다.
6. 이사회는 제1항의 의사록에 대해서 제2항 각호에 열거한 청구를 할 수 있다.

(등기)

제19조 기구는 위원을 선정한 때에는 2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 위원의 이름을 등록하여야 한다. 위원 이름에 변경이 발생한 때에도 동일하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 선정 등기 신청서에는 위원 선정 및 선정된 위원이 취임을 승낙한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3. 위원의 퇴임에 의한 변경 등록 신청서에는 이것을 증명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4. 기구는 위원으로 선정된 이사 중에서 사외이사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3절 정관의 변경

제20조 기구의 정관 변경 결의는 농림수산성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4장 업무

제1절 업무의 범위

제21조 기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열거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한다.

- ① 지원대상 사업자(농림어업자가 주체가 되어 농림수산물, 농림어업 생산 활동 또는 농산어촌의 특색을 활용한 신상품개발, 생산 또는 수요 개척, 새로운 판매방식 도입 또는 개선 및 새로운 역할 개척, 농산어촌의 재생 가능에너지 개발 등을 추진 하는 것으로 인해 국내외의 새로운 사업분야를 개척하는 사업활동(이하 대상사업활동으로 칭함)을 추진하는 사업자이며, 지역자원을 활용한 농림어업자가 새로운 사업의 창출 및 지역 농림수산물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2010년 법률 제67호)제5조 제1항에 인정을 받은 것(이하 대상사업자라 칭함)중에서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원대상이 된 것을 말함. 이하 동일)에 대한 출자
- ② 지원대상사업활동지원단체(대상사업자에 대한 자금공급 및 그 외의 지원을 하는 단체(이하 대상사업활동지원단체라 칭함)중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원대상이 되는 것을 말함. 이하 동일)에 대한 출자
- ③ 지원대상사업활동지원단체에 대한 기금(일반사회법인 및 일반재단법인에 관한 법률(2006년 법률 제48호)제131조에 규정된 기금을 말함)의 각출
- ④ 지원대상사업자에 대한 자금의 대출
- ⑤ 지원대상사업자가 발행한 유가증권(금융상품거래법(1948년 법률 제25호)제20조 제1항에 규정하는 유가증권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으로 볼 수 있는 권리를 말함. 이하 본항 및 제11항도 동일) 및 지원대상사업자가 보유하는 유가증권의 취득
- ⑥ 지원대상사업자에 대한 금전채권 및 지원대상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금전채권의 취득

- ⑦ 지원대상사업자가 발행하는 회사채(회사채, 주식등의 대체에 관한 법률(2001년 법률 제75호) 제66조 제1호에 규정하는 단기회사채를 제외) 및 자금차입에 관한 채무의 보증
 - ⑧ 제2호의 자금공급과 그 외의 지원에 관련하여, 계약내용의 적정화 및 그 외의 해당 자금공급, 지원대상이 되는 대상사업자 보호를 도모하며, 일본 농림어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에 도움이 되는 대상사업활동지원(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대상사업활동지원을 말함)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대상사업활동지원단체에 대하여 지도, 권고 및 그 외의 조치
 - ⑨ 대상사업활동을 추진하거나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전문가를 파견
 - ⑩ 대상사업활동을 추진하거나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조언
 - ⑪ 보유하고 있는 주식, 신주예약권, 지분 또는 유가증권(제25조 제1항 및 제2항의 주식등을 말함)의 양도 및 처분
 - ⑫ 채권 관리 및 양도 및 처분
 - ⑬ 전 각호에서 열거된 업무에 관련하여 필요한 교섭 및 조사
 - ⑭ 대상사업활동 및 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자금공급 및 지원을 추진하는 사업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 및 정보 제공
 - ⑮ 전 각호에 열거된 업무에 부가되는 업무
 - ⑯ 전 각호에 열거된 업무 이외에 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
2. 기구는 전항 제16호에 열거된 업무를 하려고 할 때에는 농림수산성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절 지원기준

제22조 농림수산성장관은 기구가 대상사업활동 및 대상사업자에 대해 자금공급 및 지원을 하는 사업활동 지원(제2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열거된 업무에 한함. 이하 대상사업활동지원이라고 함)의 대상이 되는 대상사업자 및 대상사업활동지원단체와 해당 대상사업활동지원 내용을 결정할 때의 준수해야 할 기준(이하 지원기준이라고 함)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지원기준은 다음 열거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① 대상사업자 의사결정에 있어서 농림어업자 주도성 확보에 관한 사항
- ② 농림어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대상사업활동지원단체의 선정 및 감독에 관한 사항

3. 지원기준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 ① 다양한 농림어업자에 의해서 또는 연계되어 있는 지역 농림어업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한 것으로 한다.
- ② 농림어업자의 소득 확보 및 농산어촌의 고용기회 창출과 농산어촌 활성화에 필요한 것으로 한다.
- ③ 대상사업자에 대한 자금공급 및 지원이 농림어업자 및 관계자의 의향을 존중하는 것으로 한다.

4. 농림수산성장관은 지원기준을 정할 때에는 농림어업자, 농림어업에 관련된 단체 및 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5. 농림수산성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원기준을 정하려고 할 때에는 대상사업활동지원의 대상이 되는 활동에 관련된 사업을 소관 장관(제23조 제3

항 및 제4항에 대해서 사업소관대신이라고 말함)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6. 농림수산성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원기준을 정하려고 할 때에는 이것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3절 업무 실시

(지원결정)

제23조 기구는 대상사업활동지원을 실시하려고 할 때에는 지원기준에 맞게 대상사업자 또는 대상사업활동지원단체 및 해당 대상사업활동지원 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2. 기구는 대상사업활동지원의 가부를 결정할 때에는 농림수산성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3. 농림수산성장관은 전항의 인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사업소관대신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농림어업자 및 관계자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사업소관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의해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대상사업자 및 대상사업활동지원단체에 소속하는 사업분야 실태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농림수산성장관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지원결정 철회)

제24조 기구는 다음 열거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지원결정 이라고 함)을 철회하여야 한다.

- ① 지원대상사업자가 대상사업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 ② 지원대상사업활동지원단체가 대상사업자에 대해 자금공급 및 지원을 하지 않을 때

③ 지원대상사업자 및 지원대상사업활동지원단체가 파산수속 개시의 결정, 재생수속 개시의 결정, 갱신수속 개시의 결정, 특별청산 개시의 명령 및 외국도산처리수속의 승낙을 받았을 때

2. 기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해 지원결정을 철회한 때에는 즉시 지원대상사업자 및 지원대상사업활동지원단체에 대해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주식등의 양도 및 처분 등)

제25조 기구는 기구가 보유하고 있는 지원대상사업자 또는 지원대상사업활동지원단체에 관련된 주식 및 채권의 양도 및 처분 결정을 하려고 할 때에는 농림수산성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기구는 경제상황, 지원대상사업자 또는 지원대상사업활동지원단체의 사업상황 및 사정을 고려하여 2033년 3월 31일까지 보유하는 모든 주식 및 채권의 양도 및 처분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기구가 채권의 보증을 한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되는 대부금 상환기간은 2033년 3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제5장 정부 원조 등

(정부 원조 등)

제26조 농림수산성장관 및 정부 행정기관의 장은 기구 및 지원대상사업자와 지원대상사업활동지원단체에 사업이 원활하면서도 확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언,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전항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농림수산성장관 및 정부 행정기관의 장은 기구 및 지원대상사업자와 지원대상사업활동지원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이

원활하면서도 확실히 추진되도록 상호 연계를 통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재정상의 조치 등)

제27조 정부는 대상사업활동지원 및 대상사업활동의 원활하면서도 확실한 실시
시에 기여하는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상 또는 세제상의 조
치 및 그 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6장 제무 및 회계

(예산 인가)

제28조 기구는 매년 사업 연도 개시 전에 그 사업 연도의 예산을 농림수산성장
관에게 제출하고 그 인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
에도 농림수산성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전항의 예산에는 그 사업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잉여금의 배당등 결산)

제29조 기구의 잉여금의 배당 및 잉여금의 저분의 결의는 농림수산성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으면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재무제표)

제30조 기구는 매년 사업 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그 사업 연도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사업보고서를 농림수산성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부의 대출)

제31조 정부는 기구에게 자금을 대출할 수 있다.

(차입금 및 회사채)

제32조 기구는 정부이외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려고 할 때에나 또는 회사채의 발행을 하려고 할 때에는 농림수산성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기구의 차입금 현재액 및 회사채 원본(元本)에 관한 채무의 현재액의 합계액은 기구 자본금 및 준비금 총액의 회계액에 정해진 배수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정부 보증)

제33조 정부는 법인에 대한 정부 채무원조의 제한에 관한 법률(1946년 법률 제24호)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의결을 거친 금액의 범위내에서는 기구의 제32조 제1항의 차입 또는 회사채에 관한 채무에 대해 보증계약을 할 수 있다.

제7장 감독

(감독)

제34조 기구는 농림수산성장관이 이 법률에 정한 대로 감독한다.

2. 농림수산성장관은 이 법률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구에 대해 그 업무에 관련된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재무장관과의 협의)

제35조 농림수산성장관은 제8조 제2항, 제20조, 제21조 제2항, 제28조 제1항,

제29조, 제32조 제1항 또는 제38조의 인가를 하려고 할 때에는 재무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업무 실적에 관한 평가)

제36조 농림수산성장관은 기구의 사업 연도별로 업무의 실적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2. 농림수산성장관은 전항의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구에 대해 해당 평가 결과를 통지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8장 해산 등

(기구의 해산)

제37조 기구는 제21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업무의 완료에 의해 해산한다.

(합병등의 결의)

제38조 기구의 합병, 분할, 사업의 양도 또는 수탁 및 해산의 결의는 농림수산성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9장 잡칙

(보고 징수 등)

제39조 농림수산성장관은 기구 업무의 건전 및 적절한 운영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이 법률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구로부터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또한 기구의 영업소, 사무소, 사업장에 방문하여 장부, 서류 및 그 외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2. 농림수산성장관은 기구 업무의 건전 및 적절한 운영을 확보하기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및 이 법률을 실시하기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원대상사업활동지원단체에 대해서 기구 업무의 상황에 관련된 참고자료를 보고받을 수 있으며 또한 지원대상사업활동지원단체의 영업소, 사무소, 사업장에 방문하여 기구 업무의 상황에 관련된 장부, 서류 및 그 외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3. 전2항의 규정에 의해 방문검사를 하는 직원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명서를 휴대하고 관계인에게 이것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에 의한 방문검사의 권한은 범죄조사를 위해 인정된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5. 지원대상사업활동지원단체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및 방문검사를 거부할 수 있다.

(지방공공단체 등의 지원)

제40조 지방공공단체 및 농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어업협동조합, 그 외의 농림어업자를 직접 또는 간접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는 대상사업활동이 원활하고 확실히 이루어지도록 대상사업자 및 대상사업활동지원단체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관계자 상호 연계 및 협력)

제41조 지방공공단체는 기구 및 농업법인 투자의 원활화에 관련된 특별조치법

(2002년 법률 제52호)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승인회사 및 관계자는 대상사업활동이 원활하고 확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연계를 도모하여야 하며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장 벌칙

제42조 기구의 이사, 회계감사(회계감사가 법인일 경우에는 그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원), 감사, 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서 뇌물을 수수하거나 또는 뇌물을 요구하거나 약속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뇌물에 의한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전항의 경우, 범인이 수수한 뇌물은 몰수한다. 뇌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액만큼 추징한다.

제43조 전조 제1항의 뇌물을 공여하거나 약속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전항의 죄를 범한 자가 자수한 경우에는 그 형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44조 제42조 제1항의 범죄는 일본국외에 있어서도 동항의 범죄를 범한 자에게도 적용된다.

2. 전조 제1항의 죄는 형법(1907년 법률 제45호) 제2조의 예를 따른다.

제45조 기구의 이사, 회계감사(회계감사가 법인일 경우에는 그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원), 감사, 직원이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6조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또는 허위 보고를 하거나, 동항에 규정된 감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기피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를 한 기구의 이사, 회계감사 (회계감사가 법인일 경우에는 그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원), 감사, 직원은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7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를 한 기구의 이사, 회계감사 또는 그 직무를 담당한 사원 및 감사는 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①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모집 주식 또는 모집 신주예약권을 인수하는 자의 모집을 하거나 또는 주식 교환 시 주식 또는 신주예약권을 발행한 때
- ②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을 발행한 내용을 제출하지 않았을 때
- ③ 제19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登記하는 것을 태만하였을 때
- ④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업무를 하였을 때
- ⑤ 제23조 제2항 및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농림수산성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았을 때
- ⑥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예산의 인가를 받지 않았을 때
- ⑦ 제3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 또는 기록한 것을 제출 하였을 때
- ⑧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금을 차입하거나 회사채를 발행하였을 때
- ⑨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제49조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그 명칭중에 농림어업성장산업화지원

기구라고 하는 문자를 사용한 자는 10만엔 이상의 과태료에 처한다.

부칙

(시행기일)

제1조 이 법률은 공포일부터 기산하여 3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령으로 정한 일부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제2조 이 법률의 시행에 있어서 기존 명칭중에 농림어업성장산업화지원기구라고 하는 문자를 사용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제5조 제2항의 규정은 이 법률의 시행후 6개월간 적용하지 않는다.

제3조 기구의 성립일이 속하는 사업 연도의 기구예산에 대해서는 제28조 제1항 중 「매년 사업연도의 개시 전에」 라고 하는 것은 「그 성립 후 지체 없이」로 한다.

제4조 비송사사건수속법 및 가사사건수속법의 시행에 따른 관계 법률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2011년 법률 제53호)의 시행일 전에 있어서는 제18조 제5항중 「제870조 제2항(제1호에 관련된 부분에 한함), 제870조의 2」라고 하는 것은 「제870조(제1호에 관련된 부분에 한함)」으로 하고 「제5호에 관련된 부분에 한함), 제872조의 2」라고 하는 것은 「제4호에 관련된 부분에 한함)」으로 한다.

(검토)

제5조 정부는 이 법률의 시행 후 3년을 목표로 이 법률의 시행 상황에 대해서

검토를 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조세특별조치법의 일부 개정)

제6조 조세특별조치법(1957년 법률 제26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의 6에 다음의 항을 추가한다.

5. 주식회사 농림어업성장산업화지원기구의 등기에 관한 등록면허세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법 별표 제1제24호(1)개 중 「또는 특별이사」 라고 하는 것을 「, 특별이사 또는 주식회사 농림어업성장산업화지원기구법(2012년 법률 제83호) 제19조 제1항(등기)의 위원」 으로 한다.

부록 2

6차산업 관련 인식 및 실태 조사 설문조사표

안녕하십니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농업·농촌 정책을 개발하는 국책연구소로서, 6차산업 관련 인식 및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귀중한 의견은 농촌의 6차산업화 관련 정책 수립 및 계획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됩니다.

본 설문에서 응답해주시는 정보는 법률 제11690호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 수집/이용)에 의거 보호 받을 수 있으며, 동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에 의거 조사 종료 후 파기되오니 안심하시고 원활한 연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문항을 빠짐없이 응답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2013. 12

문 의 사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담당자 : 김용렬 연구위원 (02-3299-4362)
	정은미 연구위원 (02-3299-4311)
	최용욱 연구원 (02-3299-4392)
	한태녕 연구원 (02-3299-4114)

응답자 기본 사항

연 락 처 :

응답자 주소 () 시/도 () 시/군/구 () 읍/면/동

<6차 산업화 인지와 사업실행 >

1. 농촌의 “6차 산업화”라는 개념에 대하여 알고 계십니까?

‘6차산업’ 이란?

-> 생산(농림축산물 생산 등)(1차산업)뿐만 아니라, 생산물 가공(2차산업)이나 식품유통 및 관광(3차산업) 등의 영역을 융복합화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

① 전혀 모른다 ② 잘 모른다 ③ 조금 안다 ④ 잘 안다 ⑤ 매우 잘 안다

2. 귀하께서는 6차 산업을 추진하였거나, 추진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 ① 과거에 추진했었다 ② 현재 추진하고 있다 ③ 향후 추진할 계획이 있다
 ④ 향후 추진할 의향은 있으나 구체적 계획은 아직 없다
 ⑤ 추진해 본 바 없으며, 향후에도 추진할 계획이 없다

(2번 문항에서 ①②로 답한 경우 3번 문항으로, ③④⑤ 번으로 답한 경우 12번 문항으로)

3. 6차산업이 소득 증대에 많은 도움이 되셨습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조금 그렇다 ④ 많이 그렇다 ⑤ 매우 많이 그렇다

4. 귀하께서 6차 산업화를 추진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복응답)

- ① 생산·가공·판매의 일원화를 통한 가격 결정권의 확보를 위해
 ② 규격외품, 재고처리를 위해 ③ 고용증가 등을 통한 지역 활성화에 공헌하기 위해
 ④ 유통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⑤ 농한기 등의 인력활용을 위해
 ⑥ 유리한 조건으로 용자 및 보조금을 받기 위해
 ⑦ 후계자의 경영참가 등에 의해 노동력에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⑧ 기타 ()

- ④ 일용직 고용 등을 통한 인건비 절약
- ⑤ 외부로부터의 원재료 조달 비용의 절약
- ⑥ 기타 ()

9. 귀하께서 6차 산업화를 추진하시면서 판매 수량 증가를 위해 중점적으로 시행하는 대책으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중복응답)

- ① 새로운 판로의 개척 ② 신상품 및 신규 작물 등 품목 구비 강화
- ③ 박람회 등 참가 ④ 시음회 등 이벤트를 통한 판매 촉진
- ⑤ 인터넷 판매 활용 ⑥ 기존 고객에의 영업 강화
- ⑦ 규격 외 상품 판매 ⑧ 세일 등 판매 가격의 인하
- ⑨ 대용량 패키지 상품의 개발
- ⑩ 기타 ()

10. 귀하께서 6차 산업화를 추진하시면서 부족한 인력과 전문지식으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중복응답)

- ① 영업·판로 개척 ② 가공 ③ 조직의 관리·운영 ④ 농산물 생산
- ⑤ 고객 응대·판매 ⑥ 재무·회계·세무 ⑦ 없음
- ⑧ 기타 ()

11. 귀하께서 6차 산업화를 추진하시면서 해외 시장으로의 진출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① 현재 미 시행, 향후도 시행 의향 없음 ② 현재 미 시행, 향후 시행 의향 있음
- ③ 현재 미 시행, 향후 시행 계획 있음 ④ 과거에 시행, 현재는 미 시행
- ⑤ 현재 시행 중

- ④ 해외전개(수출 등)에 관련한 금융 지원
- ⑤ 현지(해외)에서의 상담기회 제공
- ⑥ 공동·릴레이 수출등의 물류 지원
- ⑦ 기타 ()

<정부의 6차 산업화 대책 >

농축산식품부는 지난 7월에 6차산업화 추진을 위한 대책을 아래의 내용과 같이 발표하였습니다
 이하 문항은 이 대책에 대한 의향을 묻는 것입니다.

12. 농림축산식품부의 '6차 산업화 창업자금 지원사업'이 6차산업의 육성에 있어서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6차산업화 창업자금 지원사업' 이란?
 -> 6차산업화 우수경영체 육성을 위해 시설,장비 현대화 자금 등 융자지원
 * 2억원 한도, 연리 3%, 3년거치 7년균분상환
 사업계획서 접수 후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 선정

- ① 전혀 없을 것이다 ② 별로 없을 것이다 ③ 조금 있다 ④ 크게 있다 ⑤ 매우 크게 있다

12-1 (12번 문항에서 ① 또는 ②로 답한 경우) 실효성이 없다면 그 이유는?
 ()

13. 농림축산식품부의 '6차 산업화 사업자 인증제도'가 6차산업의 육성에 있어서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6차산업화 사업자 인증제도' 란?
 -> 성장가능성이 있는 경영체를 6차산업화 사업자로 인증 ('17년까지 1천개)
 - 지원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문가 등으로 6차산업화 추진계획 심의회를 구성하여 사전사업성 검토 강화

- ① 전혀 없을 것이다 ② 별로 없을 것이다 ③ 조금 있다 ④ 크게 있다 ⑤ 매우 크게 있다

13-1 (13번 문항에서 ① 또는 ②로 답한 경우) 실효성이 없다면 그 이유는?
()

14.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간지원조직 지정사업’**이 6차산업의 육성에 있어서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중간지원조직’이란?
-> 농촌자원·산업에 대한 조사·분석, 창업·보육·연구·개발 지원, 정보제공, 인력양성 등 농촌산업 육성을 위한 전반에 관한 지원을 전문적으로 담당

① 전혀 없을 것이다 ② 별로 없을 것이다 ③ 조금 있다 ④ 크게 있다 ⑤ 매우 크게 있다

14-1 (14번 문항에서 ① 또는 ②로 답한 경우) 실효성이 없다면 그 이유는?
()

15.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려 하고 있는 **‘농촌산업집적화지구(6차산업)’**가 6차산업의 육성에 있어서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농촌산업집적화지구’란?
-> 특정 자원 및 산업의 특화를 통해 6차산업화 추진효과 제고, 지원센터 운영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공동연구개발 지원

① 전혀 없을 것이다 ② 별로 없을 것이다 ③ 조금 있다 ④ 크게 있다 ⑤ 매우 크게 있다

15-1 (15번 문항에서 ① 또는 ②로 답한 경우) 실효성이 없다면 그 이유는?
()

16. 농림축산식품부가 조성하고자 하는 **‘모태펀드’**가 6차 산업의 육성에 있어서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모태펀드’란?

-> 6차산업화에 기여하는 경영체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민·관합작 방식의 펀드 결성
운용사 선정 후 농식품투자조합을 결성, 실질적으로 관련 경영체에 투자
‘14년 : 100억원 예상

- ① 전혀 없을 것이다 ② 별로 없을 것이다 ③ 조금 있다 ④ 크게 있다 ⑤ 매우 크게 있다

- 16-1 (14번 문항에서 ① 또는 ②로 답한 경우) 실효성이 없다면 그 이유는?

()

17. 농림축산식품부의 **‘판매 및 수출지원 방안’**이 6차 산업의 육성에 있어서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의 판매 및 수출지원 방안

-> 6차산업화 경영체 생산제품의 전시·홍보 및 생산품 판로확보 지원, 소비자
유통품평회 개최, 6차산업 박람회 개최, 6차산업 경진대회 개최(‘14. 7~8월)

- ① 전혀 없을 것이다 ② 별로 없을 것이다 ③ 조금 있다 ④ 크게 있다 ⑤ 매우 크게 있다

- 17-1 (17번 문항에서 ① 또는 ②로 답한 경우) 실효성이 없다면 그 이유는?

()

18.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컨소시엄 사업단’**이 6차 산업의 육성에 있어서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지역컨소시엄 사업단’ 이란?

-> 1차 농산물을 활용하여 6차산업화를 하는 농업인, 제조·가공업체, 체험마을 등이 참여하는 6차산업 협의체를 지원하는 사업

* 공동상표 및 디자인 개발, 공동마케팅, 판매 및 수출, 품질관리 촉진 등을 지원
'14년 : 공모를 통해 5개소 추진예정

- ① 전혀 없을 것이다 ② 별로 없을 것이다 ③ 조금 있다 ④ 크게 있다 ⑤ 매우 크게 있다

18-1 (18번 문항에서 ① 또는 ②로 답한 경우) 실효성이 없다면 그 이유는?

(_____)

19. 6차 산업화 경영체를 운영하시면서 규제완화가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6차 산업화의 미래 >

20. 향후에 6차산업화가 농가와 농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조금 그렇다 ④ 많이 그렇다 ⑤ 매우 많이 그렇다

21. 농촌의 6차산업화 정책과 관련하여 정부에 건의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